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인도네시아

2015.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도네시아 관세국 및 재무부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및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센터 홈페이지(www.customs.go.kr/foreig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목 차

I. 개 관	10
1. 일반 개황	10
2. 경제 개황	14
가.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14
나.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동향	17
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19
라. 인도네시아의 통상 환경 변화 및 특징	22
3.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 관계	25
4. 인도네시아의 지역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현황	28
가. AFTA과 한-ASEAN FTA	28
나. 인도네시아-일본 EPA	31
다. 협상중인 인도네시아의 FTA 현황	32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34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5』	34
2.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37
가. 무역 기술 장벽/보건과 식물위생 장벽(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38
나. 수입 정책(Import Policies)	39
다. 수량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40
라. 관세장벽(Customs Barriers)	41

III. 인도네시아의 관세제도	42
1. 관세제도 일반	42
가. 관세(Bea Masuk)개요	42
나. 관세율	44
2.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	49
가. 소비세(Excise)	51
나.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PPN)	52
다. 사치품 판매세(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52
라. 수입법인세(소득세)(Pajak Penghasilan, PPh)	53
3. 관세평가제도	54
4. 관세환급제도	56
5. 관세의 감면·면제 제도	58
6. 관세행정심판제도	60
가. 세관의 부족세액 추징	60
나. 추징 등에 대한 불복절차	62
IV.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	64
1. 통관행정 조직	64
2. 통관절차	66
가. 수입통관절차	66
나. 수출 통관절차	76
3. 보세제도(Kawasan Berikat, KB; Boded Zone)	79
가. 보세제도 일반	79
나. 전산재고시스템(IT Inventory)제도	81
4. 원산지 제도	82
5.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제도 현황	87
6. 검역제도	88
7. 수출입 규제현황	91

가. 수입규제현황	91
나. 수출규제현황	93
8. 비관세 장벽	94
가. 수입자 필수 구비 인허가	95
나. 국가품질표준(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 제도	102
다. 라벨링(Labelling)	107
라.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108
마. 할랄(Halal)인증 현황	112
V. 통관절차별 고려 사항	114
1. 수입신고 전 준비	114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114
나. 애로 사례	116
다. 업무상 유의점	118
2.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	123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123
나. 애로 사례	124
다. 업무상 유의점	124
3. 물품 검사 및 물품 반출	126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126
나. 애로 사례	127
다. 업무상 유의점	127
4. 수출 및 환급	128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128
나. 애로 사례	129
다. 업무상 유의점	130
5. 요약	131

참고문헌.....	133
〈부록 I〉 비즈니스 팁.....	138
〈부록 II〉 주요 유관기관 정보.....	142
〈부록 III〉 인도네시아 관세법.....	144
〈부록 IV〉 국가품질표준(SNI) 인증기관.....	194
〈부록 V〉 라벨링 규정.....	209

표목차

〈표 I -1〉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 지표.....	17
〈표 I -2〉 2013/2014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	18
〈표 I -3〉 2013/2014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품목.....	18
〈표 I -4〉 2014 인도네시아의 주요국별 수출입 동향.....	19
〈표 I -5〉 대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20
〈표 I -6〉 2014년 인도네시아 국별 외국인 투자 실현 실적.....	21
〈표 I -7〉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실적.....	21
〈표 I -8〉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현황.....	22
〈표 I -9〉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 현황.....	22
〈표 I -10〉 최근 대인도네시아 교역량 및 무역수지.....	25
〈표 I -11〉 최근 대인도네시아 10대 수입 품목.....	26
〈표 I -12〉 최근 대인도네시아 10대 수출 품목.....	27
〈표 I -13〉 2014년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입 국가 순위.....	28
〈표 I -14〉 한-아세안 FTA 협상의 주요 경과 표.....	29
〈표 I -15〉 인도네시아의 자유 무역 협정 현황.....	33
〈표 II -1〉 Doing Business 2015 인도네시아의 무역 분야 순위 비교	35
〈표 II -2〉 인도네시아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36
〈표 II -3〉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시 필요 서류.....	37
〈표 III -1〉 2013년 인도네시아 관세적용범위	44
〈표 III -2〉 2013년 인도네시아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분포.....	45
〈표 III -3〉 2013년 인도네시아 품목별 관세율	46
〈표 III -4〉 2013년도 인도네시아 관세청 세수내역.....	50

〈표 Ⅲ-5〉 인도네시아의 수입주류/수입담배에 대한 소비세율.....	51
〈표 Ⅲ-6〉 인도네시아의 주요 사치품판매세의 대상과 세율.....	53
〈표 Ⅲ-7〉 인도네시아의 추정액에 따른 벌금액.....	61
〈표 Ⅳ-1〉 인도네시아의 통관 Channeling System.....	72
〈표 Ⅳ-2〉 인도네시아의 수출세 적용대상과 세율.....	78
〈표 Ⅳ-3〉 인도네시아의 검역 절차.....	90
〈표 Ⅳ-4〉 인도네시아 한국산 물품 수입규제 현황.....	92
〈표 Ⅳ-5〉 인도네시아 수입자 자격 확보 서류.....	96
〈표 Ⅳ-6〉 인도네시아의 무역면허(SIUP)의 신청.....	96
〈표 Ⅳ-7〉 인도네시아의 수입업자 등록번호(API)의 신청.....	99
〈표 Ⅳ-8〉 인도네시아의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NPIK)의 신청.....	101
〈표 Ⅳ-9〉 인도네시아의 특정제품수입가능 통관 항구 및 공항.....	102
〈표 Ⅳ-10〉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의 절차.....	105
〈표 Ⅳ-11〉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의 종류 요약.....	111
〈표 Ⅴ-1〉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131

그림목차

[그림 I -1] 인도네시아 정부구성 조직도.....	12
[그림 I -2] 한-아세안 FTA 관세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 분류	30
[그림 III-1] 인도네시아 관세청 관세율 조회.....	47
[그림 III-2]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율 조회.....	48
[그림 IV-1] 인도네시아 관세 · 소비세충국 조직도.....	65
[그림 IV-2] 인도네시아의 수입 통관 절차.....	67
[그림 IV-3]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SNI) 로고.....	103

I. 개 관

1. 일반 개황¹⁾

- 인도네시아 공화국(The Republic of Indonesia)은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부분 적도 상에 위치하며 17,508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島嶼國家)임
 -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파푸아 뉴기니, 동티모르와 국경이 접하며 인근 국가로는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등이 있음
 - 열대성 몬순기후로 고온, 무풍, 다습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자카르타의 평균 기온은 32~33℃이고 주요 섬으로는 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파푸아(구 이리안자야)가 있음

- 인도네시아의 국토 면적은 약 190만km²으로 남한의 19배에 달하며, 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2억 4,700만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인구 대국임
 -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의 면적은 661km²로 서울(605km²)보다 다소 넓으며, 자카르타의 인구는 약 1,200만명에 달함

- 인도네시아의 행정 구역은 30개 주(provinsi), 2개 특별주(daerah istimewa), 1개 수도권(daerah khusus ibu kota)으로 구분됨
 - 2개의 특별주는 욕야카르타(Daerah Istimewa Yogyakarta)와 아체주(Nanggröe Aceh Darussalam)이며, 1개의 수도권은 자카르타(Daerah Khusus Ibukata Jakarta)임

1) 일반 개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인도네시아』, 2011.12 보고서의 일반개황을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종족은 자비족(45%), 순다족(13.6%), 기타 마부리족, 바딱족, 아체족 및 발리족 등 300여 종족이 있으며, 각 민족성의 지역 차가 큼
 -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종교는 이슬람교(87%), 기독교(6%), 가톨릭(3%), 힌두교(2%), 불교(1%) 등이며, 중앙부처에 종교만을 관장하는 부처(Ministry of Religious Affairs)도 두고 있음
 - 힌두교와 에미니즘 등 전통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각 섬마다 독특한 고유의 문화가 남아있음

-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공화제)이며 직접 선거제를 시행하고 있음
 - 입법부는 통상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와 지역대표 협의회의 이원적 조직으로 구성되며 이는 양원제와 유사함
 - 하원(DPR, 560석)과 상원(DPD, 132명)이 양원합동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국민평의회(MPR)를 구성하며 3원적 조직으로 이루어짐²⁾
 - 현재 주요 정당은 투쟁민주당(PDI-P), 골카르당(Golkar), 그린드라당(Gerindra) 및 민주당(PD) 등임

- 정부 구성은 대통령, 부통령, 중앙정부조직 및 지방정부조직으로 구분됨³⁾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에 의한 보통 및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며 헌법상 3선은 불가함
 -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법률 공포권, 주요 인사(장관, 연방회계감사원 감사관, 연방 최고재판소 판사, 검찰총장, 중앙은행총재 등) 임면권, 군통수권, 조약체결권 등이 있음
 - 부통령의 선거 및 임기는 대통령과 동일하며 부통령의 주요 권한은 대통령이 질병, 부재, 사망, 사임,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것임
 - 중앙정부조직의 형태는 조정장관은 4명이며, 조정장관이 해당 분야 부처의 업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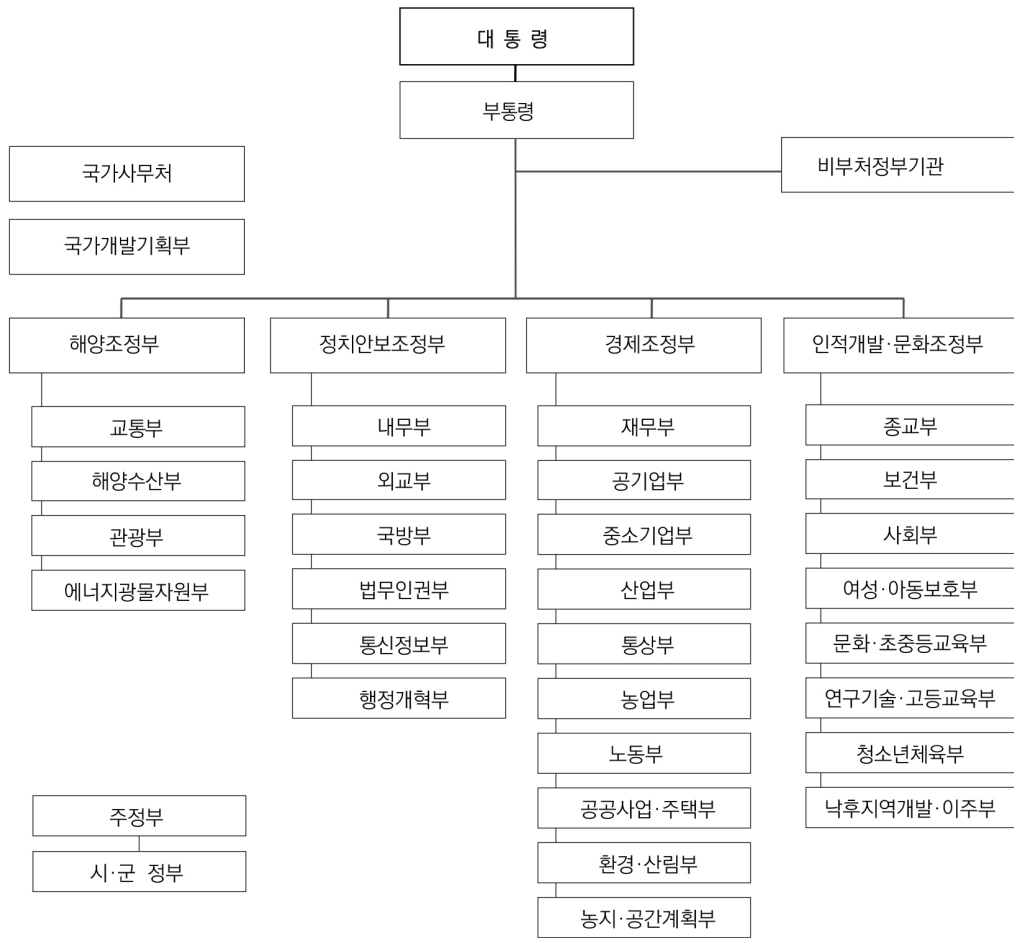
2)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개관』, 2015.03, p. 2-3

3) 상동

조정합

- 조정장관 이하, 국가사무처장관(비서실장), 국가개발계획부장관 포함 총 30개 부처에 장관을 두고 있음

[그림 I -1] 인도네시아 정부구성 조직도



출처: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인도네시아 개관』, 2015.03 p. 3

- 인도네시아의 지방정부는 34개 주, 98개 시, 403개 군, 6,415개 읍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수도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는 특별행정주, 아체와 파푸아 및 서부 파푸아는 특별자치주로 구분됨⁴⁾

- 주지사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 가능
- 행정구역 계층은 크게 두 단계로, 1단계인 주(Propinsi) 아래에 2단계인 군(Kabupaten/농촌지역)과 시(Kota/도시지역)로 구성
- 군과 시 아래에는 우리나라의 면 또는 구과 유사한 크차마탄(Kecamatan), 그 아래에 마을(Desa 또는 Kelurahan)이 존재

-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다양한 민족이 더해져 총 600여 종의 지방어 및 사투리를 보유하고 있음

- 화폐 단위는 루피아(Rp, Rupiah)로 원화 1원 대비 Rp 11,931(2015년 9월 1일 기준)

- 인도네시아는 1605년부터 1945년까지 약 3세기 반에 걸쳐 네덜란드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아왔으며 1956년에야 비로소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음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브릭스(BRICS) 이후 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투자유망 신흥 시장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 포스트 브릭스(BRICS) 국가로 지목되는 마빈스(MAVINS)⁵⁾, 비스타(VISTA)⁶⁾, 넥스트 11(Next Eleven)⁷⁾, 또한 넥스트 11 중에서도 믹트(MIKT)⁸⁾, 시베츠(CIVETS)⁹⁾ 등의 국가로 언급되며 크게 주목받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주요 부존자원으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LNG), 목재, 주석, 보크사이트, 망간, 동, 니켈, 금·은 등이 있으며, 세계 최대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삼림자원도 풍부하여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와 고무 생산국임

4)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2015.03), p. 4

5) 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6)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7) 한국, 필리핀, 터키, 멕시코,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베트남, 방글라데시

8)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9)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2위 석탄 수출국이자, 세계 제1위 팜오일 수출국이며 세계 제2위 코코아 생산국이기도 함
-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및 풍부한 부존자원은 경제성장의 잠재요소임
 - 다만, 인도네시아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는 높은 외국인 투자 의존도, 열악한 인프라, 지역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빈부 격차와 부정부패 등을 꼽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1967년 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초기 창설 회원국이며,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의 회원국이기도 함
 - G20 회의 참가 등 최근 국제 사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자원 의존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 지역 간 개발 격차 축소, 열악한 기반 시설의 개선 등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됨
 - 국내 농업, 광업, 에너지, 제조업, 해양 산업, 관광, 통신, 지역발전 등 8개 주요 테마 별로 22개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4조 7천억달러 투자 계획임

2. 경제 개황

가.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제 자원 붐에 힘입은 원자재 수출 증가, 중산층 확대에 따른 내수 증대 및 활발한 해외투자 유입 등을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6%대의 고성장을 지속함¹⁰⁾
 - GDP성장률은 2009년에 4.6%, 2010년에 6.5%, 2011년에 6.5% 그리고 2012년에

10) 외교통상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2014.12, p. 335

6.2%를 기록

- 2013년과 2014년의 실물경기는 중국의 성장 둔화, 국제 자원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 해외투자 유입 증가세 둔화, 경상수지 적자 방어를 위한 수입 억제 및 금융 긴축정책 등으로 성장속도가 둔화됨¹¹⁾
 - 2013년도 들어 국제 자원 붐이 끝나자 원자재 가격약세로 수출은 위축되었고, 석유류의 수입이 급증,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해 2/4분기에는 대규모 경상수지의 적자(GDP의 4.5% 정도)로 이어졌으며, 인니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긴축정책,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GDP 성장률은 5.78%로 둔화됨
 - 2014년도에도 경상수지와 루피아화 방어를 위한 인니 정부의 긴축적 경제운용을 지속함과 동시에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수출 위축, 중국의 성장 둔화, 4월 총선과 7월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안, 외국인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GDP성장률은 5.2%를 기록

- 소비자물가지수는 2011년 이래 3~4%대로 안정권대에 머물다가 2013년에 6.4%로 가파르게 상승하였음¹²⁾
 - 석유류가격 인상(휘발유 리터당 4,500 → 6,500루피아), 전기료 인상(15%), 최저임금 상승(전국 평균 43%),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식품류 가격 상승 등이 중첩된 결과로 보여짐
 - 2014년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중앙은행의 물가관리 노력과 금융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등으로 동년 10월 기준 4.8%로 하락하였으나 12월 말에 6%으로 마감함

- 2014년 3월부터 지난 1년간 루피아화의 가치는 약 15% 하락¹³⁾했으며 2015년도에도 루피아화의 하락 추세가 이어짐¹⁴⁾

11) 상동

12)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2015.03), p. 12

13) 2014년 3월 1달러당 11,404루피아 → 2015년 3월 1달러당 13,084루피아

- 루피아화의 약세가 소비시장에는 악영향, 수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수입품의 인도네시아 내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음
 - 소비 촉진을 위해 2015년 2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나,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¹⁵⁾
 - 한편 수입품의 가격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국산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향후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
 - 실질 수입 증가율은 2013년 1.2%에 이어 2014년 2.2%로 저조하며, 2015년에도 2%대가 예상됨
 - 반면 루피아화 약세로 인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수출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을 필두로 한 경기회복에 가속이 붙는다면 루피아화 약세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는 중국의 수요증가 여부가 관건임
- 무역수지는 2011년 261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중임¹⁶⁾
- 다만 2013년 40.8억달러 적자에 이어 2014년에는 18.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폭은 축소되었음
 - 수출은 2012년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수입은 2010년 이후 둔화되기 시작해 2013년에 감소세로 전환됨
 - 2014년에 들어 세계 경기회복 지연, 원자재 가격 하락, 공산품 수요 부진 등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3.4% 감소하며 정부 목표치인 1,844억달러에 못 미치는 1,763억달러를 기록함
 - 석탄, 고무, 전기장치, 종이류 등의 수출이 부진하며 전체 수출의 83%를 차지하는 비석유·가스 수출이 2.6% 감소함
 - 월별로는 2014년 8월 이후 수출과 수입 모두 하향세임

14)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과 투자여건』, 2015.06, p. 18

15) 한국무역협회(2015.06)에 따르면 금리 인하폭은 0.50%p로 예측됨

16) 한국무역협회(2015.06), pp. 11-12

〈표 I-1〉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명목 GDP(억달러)	8,456	8,778	8,703	8,561	9,150
경제성장률(%)	6.5	6.3	5.8	5.2	5.5
1인당 GDP(달러)	3,508	3,591	3,510	3,404	3,587
물가상승률(%)	5.3	4.0	6.4	6.0	6.7
외환보유액(백만달러)	106,539	108,837	96,364	102,306	· ·
실업률(%)	6.6	6.1	6.3	6.1	5.8
환율(Rupiah/달러)	8,770	9,387	10,461	11,841	12,201
수출(백만달러)	191,109	187,347	182,089	179,405	196,950
수입(백만달러)	157,284	178,667	176,256	166,719	182,433
무역수지(백만달러)	26,061	-1,660	-3,895	-1,707	· ·

주: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http://keri.koreaexim.go.kr/>)

나.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동향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 석유가스, 팜유 등 각종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신발류의 경우 1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원자재가 아닌 유일한 품목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누계 수출액 66.7억달러로 9위를 기록하였으나¹⁷⁾ 2014년에는 22.1억달러로 11위를 기록

17) 한국무역협회(2015.06), p. 12

〈표 I-2〉 2013/2014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억달러)

순위	수출		
	품 목	2013	2014
1	석유, 연탄 등(Coal; briquettes, ovoids &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227.7	186.9
2	팜유(Palm oil & its fraction)	158.3	174.6
3	석유가스(Petroleum gases)	181.2	171.8
4	석유 및 원유(Crude petroleum oils)	102.0	95.2
5	천연고무 등(Natural rubber, balata, gutta-percha etc)	69.1	47.4
6	자동차(Cars (incl. station wagon))	20.8	26.4
7	야자유, 팜핵유, 바바수유(Coconut(copra), palm kernel/babassu oil & their fractions)	18.3	24.8
8	합판·배니어패널 기타 적층목재(Plywood, veneered panels and similar laminated wood)	21.7	23.7
9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Binders for foundry molds or cores; chemical products and residuals ne)	17.2	23.6
10	석유·역청유의 잔재물(Petroleum coke, petroleum bitumen & other residues of petroleum oils)	26.7	23.1

주: HS 4단위 기준

출처: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WholeList.screen?s_cond_ctr_asean=ID),
검색일자: 2015.08.03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석유·원유 등 원자재, 전화기·자동차 등 소비재, 자동차 부품 등 자본재가 고루 섞여 있음

〈표 I-3〉 2013/2014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억달러)

순위	수입		
	품 목	2013	2014
1	석유와 역청유의 석유조제품 (Petroleum oils, not crude)	27.8	26.7
2	석유와 역청유(원유)(Crude petroleum oils)	13.5	13.0
3	전화기(Electric app for line telephony,incl curr line system)	5.2	4.8
4	석유가스(Petroleum gases)	3.1	3.0
5	자동차 부품품(Parts & access of motor vehicles)	3.2	2.8
6	밀과 메슬린(Wheat and Meslin)	2.4	2.3
7	대두유 케이크와 유박(Soya-bean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1.9	2.2
8	자동자료처리기계 등(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optical reader, etc)	2.4	2.1
9	합금철(Semi-finish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2.0	1.8
10	환식탄화수소(Cyclic hydrocarbons)	1.6	1.6

주: HS 4단위 기준

출처: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WholeList.screen?s_cond_ctr_asean=ID),
검색일자: 2015.08.03

-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일본과 싱가포르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입국 순위에서 수출은 6위, 수입은 4위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는 주요 교역국가 중 일본(6,158백만달러), 미국(8,372백만달러), 인도(8,297백만달러)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표 I -4〉 2014 인도네시아의 주요국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국가명	금액	증감률
1	일본	23,165	-14.5	중국	30,624	2.6
2	중국	17,606	-22.1	싱가포르	25,185	-1.5
3	싱가포르	16,806	0.7	일본	17,007	-11.8
4	미국	16,560	5.2	한국	11,847	2.2
5	인도	12,249	-6.0	말레이시아	10,855	-18.5
6	한국	10,621	-7.0	태국	9,781	-8.6
7	말레이시아	9,759	-8.5	미국	8,188	-9.8
8	대만	6,425	9.6	사우디아라비아	6,516	-0.2
9	태국	5,830	-3.8	호주	5,647	12.1
10	호주	5,033	15.2	독일	4,091	-7.6
총액		176,288	-3.4	총액	177,995	-4.5

출처: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WholeList.screen?s_cond_ctr_asean=ID),
검색일자: 2015.08.03

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 “2013년 대(對)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광업법 개정으로 184억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수입자 인증번호 도입, 광물 수출세 부과 등 외국인투자 규제도 강화되면서 153억달러까지 하락함”(한국수출입은행, 「2015년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위험평가보고서」, 2015.06, p. 1)

〈표 I-5〉 대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단위: 억달러)

	2012	2013	2014
연중 유입금액	191	184	153
(전년 대비 증감률)	(-0.5%)	(-3.7%)	(-16.8%)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15.06), p. 1

- 2014년 인도네시아 국가별 외국인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아세안 역내 투자가 증가하고 역외 투자자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임¹⁸⁾
- 전통적 투자 1위국인 싱가포르가 58억달러를 투자하여 순위를 유지하였고 다음으로 일본이 27억달러를 투자하여 2위에 등극, 기존의 5대 투자국에 들지 않았던 말레이시아가 17.7억달러를 투자하면서 투자국 3위로 부상함
- 반면 최근 5년간 투자 5국 순위에 들었던 미국과 한국은 각각 미국이 6위(12억달러), 한국이 7위(11억달러)를 차지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국 지형도에 변동을 가져옴¹⁹⁾
- 코트라에 따르면, 특히 일본과 한국의 투자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투자액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법인을 세우지 않고 지사 형태로 활동하던 업종의 법인 설립 및 외국인 투자관리 투명성 강화로 인한 무역, 컨설팅 등 업종의 의무적 법인 설립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18) 한국수출입은행(2015.06), p. 1

19) 코트라, 「2014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주춤

http://www.globalwindow.org/gw/overinvest/GWOIFS020M.html?BBS_ID=17&MENU_CD=M10302&UPPER_MENU_CD=M10301&MENU_STEP=2&ARTICLE_ID=5025960, 검색일자: 2015.08.11.

〈표 I-6〉 2014년 인도네시아 국별 외국인 투자 실현 실적

(단위: 건, 백만달러)

순위	국가	건수	금액
1	싱가포르	2,056	5,832
2	일본	1,374	2,705
3	말레이시아	614	1,776
4	네덜란드	272	1,726
5	영국	268	1,588
6	미국	236	1,230
7	한국	1,336	1,127
8	중국	654	800
9	홍콩	301	657
10	호주	326	647

출처: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 www.bkpm.go.id
코트라, 「2014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주춤」, 2015.08.11.

-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누계액은 83억달러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9위 투자대상국임²⁰⁾
- 2014년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금액은 1차 금속 등 제조업 분야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57.7% 증가한 7억달러(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총액의 3.0%)를 기록함

〈표 I-7〉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실적

(단위: 건, 천달러)

	2012	2013	2014	투자누계
연중 투자건수	112	104	85	1,844
연중 투자총액	999,515	454,302	716,218	8,292,110
(전년 대비 증감률)	(-23.0%)	(-54.5%)	(57.7%)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15.06), p. 1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현황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도 들어서 신고금액과 투자금액만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20) 한국수출입은행(2015.06), p. 1

〈표 I-8〉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현황

(단위: 건, 개, 천달러)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1년	447	153	1,414,893	1,007	1,296,885
2012년	382	97	1,003,748	845	998,685
2013년	376	95	606,807	710	450,292
2014년	327	72	853,413	600	715,773

주: 법인은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함(자사, 지점 제외)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 2015.08

□ 2014년 누계 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1%, 광업이 25.8%, 도매 및 소매업이 5.0%의 비중을 차지함²¹⁾

○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는 1차 금속이 20.1%로 가장 크며,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1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1.4%) 순임

〈표 I-9〉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달러, 건)

2014 순위	투자 업종	2012년		2013년		2014년	
		투자금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1	제조업	496,069	200	209,403	198	416,733	169
2	금융 및 보험업	22,441	5	14,962	4	97,707	7
3	도매 및 소매업	31,977	60	45,719	56	54,099	52
4	광업	251,832	32	102,594	11	49,528	7
5	농업, 임업 및 어업	65,211	25	14,467	11	34,909	22

주: 법인은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함(자사, 지점 제외)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 2015.08

라. 인도네시아의 통상 환경 변화 및 특징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2004년 10월~2014년 10월) 하반기 이후 자원보호주의 및 보호주의 색채가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음

21) 한국수출입은행(2015.06), p. 1

- 가공되지 않은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신광물법 시행²²⁾
 - 광범위한 무역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무역법 및 산업법 제정
 - 국가품질표준(SNI)인증 의무 품목 확대
-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6%대에서 5%대로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국산 제품 및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수입을 증대하며, 천연자원을 보호하려는 등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²³⁾
- 특히, 인도네시아 국회는 2014년 2월 6일 국내 소비자와 산업보호를 위해 무역에 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무역법을 통과시켰음²⁴⁾
- 19장 122조로 된 신무역법은 기존의 기업법(1934년), 상품법(1961년), 상품통제법(1962년), 물류법(1965년) 등 4개 법안을 통합 등 4개 법을 통합, 대체한 것으로서 인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2014년 3월 11일 발효되었음
- 신무역법 제정 목적은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부가가치 향상 등을 통해 국익 확대, 국내산업 보호, 자국산 제품의 수출증가에 있음²⁵⁾
- 2015년말 출범할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에 대비하여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및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국내생산 증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신무역법의 주요 내용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생산·소비의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필수재와 전략물자 수급을 관리, 국제무역협정관련 의회 감독 및 정부의 협정 검토와 무효권한

22) 2009년 제정된 신광물법의 시행령인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No. 07. 2012)이 2014.1.12.부터 전격 시행되어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물 수출세 부과, 광산 지분투자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

23) 외교통상부(2014.12), p. 338

24) 상동

25) 상동

의 부여 및 기타 중소기업 우대와 전자상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²⁶⁾

- 자국산 제품 생산·소비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필수재·전략물자 수급 관리
 - 국내 수요 충족 및 원자재 확보, 원자재·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등을 위해 수출 제한 가능
 - 국내 산업 보호와 교역 균형을 위해 수입 제한 가능
 - 수입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 국산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편의·인센티브 제공
 - 수출국의 보조금 부과 등으로 국내 제조업자에게 손해 발생 시 반덤핑조치 및 보상 조치 발동
- 국제무역협정 관련 의회 감독 및 정부의 협정 검토·무효 권한 부여
 - 무역협정 체결 시 의회와 협의(정부는 국제 무역협정을 협정 서명 90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
 - 의회는 무역협정이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shall reject)는 점을 명시
 - 정부는 국익을 위해 의회가 비준한 무역협정 검토·무효화 가능
- 기타 중소기업 우대, 전자상거래의 법적 근거 마련
 - 무역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가무역위원회 설립
 - 동법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행 규정 제정 의무
 - 중소기업과 공동조합 지원으로 소매 자영업자들에게 자금, 기술, 사업허가, 할랄증명, 특허,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전개

□ 외교통상부(2014.12, p. 338)에 따르면, 신무역법의 한계점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 수입규제 조치 등을 규정하면서도 해당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전제 요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 집행에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6) 외교통상부(2014.12), pp. 338-339

3.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 관계

-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2001~2011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인 후 2012년부터는 하향세로 반전되어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함²⁷⁾
 - 2015년 1분기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8.4%, 24.3%나 감소
 -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9위 수출대상국으로 수출액은 113.6억달러 – 2015년 1분기에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14위(20.3억달러)로 하락
 - 대인도네시아 수입도 수출과 비슷한 추세로 2011년부터 하향세
 -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를 유지해 왔으나 2010년 이후 적자폭이 축소되는 추세임

〈표 I-10〉 최근 대인도네시아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8,897 (48.3)	13,564 (52.5)	13,955 (2.9)	11,568 (-17.1)	11,361 (-1.8)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13,986 (51.0)	17,216 (23.1)	15,676 (-8.9)	13,190 (-15.9)	12,266 (-7.0)
무역수지	-5,089	-3,652	-1,721	-1,622	-905

출처: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2015.08

-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가스, 석탄, 원유, 석유제품 등의 원자재, 의류 등임²⁸⁾
 - 2014년에는 원자재가 상위 수입품목 1~4위를 모두 차지했으나 2015년 1분기에는 의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며 3위로 도약
 - 세부적으로는 편직제 의류가 20.7% 증가하였고 이 중 가장 많이 수입된 의류는 남성바지(2,100만달러)이며 언더셔츠(1,600만달러), 기타 운동복(1,500만달러), 코트 및 자켓(1,000만달러), 스웨터(800만달러) 등으로 이어짐
 - 2014년 기준 10대 수입품목 중 7개가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의류(16.3%)와 더불어

27) 한국무역협회(2015.06), p. 29

28) 한국무역협회(2015.06), p. 32

- 어 식물성 물질(36.1%), 목재류(33.8%)의 수입이 증가
 - 2015년 1분기 기준으로는 제지원료(0.6%)가 소폭 증가, 신발은 8.2% 증가하며 최
 다 수입품목 9위에 오름

〈표 I -11〉 최근 대인도네시아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4년			2015년(1~6월)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총계	12,266	-7.0	총계	4,653	-27.3
1	천연가스	3,773	-5.9	석탄	1,034	-18.3
2	석탄	2,409	-8.7	천연가스	885	-58.9
3	원유	747	-38.7	원유	259	-29.5
4	석유제품	655	-6.7	의류	222	6.0
5	의류	485	16.3	동광	222	203.6
6	식물성물질	366	36.1	식물성물질	159	-12.1
7	임산부산물	317	-21.3	제지원료	145	-11.9
8	제지원료	295	-18.9	석유제품	138	-61.0
9	목재류	244	33.8	임산부산물	135	-22.0
10	동광	242	-31.8	목재류	133	14.9

주: MII 3단위 기준

출처: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2015.08

-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 철강관, 편직물, 합성수지 등임
 ○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활성화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이 2014년 423.8%나 증
 가했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0.9%)와 영상기기(24.1%)도 비교적 높은 증가
 율을 기록²⁹⁾
 - 2014년 3월 화물선 수출이 2.5억달러를 기록하며 급증,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
 - TV부품 수출에 힘입어 영상기기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
 - 2015년 1분기 기준으로는 철강관 및 철강선(240.4%), 섬유 및 화학기계(99.7%),

29) 한국무역협회(2015.06), p. 3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18.3%)등이 큰 증가세를 기록

○ 석유제품, 철강판, 편직물, 합성수지는 2014년에 이어 2015년 1분기에도 최다 수출 품목 1~4위를 지킴

– 세부적으로는 석유제품 중 경유와 자동차 휘발유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음

〈표 I -12〉 최근 대인도네시아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4년			2015년(1~6월)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총계	11,361	-1.8	총계	4,250	-30.2
1	석유제품	3,826	15.3	석유제품	1,141	-45.2
2	철강판	909	-5.0	철강판	347	-23.8
3	편직물	640	1.8	편직물	288	-8.3
4	합성수지	574	-10.2	합성수지	218	-27.8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99	423.8	합성고무	95	-22.9
6	합성고무	242	-13.7	섬유및화학기계	90	65.4
7	영상기기	175	24.1	영상기기	78	-12.4
8	정밀화학원료	149	3.9	인조장섬유직물	70	-3.1
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40	30.9	철강관및철강선	70	-75.0
10	섬유및화학기계	139	-24.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5	-75.1

주: MII 3단위 기준

출처: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2015.08

□ 2014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9위의 수출상대국, 제12위의 수입상대국임

〈표 I -13〉 2014년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입 국가 순위

(단위: 백만달러)

수 출			수 입		
총액		572,665	총액		525,515
순위	국가	수출금액	순위	국가	수입금액
1	중국	145,288	1	중국	90,082
2	미국	70,288	2	일본	53,768
3	일본	32,184	3	미국	45,283
4	홍콩	27,256	4	사우디아라비아	36,695
5	싱가포르	23,750	5	카타르	25,723
6	베트남	22,352	6	독일	21,299
7	대만	15,077	7	호주	20,413
8	인도	12,782	8	쿠웨이트	16,892
9	인도네시아	11,361	9	아랍에미리트 연합	16,194
10	멕시코	10,846	10	대만	15,690
11	호주	10,283	12	인도네시아	12,266

출처: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2015.08

4. 인도네시아의 지역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현황

가. AFTA과 한-ASEAN FTA

- 국제 무역보호 정책과 지역주의의 대두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들 간 경제 협력을 통하여 국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자유무역협정인 아프트(ASEAN FTA, AFTA)를 체결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1967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처음 아세안을 설립한 회원국임
 - 아세안 회원국은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며, 아세안의 본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함

-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 협상은 기본협정문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투자협정을 순차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음³⁰⁾
- 경제적 발전 수준과 정치체제가 다른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세안과의 효과적 협상을 위해 기존의 FTA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단일협상방식이 아닌, 기본협정문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투자협정을 순차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³¹⁾

〈표 I -14〉 한-아세안 FTA 협상의 주요 경과

일자	내용
2004. 11.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FTA 협상 개시 선언
2005. 2.	협상 개시
2006. 2.	서비스·투자협정 관련 협상 개시
2006. 8.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서명
2007. 10.	제20차 협상(라오스) 시 서비스협정 협정문 협상 타결
2007. 1.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서비스협정 서명
2009. 2.	태국의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가입의정서 서명 ¹⁾
2009. 4.	투자협정 협상 타결
2009. 5.	서비스협정 발효
2009. 6.	투자협정 서명

주: 1) 태국은 국내 사정 등으로 2006년 8월 상품협정 서명 및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못했음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소,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2.12, p. 46

- 한국은 2012년까지 아세안 선발 6개국과, 2020년까지 전 아세안 국가들과 상품 90%에 대한 무관세 거래를 실현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³²⁾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FTA 규정에 따라 2010년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1.1%에

30) 대외경제정책연구소,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2.12, pp. 4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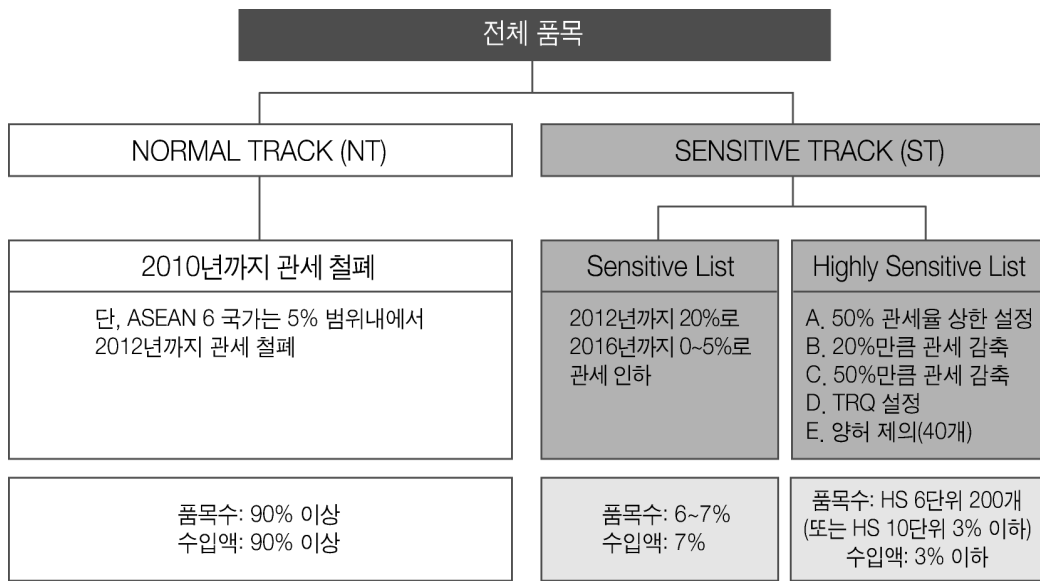
31) 이는 중국-아세안 FTA에서 사용된 방식으로, 중국은 상품무역협정문을 서명한 후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7년 1월에 서비스/투자 협상을 타결하였음(김한성, 2007, p. 3)

32) 대외경제정책연구소(2012.12), p. 46

달하는 4,760개 품목(HS 6단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음

- 상품협정에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 구분은 기본적으로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이루어지며, 민감품목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이루어짐

[그림 I-2] 한-아세안 FTA 관세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 분류



주: 위 그림은 아세안 선발 6개국과 우리나라에 적용되며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소(2012.12), p. 47

-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반품목군 308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0일부터 관세율을 20%까지 감축하였으며, 동 품목은 2016년 1월 1일까지 0~5%로 감축될 예정임³³⁾

- 또한 전체 품목 수의 3%에 해당하는 초민감품목(HS 6단위 156개)은 양허 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방식으로 보호됨³⁴⁾

33) 외교통상부(2014.12), p. 356

34) 외교통상부(2014.12), p. 356

- 2016년 1월 1일 이후에도 여전히 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 품목과 156개의 초민감 품목이 현재 진행되고 한-인도네시아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OA)협상이 시장개방 협상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음³⁵⁾
 - 자세한 사항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http://www.customs.go.kr/download/ftaportalkor/_down/trty/han_asean_00.pdf)을 참고

나. 인도네시아-일본 EPA

-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2007년 8월 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EPA)에 서명함
- 인도네시아-일본 EPA에서 일본 정부는 수입액 기준으로 대인도네시아 수입품목 9,275개 중 90%에 대한 관세를 즉시 면제하고, 인도네시아도 대일본 수입품목 1만 1,163개 중 총 93%의 품목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함³⁶⁾
 - 이에 따라 그동안 관세가 부과됐던 인도네시아의 대일본 수입제품 1만1,163개 품목 중 58%에 대한 수입관세가 즉시 폐지되며, 향후 3~10년 사이에 나머지 수입상품 35%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일본 EPA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일본 공급 부분의 내용과 인도네시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기술이전 내용이 있음³⁷⁾
 - 이번 협정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공급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이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규제를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일본 측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됨
 - 아울러 협력분야에는 일본이 인도네시아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망

35) 외교통상부(2014.12), p. 356

3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해외시장정보 보도자료, 「인도네시아-일본 EPA」,
http://www.exportcenter.go.kr/economy/gloInfo/gloInfo_read.jsp?SEQ_ID=16313,
검색일자: 2015.08.14

37) 상동

고(Mango) 해충의 방제기술자를 파견해 방제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와 EPA 체결 이후 일본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Global Trade Atlas³⁸⁾ 에 따르면 2007년 90억달러에서 2008년 126억 740만달러로 급증하였고, 2013년에는 170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다. 협상중인 인도네시아의 FTA 현황

-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는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 3월 28일 핵 안보 정상회의 양국정상회담 당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여 2015년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중임³⁹⁾
 -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지님
 - CEPA는 배타적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체결이 되면 당사자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은 물론, 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양측 정부는 CEPA 협상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적용된 한국-아세안 FTA를 확대하기 위해 1,051개 품목의 관세 폐지 또는 인하,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왔음⁴⁰⁾
 -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로 2010년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 품목의 92.4%에 달하는 1만 40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으나 일종의 배타적 무역협정인 CEPA 체결이 되면 당사자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투자가 탄력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음

38) http://www.gtis.com/korean/GTIS_GTA.html/ GTA(Global Trade Atlas®)는 온라인 무역 교류 데이터 시스템으로 세계 물품 교역 통계를 제공하는 사이트임

39) 자카르타 무역관(2015.02), p. 32

40) 코트라, 「한-인니 CEPA 이른 시일 내 합의 어렵다」,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7275, 검색일자: 2015.08.17

- 코트라에 따르면, 2007년 149억달러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2년에는 그 두 배에 이르는 297억달러로 증가됐는데 더 나아가 양자 FTA가 체결되면 2015년까지 500억 달러, 2020년까지는 1,000억달러를 목표로 하자고 정함

-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CEPA의 협상은 아직 진척중에 있는데, 상품분야에서 양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 문제, 서비스·투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보호 수준 문제 및 인도네시아 측의 투자 확대 요구 등 주요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⁴¹⁾

- 또한 인도네시아는 일본 EPA와 같은 형태로 호주와 협상을 진행중이며, 동 파트너십 (Partnership)에는 관세율, 투자, 기술이전, 교육 등 다양한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FTA보다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2011년 3월 인도네시아 파트너십(Partnership)협상단이 호주를 방문한 바 있으며, 2014년 8월까지도 협상중임

〈표 I -15〉 인도네시아의 자유 무역 협정 현황

발효 중인 FTA	협상 중인 FTA	검토중인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TA ○ ASEAN-호주·뉴질랜드 FTA ○ ASEAN-중국 FTA ○ ASEAN-인도 FTA ○ ASEAN-일본 EPA ○ ASEAN-한국 FTA ○ 인도네시아-일본 E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EFTA CEPA ○ 인도네시아-호주 CEPA ○ 인도네시아-한국 CE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인도 CECA ○ 인도네시아-칠레 FTA ○ 인도네시아-터키 FTA ○ 인도네시아-대만 FTA ○ 인도네시아-EU FTA ○ 인도네시아-파키스탄 FTA ○ 인도네시아-GCC·이집트 FTA

출처: 국제무역원(<http://iit.kita.net/>)

41) 산업통상자원부, 「한-인니 CEPA 제7차 협상결과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78769&bbs_cd_n=16, 검색일자: 2015.08.17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매년 발행하는 『Doing Business』는 무역분야를 포함하여 각 국가의 부문별 조사를 토대로 사업의 용이성을 평가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행하는 NTE 보고서는 주요국의 무역장벽에 대하여 작성하는 신뢰성 있는 보고서로서, 본 장은 이 두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술되었음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5』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음
 - 2014년에 발간된 『Doing Business 2015』는 2014년 한 해 동안 189개국에 대하여 부문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이 수록됨
 -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짓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 수신(Getting electricity), 부동산 취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청산(Resolving insolvency) 10개의 지표임
- 당해 보고서의 무역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일수 및 소요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일수가 짧을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 무역분야에서 2014년 보고서상 3위에 올랐던 우리나라는 2015년에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3위에 오름

〈표 II-1〉 Doing Business 2015 인도네시아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구분	인도네시아	East Asia & Pacific	OECD (평균)	필리핀	베트남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4	6	4	6	5	3
수출소요시간(일)	17.0	20.2	10.5	15	21	8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585.0	864	1,080.3	755	610	670
수입필요서류(개수)	8	7	4	7	8	3
수입소요시간(일)	26.0	21.6	9.6	15	21	7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660	895.6	1,100.4	915	600	695
무역 분야 순위	62	-	-	65	75	3

주: 자카르타 항구 기준

출처: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Doing Business 2015』보고서에 제시된 인도네시아의 종합 순위는 189개국 중 114위로 지난해 117위에서 3계단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무역부문(Trading Across Borders)은 62위로 지난해 61위보다 1단계 상승함
 -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100위권 안에 진입한 인근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
 -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5위에 올랐음

〈표 II-2〉 인도네시아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단위: 일, 달러)

구 분	수출		수입	
	소요기간	비용	소요기간	비용
서류준비	11	135	13	210
세관통관	1	125	4	125
항만(터미널)	2	165	7	165
내륙운송	3	160	2	160
합 계	17	585	26	660

주: 자카르타 항구 기준

출처: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Indonesia*, 2014, p. 89

- 인도네시아에서 해상 수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컨테이너당 약 585달러이며, 서류 준비, 수출통관, 국내 운송, 항만업무 등 수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총 17일이 소요됨⁴²⁾
- 해상 수입에 있어서 컨테이너당 약 66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서류 준비, 수입통관, 국내 운송, 항만 업무 등 수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총 26일 소요됨
- 인도네시아의 수출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입 신고서, 포장 명세서 등으로 구성됨
 - 그 밖에도 화물인도지시서, 보험서류,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 보험 관련서류 등이 있음

42) 20피트 컨테이너(TEU) 만재화물 기준이며,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금액을 산정함

〈표 II-3〉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시 필요 서류

수출 시 필요서류	수입 시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ll of Lading(선하증권)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PEB(Export declaration form; 수출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ll of Lading(선하증권)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Cargo release order(SPPB; 화물인도지시서) ○ Customs import declaration(PIB; 수입신고서) ○ Insurance documentation(보험서류) ○ Proof of payments of customs, excise and taxation(SSPCP-세금완납증명서) ○ Terminal handling receipts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

출처: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Indonesia*, 2014, p. 90

2.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와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5년 보고서는 미국의 58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⁴³⁾

- 2015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는 미국의 수출업자 입장에서 작성된 58개 각 국가의 수입 정책(Import Policies),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s), 지식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와 같은 무역 및 투자 장벽 등에 관하여 언급하

43) 2010년부터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고 있음

- 동 보고서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역 개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35번째로 큰 수출시장임
 - 2014년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적자액은 110억달러로 이는 2013년보다 13억달러 증가한 수치임
 - 2014년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83억달러, 대 인도네시아 수입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94억달러였음
 - 2013년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128억달러로 2012년 136억달러보다 약 8억달러 감소함
 -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주로 광업(채광업)에서 이루어졌음

가. 무역기술 장벽/보건과 식물위생 장벽(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 인도네시아는 육류에 대한 미국 식품안전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음
 -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각 미국 육류기관에 독점적인 정보가 포함된 광범위한 설문조사의 시행 및 육류 수출 전 인도네시아 검사관에 의해 검역을 완료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위원회에 육류기관에 행해지는 설문조사와 인도네시아의 통관 승인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 유제품, 계란 등의 동물성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동물 건강과 축산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사전 등록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됨
 - 인도네시아의 권한 있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행하고 이를 승인한 시설에서 제공된 물품만을 수입하도록 함
 - 낙농업과 관련한 법률 및 시행규정이 지나친 감사와 검사 등의 요구사항을 부과하

고 있으며 동 법령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의 동물성 제품 취급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와 함께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검토중임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014년에 개정된 법률 88「Food Safety Control Over Import and Export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WTO SPS위원회(Sanitary and phytosanitary committee)에 통보함
 - 개정 법률에 따라, 수출 국가들은 원예(Horticulture) 상품 수출을 위해 인정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나 등록된 식품 안전시험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자는 바코드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 수입권고(Horticulture Product Import Certificate, RIPH)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자는 무역부에 원예작물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 또는 원예작물의 생산, 수입자로 지정, 신청해야 하며 수입자는 개별 수입제품에 대해 원예작물 수입권고(RIPH) 증명서와 수입자 지정을 제출하여 수입허가/승인을 무역부에 신청해야 함

나. 수입정책(Import Policies)

- 인도네시아의 단순평균 최혜국관세(simple average most favored nation tariff) 세율 평균은 2013년 기준 6.9%임
 - 인도네시아는 2009~2011년 동안 다양한 상품군의 관세율을 올렸는데, 대체로 국내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군인 전자전기, 기계, 화학, 화장품, 약품, 철강과 농업의 낙농업, 동식물 오일, 과일주스, 커피와 차가 해당됨
- 인도네시아의 단순평균 양허세율(simple average bound tariff)은 2013년 기준 37%임
 -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양허관세율을 40%이며 양허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물품은 자동차, 철강(Iron and Steel) 및 일부 화학제품 등이 있음

- 농업부문의 약 1,300여 가지 품목은 2013년 기준 40%보다 높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음
 - 신선한 감자의 경우 적용 관세율은 20%이나 양허관세율은 50%임

다. 수량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 현재 법령에 의해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수입수량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입자는 일정 수입 허가량을 신청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요청되는 어떤 수입량이든 수입을 승인할 것이나, 수입자는 최소한 승인된 양의 80%를 수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받은 권리를 상실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육류와 원예상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농업제품의 수입을 받아들였는데, 농업제품은 가격참조시스템(A reference price system)에 따라 국내가격이 미리 설정된 가격(a set target price)보다 높을 때 수입이 허가될 것임
 - 만약 국내가격이 미리 설정된 가격보다 낮게 떨어진다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을 멈추거나 수입을 미루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2년부터 옥수수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입 금지를 시행했으며 옥수수 수입자는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수입허가신청서를 신청하여야 됨
 - 수입허가신청서의 중요 내용으로 수입 가능한 옥수수의 양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옥수수 양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양에 기초하여 정해져야 함
- 인도네시아는 수확 시즌 동안에 소금의 수입을 금지하며, 설탕에 대하여도 계절에 따라 수입 금지를 실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와인과 증류주의 수입에 대해 수입 수량을 제한함
 - 와인과 증류주를 수입하려는 기업은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정 수입자의 등록을 신청해야 함
 - 무역부에서 매년 회사별로 쿼터를 지정해 줌

라. 관세장벽(Customs Barriers)

- 미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세관이 WTO 협정에 의한 실제 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price)의 사용보다 관세가 부과된 적이 있는 일부 수입물품을 평가한 참조 가격표(a schedule of reference price)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고함

- 또한 인도네시아 세관은 이미 알려진 수입자의 위험 현황과 과거 90일간 수입된 물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의 평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평가함

-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 자카르타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항구를 원예 관련 제품의 수입항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미국은 수입국 인정 체결국(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CRA)이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계속해서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항구를 통해 수입할 수 있음⁴⁴⁾
 - 관련 법령은 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이며 2013년 기준으로 CRA 획득 국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임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013년 1월부터 미국의 수입국 인정체결국의 지위를 2년 연장하였음

44) 수입국 인정체결국(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CRA): 수입국의 식품안전 시스템이 인도네시아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절차를 거쳐, 합의된 농산물에 대해 식품안전 요구조건에 대한 전체 검사 절차를 면제하는 특혜 협정임

Ⅲ. 인도네시아의 관세제도

1. 관세제도 일반

가. 관세(Bea Masuk) 개요

-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0~170%까지 부과되는데, 2013년 인도네시아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6.9%(농산품 7.5%, 공산품 6.7%) 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37.1%(농산품 47%, 공산품 35.6%) 임⁴⁵⁾
 - 인도네시아는 1989년부터 품목분류제도(Harmonized System, 이하 HS)⁴⁶⁾를 도입하였으며 총 HS 개수는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세율 10% 이상인 품목은 전체 HS의 15% 정도를 차지함⁴⁷⁾
 - 인도네시아는 물품 가공도별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데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으로 알려짐⁴⁸⁾

-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2조 내지 제23조 D에서는 하나의 물품에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함

45) WTO, 국가별 관세율 기준, http://stat.wto.org/TariffProfiles/ID_e.htm, 검색일자: 2015.08.19

46)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CDCS)의 약칭으로 SITC, CCCN, TSUSA(미국 관세율표)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1981년 초에 HS 초안을 작성하여 1983년 6월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에서 채택, 198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음. 종래의 CCCN이 순수하게 관세부과 목적인 데 반해 HS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 전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CCCN을 보완한 다국적 상품분류임.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4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도네시아의 사업진출 유용정보」, 2004.10, p. 5

48)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수출입, 관세·비관세, 금융제도」, <http://idn.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3129&seqno=583570>, 검색일자: 2015.11.20

- 관세법 제12조에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반 적용원칙, 예외항목에 대해 명시함
 - 우리나라의 기본세율, 잠정세율과 유사함
 - 관세법 제13조에서는 WTO 양허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명시함
 - 우리나라의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와 유사함
 - 관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 D에서 불공정무역거래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액만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관세종류에 대해 명시함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관세, 보복관세가 있음
 - 관세 일반 적용원칙에 따라 산출된 관세액에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임
- 하나의 물품에 2개 이상의 세율이 경합 시 적용되는 세율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관세, 보복관세는 관세 일반 적용원칙에 따라 산출된 관세액에 추가로 부과됨
 -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관세 부과절차 및 세율이 적용됨
 - 특정 농산품이거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단독 목록 일정 XXI - 인도네시아(daftar eksklusif skedul XXI-Indonesia pada Persetujuan Umum)에 포함된 수입물품의 경우 장관령으로 별도로 정한 세부규정에 따름
- 우리나라 물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의 종류는 최혜국관세율(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이하 MFN)과 한·아세안FTA(AK-FTA) 협정세율이 있음⁴⁹⁾
- MFN란 한·아세안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WTO 양허관세율을 뜻함
 -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의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MFN 세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임

49) 씨엘HS 인터넷 HS 편람, http://cl24.co.kr/world_tariff/redirect.asp, 검색일자: 2015.08.19

- AK-FTA 협정세율은 2012~2015년까지의 연차세율과 2016년 이후의 연차세율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적용 연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
- AK-FTA 협정세율에 ‘대한민국 적용세율’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적용세율’이 적용되며, ‘대한민국 적용세율’이 없는 경우는 AK-FTA 일반세율이 적용됨

나. 관세율

1) WTO 국가별 관세율체계

- WTO의 국가별 관세율체계에 따르면, 2013년 인도네시아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6.9%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37.1%임
 - 201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7.5%, 평균 실행관세율은 47%이며, 비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6.7%, 평균 실행관세율은 35.6%임

〈표 Ⅲ-1〉 2013년 인도네시아 관세적용 범위

(단위: %)

구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1995년 WTO가입
단순평균 양허관세율	6.9	7.5	6.7	농산물할당관세(%): 1.0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37.1	47.0	35.6	농산물특별긴급관세(%): 0.7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http://stat.wto.org/TariffProfiles/ID_e.htm, 검색일자: 2015.08.19

- 농산물의 경우 0~5%의 양허관세율에 81.6%의 수입량이 적용되었으며, 실행관세율의 경우 25~50%의 관세율에 87.4%의 수입량이 적용됨

〈표 Ⅲ-2〉 2013년 인도네시아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분포

(단위: %)

분포	면세	0≤5	5≤10	10≤15	15≤25	25≤50	50≤100	> 100
	관세품목 및 수입가격(비율)							
농산물								
양허 관세	8.6	81.6	5.0	0.2	1.5	1.1	0.4	1.4
실행 관세	0.0	0.0	0.6	0.0	0.0	87.4	8.5	3.3
비농산물								
양허 관세	13.4	54.2	18.6	12.5	0.7	0.5	0.0	0.0
실행 관세	2.9	0.0	0.1	3.7	0.0	89.4	0.0	0.0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http://stat.wto.org/TariffProfiles/ID_e.htm, 검색일자: 2015.08.19

- 비농산물의 경우 양허관세율에 고루 분포되었는데, 그 중 0~5%의 관세율을 적용받은 품목이 약 54.2%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행관세율의 경우 약 89.4%가 25~50%의 관세율에 적용되었음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음료 및 담배류는 44.2%의 평균 양허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실행세율은 85%를 적용받아 품목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나타냄
- 석유의 경우 0.2%의 평균 양허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약 95.1% 수입량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석유제품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Ⅲ-3〉 2013년 인도네시아 품목별 관세율

(단위: %)

품목	WTO 양허세율			실행세율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4.6	8.2	20	44.0	0	50
유제품	5.5	0	10	74.0	0	210
과일, 채소, 식물	5.5	5.8	20	45.8	0	60
커피, 차	6.7	0	10	45.3	0	60
곡물 및 곡물조제품	5.3	10.1	150	44.6	0	160
종유, 지방 및 유지	4.5	11.2	10	39.9	0	60
당류와 설탕과자	6.4	0	10	58.3	0	95
음료 및 담배	44.2	0	150	85.0	0	150
면(Cotton)	4.0	20.0	5	37.4	0	40
기타 농산물	4.1	17.2	5	40.7	0	60
어류 및 어류제품	5.9	1.4	10	40.0	0	40
광물 및 금속	6.4	17.6	30	38.8	0.1	40
석유	0.2	95.1	5	40.0	0	40
화학제품	5.1	14.4	150	38.1	0.1	150
목재, 지류 등	4.5	27.0	15	39.4	0	40
직물	9.2	0.9	25	26.3	0	40
의류	14.4	0.5	15	35.0	0	40
가죽제품, 신발류 등	8.6	13.3	25	39.8	0	50
비전기기기	4.8	16.8	15	34.9	6.5	40
전기기기	5.7	22.9	13	30.3	23.6	40
이송장비	9.8	32.9	40	38.9	0	40
기타 제품	6.7	7.9	15	35.7	8.8	40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http://stat.wto.org/TariffProfiles/ID_e.htm, 검색일자: 2015.08.19

2) 관세율 조회

- 인도네시아 관세율표는 Peraturan Menkeu 213/PMK.011/2011 (14/12/2011)의 규정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관세율은 인도네시아 관세청 홈페이지⁵⁰⁾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홈페이지⁵¹⁾에서 물품의 HS 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음

[그림 Ⅲ-1] 인도네시아 관세청 관세율 조회



출처: 인도네시아 관세청, <http://www.beacukai.go.id/>, 검색일자: 2015.08.20

50) <http://www.beacukai.go.id/index.html?page=apps/browse-tarif-dan-lartas.html>,
검색일자: 2015.09.02

51) <http://www.tarif.depkeu.go.id/Tarif/?menu=hsform&mode=text>, 검색일자: 2015.09.02

[그림 Ⅲ-2]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율 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Indonesian Tariff System (TIM TARIF). The header includes the logo of the Department of Financ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title 'PUSAT KEBIJAKAN PENDAPATAN NEGARA'.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arch form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Header: TIM TARIF, DEPARTEME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BADAN KEBIJAKAN FISKAL, PUSAT KEBIJAKAN PENDAPATAN NEGARA
- Date: Selasa, 18 Agustus 2015
- Home link
- Search instructions: Penggunaan fasilitas pencarian data ini untuk mencari "nomor HS" pada sistem Tarif kami. Sehingga, bila nomor HS yang Anda masukkan ada pada Nomor HS Tarif pada database kami, maka sistem akan menampilkan daftar keluaran yang sesuai. Sebaliknya, sistem akan mengembalikan pada posisi tampilan ini.
- Search label: Nomor HS (maksimum 10 digit):
- Search input field
- Find button
- Left sidebar menu:
 - Ketentuan Umum
 - Daftar Judul
 - Urut Bagian
 - Urut Bab
 - Cari Bab
 - Cari Uraian Barangx
 - Cari Nomor HS
 - Kelompok Produk
 - Tarif 9 Digit BTBMI 2003
 - Tarif 10 Digit BTBMI 2004
 - Tarif 10 Digit BTBMI 2007
 - Informasi IJEPA
 - Penjelasan Umum
 - Program dan Kebijakan
 - Perkembangan
- Top link
- Footer: Copy ©right by Pusat Kebijakan Pendapatan Negara - Badan Kebijakan Fiskal

출처: 인도네시아 재무부, <http://www.tarif.depkeu.go.id>, 검색일자: 2015.08.20

- 인도네시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제한사항, HS코드, 각종 관세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싱글윈도우(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INSW)를 운영하고 있음
- HS 코드별로 인도네시아 수출입 금지 및 제한사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Browse Indonesian Import-Export Prohibition and Restriction Regulations 제공 사이트 (<http://eservice.insw.go.id/>)로 접속하면 조회가 가능함

2.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⁵²⁾

- 인도네시아로 물품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에는 관세 이외에도 소비세(Excise),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PPN), 사치품판매세(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수입법인세(소득세)(Pajak Penghasilan, PPh) 등이 있음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제세는 수입물품의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함
 - －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조건(CIF)이란 수출입 지급조건 중 하나로, 판매자가 화물의 선적에서 보내는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 수입관세는 수입 물품의 종류에 따라 0~170% 범위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체결로 대 한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가 되고 민감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물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의 종류는 최혜국관세율(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과 한·아세안FTA(AK-FTA) 협정세율이 있음

- 또한 수입물품에는 부가가치세, 수입법인세(소득세) 및 사치품 판매세가 2.5~ 75% 범위 내에서 부과됨
 -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품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등록된 수입자에게는 2.5%의 법인세가 추가 부과됨(법인세 납부시 공제 또는 환급됨)
 - 소비세는 수입주류와 담배에 대하여 종량세로 부과되고 있음
 - 수입법인세(소득세)는 수입 물품에 미리 부과되는 소득세로서 등록된 수입자에게는 2.5%, 미등록 수입자에게는 7.5% 세율을 적용하며 2014년 1월부터 완성품 위주로 502개 소비재 품목을 정하여 등록된 수입자에게도 7.5%의 수입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52) 백승래,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시 부과되는 제반 세금의 종류와 추정·환급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2014.03

- 사치품 판매세는 귀금속,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10 ~ 75%의 세율이 추가 부과되는 것으로 특소세와 유사함
- 그 밖에도 물품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Anti Dumping & Countervailing Duty), 담배소비세(CUKAI), 추가수입관세(Pajak Pertambahan Nilai; Additional Import Duty)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2013년 인도네시아 관세청이 거두어들인 수출입 관련 세수는 338조루피아로서 2013년 인도네시아 정부 전체 세수 총계 1,192조루피아의 약 28.36%를 차지함⁵³⁾
 - 부가세 · 사치품판매세 · 수입법인세 등 내국세 관련 세수가 182조루피아로서 인니 관세청 세수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음
 - 두 번째로 수출세가 158조루피아로서 약 41%를 차지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수입관세는 31조루피아로서 약 9.3%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4〉 2013년도 인도네시아 관세청 세수내역

(단위: 백만Rp, %)

세수형태	2012	2013	2013 점유율	전년 대비
수입세	28,277,748	31,524,602	9.3	11.48
수출세	21,372,924	15,882,769	4.7	-25.69
소비세	94,813,741	108,303,835	32.0	14.23
부가가치세	126,629,630	138,986,927	41.1	9.76
사치품 판매세	8,432,400	7,281,235	2.2	-13.65
수입법인세	31,613,690	36,331,436	10.7	14.92
합계	311,140,132	338,310,804	100	

출처: 백승래(2014.03), p. 9

53) 백승래(2014.03), p. 1

가. 소비세(Excise)

-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주류와 담배에는 재무부령 207호/PMK.011/2013, 재무부령 179호/PMK.011/2012에 따라 관세에 추가하여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 소비세는 모두 종량세로 부과되며 주류는 리터(L)단위로, 담배는 개비 또는 그램(g) 단위로 부과됨
 - 가령, 소주의 수입신고 가격을 병당 1달러 정도로 예상한다면, 관세가 리터당 Rp 125,000부과(HS 단위 2206)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비세가 리터당 Rp 44,000이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10%, 수입법인세 7.5%가 추가되면 병당 수입원가는 약 Rp 75,000 정도가 됨⁵⁴⁾
 - 인도네시아 유통중에 가격이 상승하여 시중 판매가격은 약 Rp 150,000~Rp 200,000에 이르게 되므로 원화로 환산 시 소주 1병당 약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책정이 됨

〈표 Ⅲ-5〉 인도네시아의 수입주류/수입담배에 대한 소비세율

(단위: 리터당/개비당 또는 그램당)

구분	대상	수입시 소비세율	
수입 주류	에틸알코올 또는 에탄올	Rp 20,000	
	알코올성 음료	알코올 5% 이하	Rp 13,000
		알코올 5% ~ 20%	Rp 44,000
		알코올 30% 초과	Rp 139,000
	에틸알코올농축액	Rp 100,000	
수입 담배	퀄런	Rp 375~380	
	수제퀄런	Rp 275	
	필터 있는 수제 퀄런	Rp 375	
	앞담배	Rp 25	
	루바브향 퀄런	Rp 20	
	시가(여송연)	Rp 100,000	
	기타 담배	Rp 100	

출처: 백승래(2014.03), pp. 13-14

54) 백승래(2014.03), p. 13

- 2010년 4월, 인도네시아는 수입 증류주에 대한 사치품판매세를 없애면서 이와 동시에 동 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여, 현재 자국산 주류보다 수입 주류에 더 높은 소비세를 적용함⁵⁵⁾

나.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PPN)

-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 세율은 정부 지침에 따라 5%에서 15% 사이로 변동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수입신고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가격이며 수출품에는 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일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이 있음⁵⁶⁾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물품은 원유·천연가스·모래·자갈·석탄·철광·동석과 같이 주로 광산 또는 채굴로 얻어진 물품, 쌀·소금·옥수수·콩 등 기초 식료품 등이 있음

다. 사치품판매세(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특정 과세물품의 수입 시 사치품판매세가 부과되는데, 사치품판매세는 수입업자에게만 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 추가 과세하지 않음⁵⁷⁾
 - 2010년 4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판매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치품판매세는 200%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 사치품판매세율은 10~75%임
- 귀금속 및 보석 등의 물품과 고급요트는 최고 75%의 사치품판매세율이 적용되며 1,500cc 이하의 엔진 차량의 경우 통상 10%의 사치품판매세율이 적용됨

55) 백승래(2014.03), p. 16

56) 백승래(2014.03), p. 14

57) 백승래(2014.03), p. 15

〈표 Ⅲ-6〉 인도네시아의 주요 사치품판매세의 대상과 세율

(단위: %)

구분		세율
향수		20
가죽류·도기제품·석제품 등		40
크리스탈 유리제품		40
귀금속·보석·진주 등		40 ~ 75
전자기기	가정용 냉장고·히터기·TV	10 ~ 20
	에어컨·식기세척기·건조기	10 ~ 20
	비디오 녹화기 및 재생기	10
	카메라 등	10
자동차	1,500cc 이하의 엔진 차량	10 ~ 30
	4,000cc 세단형 자동차 및 4x4 지프차와 밴	75
기타 운송수단	선박 또는 해상운송수단	30 ~ 40
	항공기	50
	고급요트	75
스포츠 기구 및 용품		10 ~ 50
약기		20

출처: 백승래(2014.03), p. 16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수입법인세(소득세)(Pajak Penghasilan, PPh)

- 인도네시아는 수입자에 대하여 물품 수입 통관 시에 선납법인세(소득세)를 징수하며 수입자번호 소지 유무에 따라 세율이 상이함⁵⁸⁾
 - 일반적으로 수입자번호(API)를 사용하는 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 과세가격에서 관세를 더한 금액의 2.5%(단 콩, 밀 및 밀가루에 대해서는 수입가의 0.5%)를 징수함
 - 반면, 수입자번호(API)를 사용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 과세가격에서 관세를 더한 금액의 7.5%를 징수함

- 2014년 1월 6일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완화 방안의 하나로 소비재 502개 품목에 대하여는 재무부령 제175호(Nomor 175/PMK.011/2013)에 따라 수입법인세율을 2.5%에서 7.5%으로 인상함⁵⁹⁾

58) 백승래(2014.03), p. 17

-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수입자번호(API)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수입자와 동일한 수입법인세율을 적용받음
 - 수입법인세율이 7.5%로 인상되는 품목은 향수, 식탁용품, 주방용품, 의류, 신발, 가방류, 가구, 신변장식용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PC, 진공청소기, 유무선 전화기, TV, 차량, 모터사이클, 자전거, 요트와 유람선, 시계류, 골프채, 낚시용품 등이 있음
- 수입업체는 매년 1회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선납 수입법인세를 공제 후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 신청하여야 함⁶⁰⁾

3. 관세평가제도

- 인도네시아는 1989년 이후 대부분의 품목을 증가세 적용으로 확대하였고, 에틸알코올, 주류 및 쌀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종량세를 적용함
- 인도네시아는 1989년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1989~1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증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키면서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킨 바 있음⁶¹⁾
- 인도네시아의 관세 부과기준 과세가격은 CIF 조건 가격임
- 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율 × 관세 환율임
 - 관세 환율은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무부가 매주 발표함
 - 종량세 적용품목의 경우 관세 과세표준은 단위수량이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산출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의 거래

59) 백승래(2014.03), p. 17

60) 백승래(2014.03), p. 17

61) 자카르타 무역관(2015.02), p. 50

가격이라 명시하였으나, 실무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 가격의 기준은 수출국의 정상 시장가격과 송장금액 중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다고 함

- 가령 동일한 수입자가 동일 품목을 수입할 경우, 최초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만약 최초 수입건을 소량으로 시장가격보다 높게 수입한 후에 거래가 성사되어 대량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는 동 품목의 수입가격이 최초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관세와 벌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⁶²⁾

□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신고서 제출 전 또는 수입신고 후 30일 이내의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 및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입관세금액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행정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세관의 결정으로 수입관세 납부금액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단, 수입업자가 이의신청한 경우는 제외) 수입업자는 부족한 수입관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 또한 수입업자의 과세가격 통보 오류로 인해 관세신고를 잘못하여 수입세 납부 부족이 발생한 경우 수입세 부족 차액분의 최소 100%, 최고 1,000%의 행정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출입 관련 무역업 종사자들에 대한 세관심사를 할 권한을 가짐

- 관세법 제 49조에 따른 수출입관련 무역업종사자는 다음의 자를 말함
 - 수입업자
 - 수출업자
 - 하선장소 사업자
 - 보세구역 사업자
 - 세관용역업자 또는 운송업자
- 세관심사의 대상은 통관관련 서류,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와 같은 사업관련 서류와

62) 자카르타 무역관(2015.02), p. 50

사업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임

- 재무제표, 회계장부, 회계장부 증빙자료 및 전자데이터를 포함하는 사업관련 공문 및 통관관련 서류 요청

- 관련 당사자들의 구두 및/또는 서면 답변 요청

- 사업장, 재무제표, 회계장부, 회계장부 증빙자료 및 전자데이터를 포함하는 사업 관련 공문 보관장소 및 통관관련 사업 활동 현황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 출입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통관관련 서류 보관장소 또는 사무실에 대한 안전조치

○ 세관심사 시 세관신고 물품 수량 및/또는 종류 오류로 수입관세 납부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최소 부족 수입 관세액의 100%, 최고 부족 수입관세액의 1,000%의 행정벌금이 부과됨

○ 또한 세관심사 대상자가 세관공무원의 세관심사 권한을 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750,000,000(7억 5천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됨

4. 관세환급제도

□ 관세의 환급은 수출장려 목적과 관세 과오납 또는 수입국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되돌려주는 것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됨

○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국가의 수출장려 목적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자나 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 보세구역(KB)과 수출목적 수입편의제도(KITE)제도가 여기에 해당됨

○ 물품 수입후 재수출 또는 계약 상이 등과 같이 수입국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되돌려주는 경우가 있음

-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7조에 재수출, 폐기 및 소송등에 따른 환급을 규정

□ 보세구역(Kawasan Berikat, KB, Bonded Area)은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상태로 수입하여 물품 제조 및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제세(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소득세)를 환급하여 줌으로써 수출을 장려하는 제도임

-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가공 원재료,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유예됨
- 단, 최소한 완제품 생산가치의 50%(반제품의 경우 40%) 이상이 수출되어야 함

- 보세지역 간의 거래나 보세지역과 일반회사의 하청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징수되지 않으나, 보세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원재료가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징수 유예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됨

- 수출목적수입편익(KITE)제도는 보세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내수용 공장에서 일부 물품의 수출을 전제로 수입되는 가공·조립용 원자재 등이 수입되는 때에 관세 및 소비세(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를 유예 또는 환급하는 제도임
 - 관세유예제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입 시 관세지급보증서(보험 및 은행 지급 보증서 등) 제출 필요
 - 환급제도: 수출물품 수출이 이행된 이후,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 기업체로서 보세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수출제조업체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목적수입편익(KITE)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제조업체 소유주번호(Nomor Induk perusahaan, NIPER)를 부여받은 업체가 추가 가공, 조립 또는 추가 수출을 위해 다른 물품에 첨가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됨

-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관세청이 수출목적수입편익(KITE)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면세 범위 확대 및 면세 신청과 환급 절차의 간소화임⁶³⁾
 - 기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만 면제하던 것을 부가세와 사치품판매세까지 면제

63)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KITE 관련 규정 개정」,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8.21

대상을 확대하였음

- 면제 신청과 환급 등에 대한 절차 자동화 · 간소화 등으로 수출목적수입편익(KITE) 제도의 허가 및 면제, 환급 절차 등의 간소화 등이 있음
- 보세제도 및 수출목적수입편익(KITE)제도와 유사한 자유무역지대(KPB 또는 FTZ)는 현재 바탐(Batam), 빈탄(Bintan), 카리문(Karimun)에 위치하며 이곳으로 들어가는 물품 또는 이 지대 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소비세 등이 면제됨
 - 자유무역지대로부터 인도네시아의 일반지역으로 물품 반출 시에는 모든 관세와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7조는 관세 과오납과 수입물품이 수입국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기납부된 수입관세의 전액 또는 일부의 환급이 가능함을 명시함
 -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결정 및 관세청장의 재결정에 의한 수입관세 과납 또는 행정 오류에 따른 과납
 - 관세 면제 및 감면대상 물품의 수입
 - 특정 사유로 재수출 또는 세관공무원 감독하에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 수입
 - 수입물품 신고 허가 전 수량이 훼손, 주문 오류 또는 품질 저하의 문제로 실제 수입 관세 납부액 대상 물량보다 적을 경우
 - 항소기관의 판결에 따른 수입관세 과납분

5. 관세의 감면 · 면제제도

- 인도네시아 관세법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세 감면 및 면제제도가 있으나 그 종류가 단순하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현지 관세관에 따르면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고 함
- 인도네시아 관세법에는 관세의 면세 및 감면 대상을 명시하였고 법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령으로 별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5조는 관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납부의무를 완화해주고 있음
 - 상호수혜 원칙에 의거, 인도네시아 내 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외국 대표부 직원의 물품
 - 인도네시아 내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 및 그 직원의 물품
 - 지식 서적
 - 종교 수행, 자선, 사회, 문화 또는 자연재해 대처 목적으로 기부되는 물품
 - 박물관, 동물원 및 기타 동종 공공장소 필요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자연보호 물품
 - 지식관련 R&D 목적의 물품
 - 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특별 물품
 - 무기, 탄약, 및 예비 부품 등 국방 및 보안목적 군사장비
 - 국방 및 보안목적의 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 또는 물질
 - 비매용 샘플
 - 시신 또는 화장재 박스
 - 이사화물
 - 특정 금액 또는 특정 수량까지의 승객, 승무원, 통행인 개인물품 및 우편 물품
 - 국민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수입하는 약품
 - 수선, 작업 및 시험 목적으로 기수출된 물품
 - 기수출된 물품을 수출 시의 동일 품질로 재수입한 경우
 - 인간 치료물질, 혈액 분류 및 bahan penjenisan jaringan(인체/동식물의 조직)

-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26조의 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상은 특정 산업에 사용되는 특수기기 또는 물품과 자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동 산업 발전의 부흥을 유도하고 있음
 - 투자 차원의 산업발전 및 개발용 물품 및 자재

- 산업건설 및 개발용 기계
 - 특정 기간의 산업발전 및 개발용 물품 및 자재
 - 환경오염 예방용 기구 및 원료
 - 농업, 축산 또는 어업 발전을 위한 모종과 씨앗
 - 허가된 포획도구를 통한 해양 포획물
 - 세관지역으로 반입 시점과 수입승인 시점 사이 고장, 품질저하, 분실, 자연적 수량 또는 중량 감소된 물품
 - 공익용으로 지정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물품
 - 국가중앙스포츠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스포츠 수입물품
 - 외국 대여금 또는 기부금으로 수입하는 정부 프로젝트 소요물품
 - 재수출용으로 가공, 조립 또는 타제품에 부착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 및 자재
- 인도네시아 관세법의 면세 규정을 위반⁶⁴⁾하여 국가 수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체납 수입 관세 납부 및 지급의무 수입세의 최소 100%에서 최고 500%가 행정 벌금으로 부과됨

6. 관세행정심판제도⁶⁵⁾

가. 세관의 부족세액 추징

- 통관 완료된 수출입신고서는 지역별 본부세관으로 이관되어 신고가격 및 품목분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며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세관은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징 절차를 진행함

64) 면세규정 위반이란 규정된 목적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가령 비매용 건 본 수입관세 면제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매매용인 경우임. 본 면제규정 위반의 적발은 세관 감독 또는 재조사시 및 세관심사시 발견됨 - 출처: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관세법」, 2013.09, p. 98

65) 백승래(2014.03), pp. 18-23 및 백승래, 「2013 인도네시아 수출입통관설명」,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2013. pp. 6-7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인도네시아에서는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자에 의한 자발적인 세액보정이나 수정신고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자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관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수입관세나 수출관세가 부족하여 추정하는 경우,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족한 세액에 따라 징수할 금액의 100~1,00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벌금부과 대상의 적용 관세율이 0%일 경우에는 신고건당 Rp 500만의 벌금이 부과됨⁶⁶⁾
- 세관 당국은 관세청 내부자료(기존 수입가격을 근거로 책정된 세관 자체 데이터 베이스), 온라인 마켓의 판매가, 시장가격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 단, 신고가격이 세관 자체 기준(통상 기준가격과의 5% ± 차이)에 미달 시 신고가격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인도네시아 통관심사관(PEPD)의 권한이 막강하여 민원인 대면이 어렵고, 이에 따라 신고가격심사 후 신고가격 불인정 및 추정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임
 - 2008년 4월 이후 부족 세액 추정 시 벌금이 상향 조정되었음(PP N0. 28, 2008년 4월 11일 시행)
 - 기존의 최대 500%에서 1,000%로 상향 조정
 - 벌금은 세관의 확정가격과 신고가격 차액 정도에 따라 부과

〈표 Ⅲ-7〉 인도네시아의 추정액에 따른 벌금액

벌금대상 기준금액	벌금액
부족액이 기납부액의 25%보다 적을 경우	추징세액 × 100
부족액이 기납부액의 25% ~ 50% 해당시	추징세액 × 200
부족액이 기납부액의 50% ~ 75% 해당시	추징세액 × 400
부족액이 기납부액의 75% ~ 100% 해당시	추징세액 × 700
부족액이 기납부액의 100%를 초과할 경우	추징세액 × 1,000

출처: 백승래(2014.03), p. 19

66) 관세부문 행정 벌금에 관한 2008년 28호 정부 법령(Nomor 28 Tahun 2008)

- 과오납된 관세나 조세법원의 결정으로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관세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입자는 관세환급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환급을 받을 경우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매달 2%의 보상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음

나. 추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세관의 부과통지에 대해 불복하는 수입자는 세관으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불복청구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불복의 유형은 주로 HS 코드(세번분류)의 오적용이나 과세가격 결정, 행정벌금의 부과, 기타 세율 또는 관세 부과에 대한 오류 등임
 - 불복청구서에는 과세 대상자가 불복청구를 하는 사유와 과세 대상자에 의해 계산된 세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불복청구를 하려는 수입자는 세관의 관세 부과금액 만큼 예치금 등의 담보(Bank Guatantee, Customs Bond, Cash Deposit 등) 또는 90일 이상 유효한 은행보증서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세관당국은 불복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도록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복청구자의 불복이 인용되는 것으로 간주됨
- 불복청구자가 세관당국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관의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세법원(PENGADILANPAJAK)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 경우 불복청구자는 미납된 세금 등을 불복소송 제기 전에 완납해야 함
- 조세법원에서의 소송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며 조세불복과 관련된 당사자는 소송 상대방의 위증·사기·거짓 증거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등 판결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판결이 내려진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Peninjauan Kembali, PK)를 할 수 있음

- 상고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할 수 있음
 - 소송 상대방의 위증·사기·거짓 증거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 조세법원에서 중요한 문서 증거가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증거가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 이유 없이 일부 증거가 무시되었을 경우
 - 다른 증거가 존재할 경우
 - 판결이 현행 법률과 불일치할 경우

- 인도네시아의 세관당국의 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주로 2심으로 종결되며, 1심은 세금을 부과한 세관당국에서 결정을 하며, 2심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소속 조세법원에서 진행됨

- 인도네시아는 수입자에 의한 자발적인 세액보정이나 수정신고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관에 의문이 있다면 미리 세관과 협의를 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신고가격 및 품목분류 등의 객관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확하고 성실한 가격신고 및 수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철저 준비 및 제출
 - 과세가격 신고에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에 세관 고객담당관(Client Coordinator)에게 문의
 - 조정관세 부과 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
 - 이의신청 시 신고가격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송금자료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

-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절차의 자세한 사항은 인도네시아의 관세사를 통한 현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고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세관에 문의할 수 있음

IV.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

1. 통관행정 조직⁶⁷⁾

-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DGCE)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직속 기관으로 관세 및 소비세 관련 정책 및 기술 시스템을 설립하고 집행함

-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산하에 16개의 본부 세관을 비롯하여 총 140여 개의 세관을 두고 있음⁶⁸⁾
 - 관세소비세청국은 8개의 업무국(Directorate)과 사무국 및 감사관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지역본부세관(16개), 직속세관(2개), 일선세관(114개), 감시서(694개), 세관 분석소(3개)와 감시정 센터(3개)가 있고 총인원은 11,000여 명임
 - 관세소비세총국의 설립 목적은 수입 물품에 관세 및 수입 세금 부과·징수를 통한 국고 확보, 통관 관련 법령의 시행,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밀수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

- 최근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은 세관 개혁(Customs Reform)에 착수했으며, 세관 개혁의 핵심은 직속세관(Main Service Office; KPU) 신설과 국가단일창구(Indonesian National Single Window, INSW)의 운영임⁶⁹⁾
 - 직속세관(KPU)은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업무처리 기법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고품질 서비스와 능률적인 통제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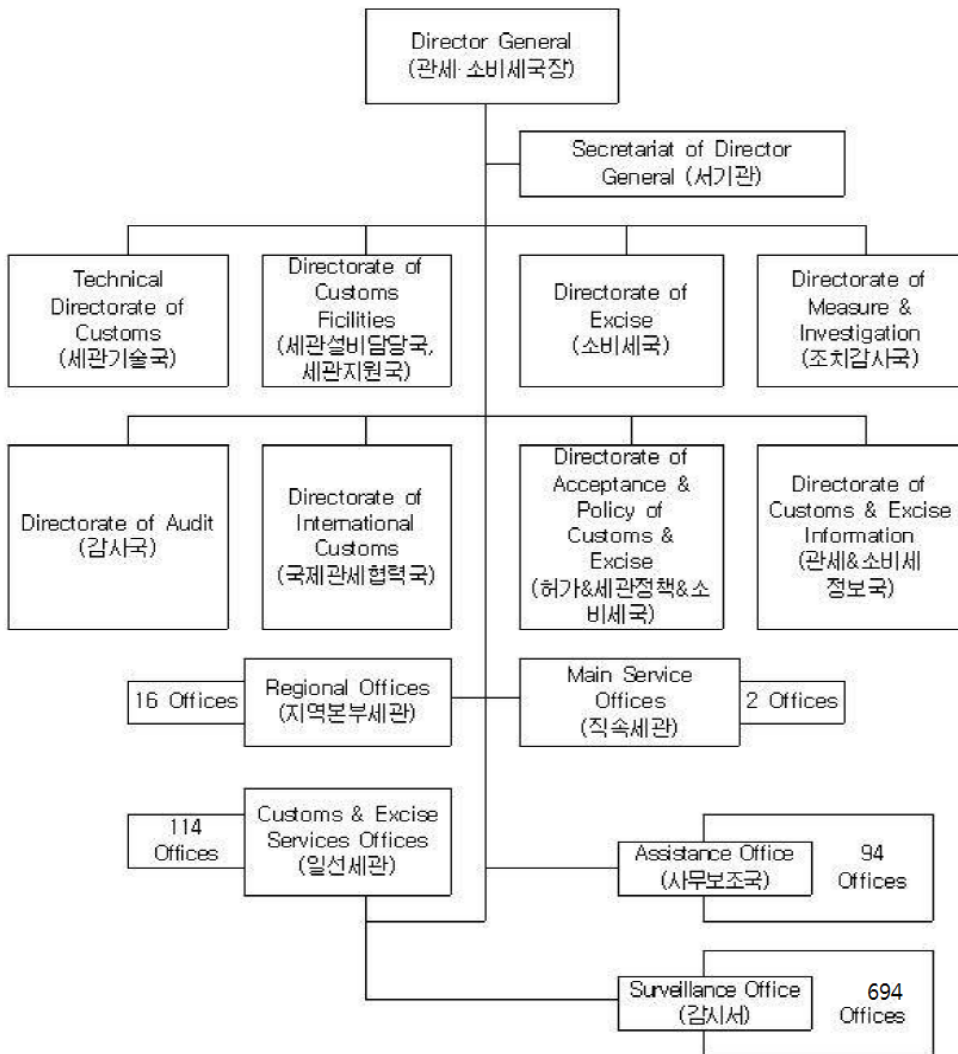
67)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29

68)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관세청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2012.01), p. 133

6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29

- 국가단일창구(INSW)는 세관 통관을 위해 통합 자료 및 정보제출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향후 아세안 싱글 윈도우(Asean single window, ASW)의 일부가 될 것임

[그림 IV-1]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조직도



출처: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2.01), p. 134

- 관세소비세총국 이외에 인도네시아의 무역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부처는 무역부 (Ministry of Trade)로 각종 수입 인증, 라벨링 등을 담당함⁷⁰⁾

- 무역부 내 수출진흥국, 국내거래국, 국제거래국, 국제무역협력국,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국 등이 존재하여 국내외 상거래를 관리함
- 효과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GPS 시스템과 초고속 인터넷과 화상통신 등이 가능한 2.5세대의 이동전화 기술(general packet radio service, GPRS)이 탑재되어 있는 진보세관무역관리시스템(CATS)을 시행하고 있음⁷¹⁾
 - 이는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 항구 정체를 막기 위해 그리고 보세구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음
 - 정부는 진보세관무역관리시스템(CATS)가 물류비를 절감하여 세관 관련 물류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통관절차

가. 수입통관절차⁷²⁾

-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입신고 전 관세 및 제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이 절차상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후 서류 및 물품 검사를 모두 마친 후 관세 등을 납부함
- 신고전 세금납부와 함께 선통관 사후심사 원칙(Post Auditing)이 통관 제도상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음
 - 지역세관에서 수입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관으로 이관되어 신고 내

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30

71)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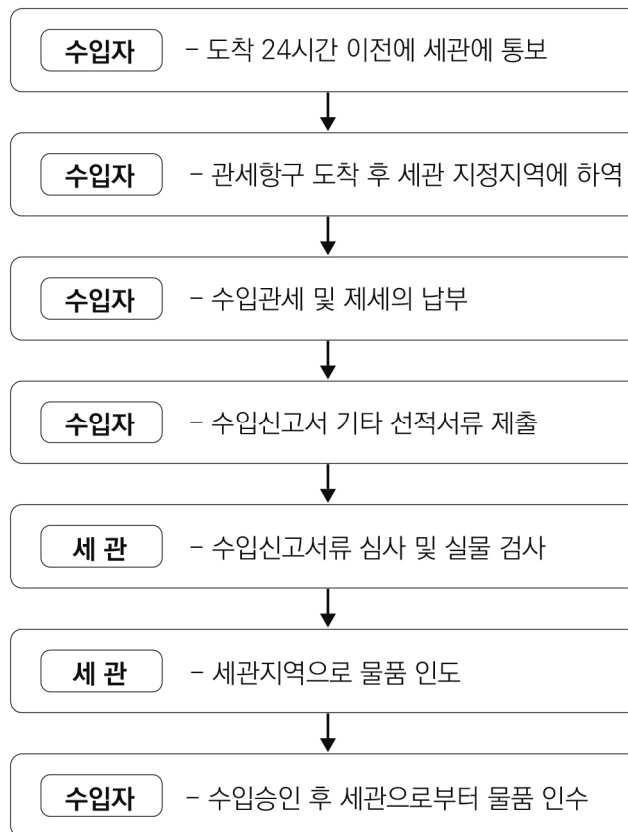
72) 백승래,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연구」,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2014.05, pp. 11-15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2012.12, pp. 11-1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용 제반 사항이 2년 이내에 재검토됨

- 관할 세관의 검증 과정 중 수입가액 또는 관세율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관세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업체 감사(auditing)를 실시하기도 함
- 감사를 대비하여 수입자는 기통관된 수입신고서와 선적 서류 및 수입가격 입증 자료 등 각종 관련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고 있어야 함

○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신고 후 물품을 반출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행정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음

[그림 IV-2]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절차



출처: 저자 작성

- 수입통관절차는 크게 ① 도착 전 세관에 통보 및 지정지역에 하역 → ② 수입 관세 및 각종 세금 납부 후 수입신고서 전송(EDI, 서류, 디스켓 등) → ③ 수입신고서 및 각종 수입자 필수 구비서류를 세관에 제출 → ④ 세관의 물품 검사 여부 결정 → ⑤ 검사로 지정된 경우 검사관과 함께 검사 실시 → ⑥ 통관 승인받고 화물출고 동의서 수령 → ⑦ 창고 비지불 후 출고 순서로 구분됨

1) 수입신고 및 지정지역 하역

-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진입하기 최소 24시간 이전에, 운송사는 세관에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시 다음의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운송사의 상호
 - 항공편, 선박편 등의 운송수단의 식별번호
 - 운송수단의 명칭
 - 출발항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진입 직전의 최종 기착지 · 목적항
 -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일
 - 하역예정의 포장개수, 컨테이너 수 또는 벌크물품의 물량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내의 다음 목적항
- 운송수단이 관세항구에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선적된 모든 화물 및 부속물과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세관신고서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선박 도착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항공기 도착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육로운송의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 세관신고서에는 다음의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명단
 - 운송수단의 연료/식량 공급계획
 - 운송수단의 적재계획
 - 총기류의 목록

- 마약류를 포함하는 치료용 의약품의 목록

- 수입된 물품은 조사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할 수가 있으며 이때 운송사는 12시간 이내에 하역된 컨테이너 혹은 벌크 물량의 수기 또는 전자목록을 세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세금 납부와 수입신고

- 수입신고 전,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외국환 은행 또는 세관을 통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하여야 함
 - 판중 프리옥(Tanjung Priok)항과 스카르노 하타(Soekarno-Hatta)공항 등 전자신고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시스템이 잘 구축된 곳에서는 전자적으로 관세와 제세의 납부가 가능함
- 수입신고는 수입자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서(PIB⁷³⁾)는 세관에 따라 서류 제출, 디스켓 등(USB, CD 등) 전자매체 이용 제출,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직접 접속으로 제출(EDI) 가능함
 - 4개의 주요 세관인 판중 프리옥(Tanjung Priok) I, II, III 세관과 스카르노 하타(Soekarno-Hatta) I - II 세관은 PIB를 전자신고방식(EDI)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세관은 서류 제출 또는 디스켓 등(USB, CD 등)의 매체를 통해 제출함
- 수입자는 다음의 수입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관세사(PPJK⁷⁴⁾)를 설정해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C/O) 기타 필요한 선적서류들을 관세사에게 제공⁷⁵⁾

73) Pemberitahuan Impor Barang(Declaration of Importation of Goods)

74) P.P.J.K(Pengusaha Pengurus Jasa Kepabeanan): 세관에 등록된 관세회사

75)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및 제도」,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9594,

- 사업자등록증(Surat Ijin Usaha Perusahaan, SIUP)
 - 관세청에 등록된 회사 등록번호(Nomur Identities Perusahaan, NIK)
 - 카드 크기 납세자 등록증(Nomor Pajak Wajib Pajak, NPWP)
 - 수입자 등록증(Angka Pengenal Importir, API)
 - 생산공장 소유한 수입자 등록증(Angka Pengenal Importir-Produsen, API-P)
 - 일반 무역업자 수입자 등록증(Angka Pengenal Importir- Umum, API-U)
 -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등록된 등록증(Tanda Daftar Perusahaan, TDP)
 - 사업장 소재지 촌장 발행 확인서(Surat Kerangan Domisili, Domisili)
- 관세사는 수입자가 제공한 서류를 기준으로 수입신고서(PIB⁷⁶⁾)를 작성해 세금을 지불하고 통관절차를 밟게 됨
- 수입신고서에는 신고자, 수출자의 성명과 주소,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 신분,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 선박 명칭, 물품 명세, 물품 가격 등이 기재됨
- 한-아세안 FTA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관세율 항목에 한-아세안 AK-FTA 관세임을 밝혀야 함
- 수입신고 후 최대 4시간 이내에,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의 접수 및 거부 여부와 어느 반출통로(Channel of Release)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으로부터 통보받게 됨
- 만약 세관이 신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거부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함
- 수입신고 시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Insurance Policy 등)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이라면 인도네시아에서 적하 보험 부보가 가능함(보험증권 구비)
 - 본선인도조건(FOB)란 매도인이 선박의 적재부터 본선상의 화물 인도의 끝까지를

검색일자: 2015.09.01

76) P.I.B(Pemberitahuan Impor Barang: 수입신고서

책임지고, 이후는 매수자가 책임지는 무역상거래의 조건임

- 한-아세안 FTA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선적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C/O)도 한-아세안 AK-FTA용으로 구비해야 함
- 선하증권(B/L)상의 수입자와 수량, 중량, 품명 및 B/L 번호 및 컨테이너 번호가 수입신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
- 운송수단 도착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운송사가 승인한 항공운송장(AWB) 또는 선하증권(B/L) 사본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음

- 신고가격이 세관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불인정 가능성 높음
 - 세관은 세관 내부자료 데이터 베이스, 온라인 마켓에서 형성된 판매가, 시장가격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신고가격을 확인하며, 통상적으로 5%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음

3) 세관의 심사 및 통관

-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및 상업송장, 포장 명세,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증거자료 등의 첨부 문서들을 검토하고, 세관 직원의 판단에 따라 물품의 실물검사 여부가 결정됨
- 신속한 물류 흐름을 위하여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물품(예: 고관세 적용 물품), 공공에 위협한 물품, 블랙리스트(Blacklist)상의 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초점을 맞추어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과거 수입자의 정보(Past Record of Importer), 물품 정보(Data of Commodity)와 기타 정보를 통하여 위험도 판단
 - 범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 시, 또는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자동 선별된 결과가 고 위험 채널(Red Channel)인 경우 물품 검사가 실시됨
- 세관은 수입자와 수입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Red), 위험(Yellow), 우수(Green),

최우수(Mitra Utama, MITA) 4가지 중 하나의 채널을 지정하여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여부를 결정함(〈표 IV-1〉 참조 (채널링 시스템(Channeling System)))

〈표 IV-1〉 인도네시아의 통관 Channeling System

통관 채널	통관 절차	위험 분석	지정기준
Red Channel (고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검사 및 서류 심사 • 수입통관품은 모든 납세 의무(별금 포함)를 다한 후 반출 • 검사 관련 비용 부담 • 관세 납부 후 통상 5~7일 내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 자체(수량, 종류)에 위험성 상존, 수입자의 비일관적인 비즈니스 형태로 위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입자 및 고위험 신용 보유자, 고위험 품목 수입자
Yellow Channel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검사 생략, 서류 심사 • 수입통관품은 모든 납세 의무(별금 포함)를 다한 후 반출 • 관세 납부 후 통상 3~4일 내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상 위험성 상존, 재정적인 보증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Red Channel 지정 후 1년간 관세법규 위반 사실이 없고 우수 수입실적 보유
Green Channel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심사(통관 후) • 수입통관품은 검사 후 즉시 반출 • 관세 납부 후 통상 12시간 내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상 위험성 상존, 재정적인 보증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llow Channel 지정 후 3개월간 관세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 • 통상 제조업, 무역업은 고신용도 업체
MITA Channel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및 서류심사 면제 • 관세 사후납부 및 신속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ck Record가 검증된 회사 수입, 내부적 통제 가능, 지속적이고 확실한 비즈니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도와 재정력이 매우 우수한 성실업체 • 지명도가 높은 업체

출처: 백승래(2014.05), p. 15

□ 공장이 보세구역 안에 있거나 자체 보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수입신고하고 세관에서 전산으로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신속 통관이 가능함⁷⁷⁾

○ 보세구역 내 수입자 공장에서 세관과 컴퓨터로 연결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자체적으

77)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및 제도」,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9594,
 검색일자: 2015.09.01

로 면장 작성 후 세관 신고하며 세관에서는 간단한 서류검사만 하고 화물을 받을 수 있음

- 수입신고 및 선적서류 처리를 신속하게 하면 선박이 항구 도착 후 1~2일 안에 수입 물품을 전달받을수 있음

□ 공장이 보세구역 안에 있지 않거나 자체 보세허가가 없는 일반 통관의 경우 채널링시스템(Channeling System)에 의해 고위험(Red), 위험(Yellow), 우수(Green) 그리고 최우수(MITA) 등급에 따라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각 등급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이 상이함⁷⁸⁾

- 고위험(Red)은 통상 신고 후 7일 정도, 위험(Yellow)은 약 4일 정도, 그리고 우수(Green)는 약 1일 정도 소요된다고 함
- 대체로 수입하는 모든 회사는 2~3년간 모든 수입화물을 고위험(Red)으로 분류하고 수입 통관서류가 통관업체를 통해서 제출되면 서류검사 및 실제 화물검사를 수입회사가 성실히 규정에 따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까다롭게 심사함
- 서류검사 및 물건 검사에서 2~3년간 이상 없이 통관되면 위험(Yellow)으로 이동하며 위험(Yellow)이 되면 3일 정도 서류조사 후 우수(Green)으로 바뀌어 화물을 찾을 수 있게 됨

□ 위험(Yellow)에서 선적 서류심사 중 물품가격, 수량 등에 의심이 발생하면 해당 수입물품은 고위험(Red)으로 회귀하여 통관 수속을 재진행하고 물품검사 및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⁷⁹⁾

- 선적 서류 중 면밀하게 검토하는 항목은 송장가격(Invoice value), 중량, 수량, 수출입자 명의, 수입 필요서류, 쿼터(Quarter)품목 여부, 사전검사 품목 여부 등임
- 통관수속을 고위험(Red)으로 재진행 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고, 벌금을 부과받게 되면 다음 수입 시 고위험(Red)에서 통관 수속을 진행하게 됨

78) 상동

79) 상동

- 위험(Yellow)에서 1년 정도 통관에 이상이 없으면 1년 후 최초 수입건은 우수(Green)로 변경되어 보세구역에 있는 업체와 동일하게 배 도착 1~2일 후 화물을 찾을 수 있음⁸⁰⁾
 - 그러나 세관 판단에 따라 수입 10건에 약 1건 정도는 무작위로 고위험(Red) 통관 수속을 받을 수 있음

- 법규 준수도 및 신용도가 높은 우수 성실업체는 특급 경로인 최우수(MITA)채널로 지정 받아 신속 통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물품검사와 서류심사를 받지 않아 세관에 원본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므로 신속 통관을 보장받게 됨
 - 그러나 일시 수입물품 또는 재수입 물품, 첩보 정보가 있는 물품 수입, 관세국장이 특별히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창고에서 검사를 실시함
 - 최우수(MITA)와 기타 채널과의 차이점은 최우수(MITA)는 단순한 통관지원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에 기반한 시스템이며, 고객관리사(Client Coordinator)와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 모든 관세 문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최우수(MITA) 지정 요건이 엄격하므로 많은 수입업체가 혜택을 볼 수 없어, 우수(Green)과 최우수(MITA) 중간에 'MITA Non-Priority' 채널을 신설함
 - MITA Priority와 Non-Priority의 주요 차이점은 관세 유예 여부이며, 현재 MITA Priority 업체는 105개(한인업체 약 5개, 일본계 20여개)이고, Non-Priority 업체는 200개 정도임
 - MITA Priority Channel로 지정받기 위해 수입업체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시스템과 신용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하며, 또한 관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고, 회계 감사 결과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업 분야가 명확하고 특화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80) 상동

4) 물품검사 후 화물 출고

- 채널링 시스템(Channeling System)에 의해 고위험(Red)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세관의 검사관과 함께 실제 화물을 검사함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위험(Red)로 지정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가적인 통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 간, 서류와 물품 간 내용을 일치시켜 물품검사의 정확성을 기해야 함

- 물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은 통관을 승인하며, 화물 출고 동의서를 발급함
 - 수입물품의 인도 시점은 화물의 대기 순서 분류에 의하며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관세 납부 후 통상 3~4일 내 통관이 되며 우수(Green)의 경우 수입신고 승인 후 30분 이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함

- 발급받은 화물 출고 동의서를 물품창고에 제출하고, 창고비용을 지불한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수입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의 기간 동안 항구의 임시창고(창고 혹은 노상장소)에 보관될 수 있으나 지정기간 내 통관이 허가되지 못한 물품은 세관에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음
 - 수입물품이 Tanjung Priok 항에 하역된 경우, 임시보관의 최장기간은 1개월임
 - 지정된 기간 내에 통관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세관이 제거, 폐기, 재수출 혹은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나. 수출통관절차⁸¹⁾

가) 수출통관 일반

- 수출자 또는 대리인(관세사)은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신고서(PEP/BC 3.0 Form)⁸²⁾를 제출해야 하는데, 통관지 세관의 사정에 따라서 서류에 의한 수작업 방식, 전자적 매체(USB, CD 등)에 의한 신고방식, 전자신고방식(EDI) 3가지로 할 수 있음
 - 수출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세국에서 제공한 수출 모듈(Software)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방식(EDI)시스템을 통해 해당 세관에 수출신고를 함
- 원활한 수출통관을 위해, 수출자/관세사는 수출신고 예정일로 또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7일 전까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 세관은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해 24시간 수출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수출신고에 필요한 내용은 수출자와 수입자 정보 등 6가지 항목이 있음
 - 수출자, 수입자 정보
 - 수출목적(일반수출, 재수출 등)
 - 수출품 설명(HS코드, 물품명세, 대금지급방법 및 수출가격 등)
 - 첨부서류(송품장, 포장명세서, 수출제한물품인 경우 추천서 등)
 - 수출세 부과대상물품인 경우 수출세납부 확인서
-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당국은 컴퓨터상에서 자동으로 서류심사를 하며, 수출승인 또는 수출신고 반려 등 심사결과를 통보함(수출검사 필요시 검사실시 통보)
 - 5개 주요 세관(Tanjung Priok, Tanjung Perak, Soekarno, Tanjung Emas, Belawan in Medan)에서 이미 전자신고방식(EDI)에 의한 수출통관시스템을 운영하

81) 백승래(2014.05), pp. 19-21 및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세관 수출통관제도」,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8.24. 활용하여 저자 작성

82) Pemberitahuan Ekspor Barang(Declaration of Exportation of Goods)

고 있으며, 이 5개 주요 세관에서 전체 인도네시아 수출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함

- 수출품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함
 - 재수입 물품
 - 수입 시점에서 다시 재수출되는 경우
 - KITE(수출지역)에서 수출되는 경우
 - 수출관세 부과대상 물품인 경우
 - 신고인이 관세법규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혐의가 있는 경우

- 수출품 검사방식은 전량 검사방식에 의하며, 검사비율은 10% 정도이며, 수출검사 장소는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음(세관 CY, 수출자 창고 등)
 - 최근 관세국은 수출물품 검사 시 첨단장비(컨테이너 X-Ray Machine, gamma ray equipment)를 주요 항만에서 사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령 제41호/PMK.04/2014호에 의거 2014년 3월 1일부터 수출 신고시 수출 가격을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음⁸³⁾
 - 수출자가 본선인도조건(FOB) 무역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보험료와 운임은 무역부장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 기재토록 하였으며, 수출자가 운임포함인도조건(Cost and Freight, CFR) 무역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보험료는 무역부장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 기재토록 하였음
 - 또한 수출자가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무역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보험료와 운임은 실제 가격에 따라 수출신고하도록 하였음

- 이는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외국 수입자와 거래시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무역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신고시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으로 보고토록 의

83)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2014. 3. 1일부터 수출신고시 CIF 가격 보고 의무화」,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8.24

무화한 것임

나) 수출세⁸⁴⁾

-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세 납부대상 물품은 수출 전 물품검사 대상임
 -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됨
 - 수출세율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매월 규정하고 있음
 - 수출세 납부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 전 세관당국이 물품검사를 진행함

- 수출세 부과대상은 2014년 5월 기준으로 가죽과 목재 (Leather and wood), 코코아두 (Cocoa Beans),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Palm oil, Crude Palm Oil, and its derivatives products), 광석 또는 그 원료(Raw materials or Ore of minerals) 등임(〈표 IV-2〉참고)

〈표 IV-2〉 인도네시아의 수출세 적용대상과 세율

(단위: %)

구분		세율
가죽과 목재	소·양·염소 원피	25
	소·양·염소의 무두질한 가죽	15
	베니어용 단판	15
	포장박스용 Wood Chips	5
코코아두와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코코아두(국제시세 또는 국내시세 기준)	0 ~ 15
	팜열매	40
	팜오일 케이크 및 기타 팜열매·팜씨의 잔류물	20
	기타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기준가격과 종류별)	0 ~ 22.5
광석 또는 그 원료	금속광물(철광석, 망간석, 구리석 등 21종)	20
	비금속광물(석영, 석회석 등 10종)	20
	석재(대리석, 화강암 등 34종)	20

출처: 백승래(2014.05), p. 2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84) 백승래(2014.05), pp. 21-22

- 수출세 납부대상 물품을 수출 시 수출세를 선납하고 사후심사에서 부족세액 발생 시 세관에서 추징 및 납부고지서를 발부함
 - 수출자가 수출세 납부대상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세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수출자가 납부한 수출세가 부족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추징 절차를 진행하게 됨
 - 수출자는 세관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부족한 수출세와 행정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3. 보세제도(Kawasan Berikat, KB; Boded Zone)

가. 보세제도 일반⁸⁵⁾

-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세지역(Kawasan Berikat, KB; Boded Zon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세업체는 아니지만 수출 장려책으로 수출목적 수입편익(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제도를 운영하여 관세 면세 및 부가가치세 유예 혜택을 주고 있음
 - 보세구역의 유형은 크게 하선장소(TPS), 세관장치장(TPP), 특허보세구역(TPB)으로 구분됨
 - 특허보세구역은 다시 보세지역(Kawasan Berikat; KB)과 보세창고(GB), 보세전시장(TPPB), 보세판매장(TBB), 보세경매장(TLB), 보세재활용처리장(KB)으로 구분됨
 - 수출목적수입편익(KITE)제도는 수출을 전제로 수입되는 가공·조립용 원자재, 수출 물품에 설치될 물품, 수출용 물품 등이 수입되는 때에 관세 및 소비세(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를 유예 또는 환급하는 제도임
 - 자유무역지대(KPB 또는 FTZ)는 현재 바탐(Batam), 빈탄(Bintan), 카리문(Karimun)에 위치하며 이곳으로 들어가는 물품 또는 이 지대 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소비세 등이 면제됨

85) 백승래(2014.05) 및 외교통상부(2014.12), pp. 384-38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보세지역(KB)에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일반 수출입 절차와 유사하나, 보세지역 관할세관에서 보세지역으로 현지 파견된 공무원이 물품 관리를 하고 항만세관에서는 물품검사를 생략하므로 항만세관에서는 통상 1일 정도 소요되는 등 신속통관이 이루어짐
 -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주로 조립, 가공을 위한 원자재로서 수입 항구세관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서 보세지역으로 이동하게 됨
 - 일반적인 수입통관시에 사용되는 수입신고서 양식(BC 2.0)이 아닌,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서 양식(BC 2.3)을 사용함
 -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수입 시 수입항구 관할 세관은 물품검사와 서류심사를 생략하게 되며, 통관 완료 후 물품 반출시 세관봉인을 부착하여 목적지인 보세지역까지 운송을 감시하게 됨
 - 보세지역에는 특과 세관공무원이 상주하면서 모든 반출입 물품에 대한 서류와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함
 - 수입항구로부터 보세지역에 도착한 수입물품은 특과 공무원으로부터 세관봉인 이상 유무,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고 보세지역 창고에 반입하게 됨

- 인도네시아 세관은 지난 2012-2014년까지 보세지역 관련 법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2012년 1월부터 보세지역(KB)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보세지역제도의 원래 기능 환원, 서비스 향상, 보세지역 통제 강화, 보세지역 전산화 및 보세지역 위치 통합 등임⁸⁶⁾
 - 2013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내수판매를 종전의 전년도 수출금액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함
 - 보세지역업체의 전산재고시스템(IT Inventory) 설치를 의무화(2014년 10월부터 실시)하면서 모든 보세지역업체를 위험도에 따라 적색(Red), 황색(Yellow), 녹색(Green)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면서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보세지역에서 밀수 또는 보세물품 국내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인도네시아 세관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됨

86) 백승래, 「2013 인도네시아 수출입통관설명」,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2013, p. 4

- 심사조직을 본청 심사국에 두도록 재편하여 수출입업체, 보세지역업체 및 물류업체 등에 대한 사후심사(Audit)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나. 전산재고시스템(IT Inventory)제도⁸⁷⁾

- 인도네시아 세관은 보세업체에 파견되어 보세물품 반출입을 직접 관리하는 세관공무원파견 제도(Hanggar)를 축소, 물품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 도입을 추진하여 왔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임
 - 모든 보세지역 업체들은 인니 세관에서 정한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 매뉴얼을 참조하여 업체 내부적으로 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의 주요 목적은 원자재의 정확한 반출입 현황을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것과 세관에서 CCTV로 물품 반출입을 검사함으로써 세관 직원의 파견비용을 절감하는 것임
 - 보세지역 업체들은 원자재의 종류별 반입/반출, 재고 물품의 처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반드시 재고현황, 반입/반출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또한 세관 전산망과 동 시스템을 연결하여 세관에서 동 시스템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반출/반입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동 CCTV를 세관과 연결하여 세관에서 CCTV를 항상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현재 인도네시아 세관은 보세구역업체를 우수(Green), 보통(Yellow), 불량(Red)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급은 6개월에 한차례씩 조정될 예정인데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 설치 및 운용 여부가 가장 큰 평가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세관에서는 4개월에 한번씩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에 입력된 기록과

87)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보세지역(KB) IT Inventory 제도」,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8.24.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실제 기록 간 상이 여부를 확인

- 기존에는 과거 범위반 여부, 실소유주와 업체 대표자와의 동일성 여부, 회사위치 등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을 추가하고 여기에 제일 많은 배점(30%)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불량(Red)등급을 받게 되며, 불량(Red)등급을 연속 두 번 받을 경우, 물품의 수출 수입이 중단됨
- 현재 5개 보세업체에 세관직원 1명이 상시 파견되어 활동했으나, 앞으로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불량(Red)등급을 받은 업체에만 세관 직원이 상주할 예정임
 - 다만, 폐원자재 소각의 경우는 우수(Green)등급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반드시 세관직원이 육안으로 검사

4. 원산지 제도

- 인도네시아에서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사용은 통관서류로서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 후 관세환급 신청시에 사용되며 대한상공회의소(KCCI)에 물품 선적 전 발급받아 현지 통관시 제출함
 -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반 C/O, 특혜관세 C/O, FTA C/O, 국가명기 C/O 및 수출자 C/O 총 5가지 유형의 C/O를 발급하며 한국과의 FTA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의 무역에는 FTA C/O가 발급됨
- 인도네시아 수출시 특혜 목적의 C/O 사용은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GSTP)와 한-아세안 FTA 활용이 있음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주관하에 체결된 무

역 협정입⁸⁸⁾

- 개도국간의 교역증진을 위한 상호간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생산 및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하였음
- 1989년, GSTP협정문에 의거, 48개 서명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29개국이 합의 함으로써 GSTP가 정식 발효되었음
- 2015년 8월 현재는 한국을 포함하여 44개국이 협정국가로 남아있으며, 11~13개국이 제3차라운드 협상을 진행중이며, 각 국가별 양허안을 마련중임

□ GSTP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며 양허대상물 품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폴리프로필렌으로 10%의 관세율을 적용받음⁸⁹⁾

□ 두 번째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From AK FTA C/O) 가 있음⁹⁰⁾

-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AK C/O를 발급받 아야 함
- 한국의 수출업자는 수출물품 선적 전 또는 인도네시아 세관에 도착하기 이전에 대 한상공회의소로부터 C/O 원본을 발급받는 것이 권장됨

□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는 협정 제5조 및 부속서3과 그 부 록에 규정되어 있음

□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다루며,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 로 구분됨

-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3조에서 완전생산기준이란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88)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https://cert.korcham.net/origin/index.htm?method=list&docSnum=24&menu=1>,
 검색일자: 2015.08.24

89)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ctadxi.org/templates/Page____6206.aspx 에서 확인 가능

9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2012.12, p. 15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수출국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임

- 제4조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상품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의 경우 적용 가능하며 세번 변경기준(HS 4단위)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수출국으로 적용하는 기준임
 - 부가가치기준은 역내가치 포함비율(RVC)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닌 상품을 수출국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직접법(BU)과 공제법(BD)이 있음
 - 일반적으로 농수산품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공산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 중 대체로 세번변경기준(HS 4단위)을 이용하며,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적용이 어려운 물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
- 제8조에서는 원산지 공정이 단독으로 수행되거나 다른 공정과의 결합만으로 완성되는 경우 등 단순한 형태의 공정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인정 공정의 종류에 대해 설명함
- ‘단순한’의 의미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함
 - 운송 혹은 저장 중에 상품을 우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 공정
 -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
 -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 세척, 세정, 제거
 -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
 -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
 - 단순한 껍질 벗기기, 씨 제거, 또는 탈각
 -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 채질,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
 -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모든 다른 단순한 포장 공정
 - 표식,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지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

- 다른 종류간이건 아니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화학반응이 없는)
 -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산품을 부품으로 해체하기
 - 단순한 실험 또는 측정
 - 동물의 도축(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
- 제 9조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을 출발하여 제 3국 경유 없이 곧바로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임
- 다만,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제3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이 입증되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것이어야 할것
 -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기타 원산지결정기준의 보충적 기준인 재료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과 최종재의 소매용 포장재 및 부속품 등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제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7조의 재료누적기준이란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의 원산지는 최종재의 원산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 제10조의 최소허용수준이란 세번변경기준을 제외한 3가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품의 HS 코드에 따라 해당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또는 중량이 해당 물품의 일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 소매용 포장재(제11조), 부속품과 예비부품 및 공구(제12조), 중립재(제13조) 및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제14조)까지 원산지 결정기준의 제반사항임

- 2014년 1월1일부터 한·아세안 FTA협정상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원산지증명서양식(Form AK) 및 작성요령이 개정되었음⁹¹⁾
 - 수출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제10조 제1항)
 - 오류정정을 위하여 새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본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간 유효
 - (기재사항)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 및 제조자명 기재 생략(제5조 제3항 및 각주, Form AK, Overleaf Notes 제5항·제6항)
 - (발급시기) 수출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기를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3 근무일 이내’로 명확화(제7조 제1항·제4항)
 - (을지사용)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을지 사용 허용 및 을지양식 채택(제5조 제1항·제2항, 첨부문서 2)
 - (오류정정) 줄을 그어 지우고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도 허용(제6조)
 - (기타)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본문(제5조 제2항)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제목에서 ‘Quadruplicate’ 삭제(Form AK)

91) 대한상공회의소, 「2014.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Brief/appl/EconInfoDetail.asp?SEQNO=96161>.
 검색일자: 2015.10.29.

5.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제도 현황⁹²⁾

- 인도네시아 세관은 2010년 성실무역업체(이하 “AEO”)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령(Ministry Decree No 219 of 2010, Customs Treatment towards AEO)을 제정한 바 있고, 2011년 현재 세부규정인 관세청장 고시를 준비 중에 있음
- 인도네시아의 AEO제도의 출발점은 세관명령 준수프로그램(Customs Compliance Program; Main Partner Priority Lane)⁹³⁾이며, 혜택은 AEO 업체에 주어지는 혜택과 거의 유사함
 - 동 제도를 AEO로 승격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은 보완기준(Security Standard)을 추가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세청장 고시가 제정 및 시행되는 대로 AEO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1년도 하반기 AEO제도를 본격 도입 예정이라 밝혔으나 현재 2017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AEO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4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관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음⁹⁴⁾
- 동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노력, 성실무

92)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니 관세청 AEO 시범사업 및 Priority Channel 신청 안내」 및 「한-인니 AEO 협력 및 인니 관세청 AEO 추진 현황」,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8.27.
 활용하여 저자 작성

93) Main Partner Priority Lane의 통관상 혜택 : 세관검사 면제, 부두직통관, 사전신고, 관세납부 유예 등이 있음

94) 관세청 보도자료,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tOGfSEGivBQJ:https://www.ftatex.or.kr/tmcis-ptlweb/cmm/fms/FileDown.do%3B%3Bsessionid%3DYhYsV7KDj1gjh268CGnNyqYXjQbmwlLr92DSKfTLh44mVp3SLvys!1346088464%3FatchFileId%3DFILE_00000000002901%26fileSn%3D0+%&cd=1&hl=ko&ct=clnk&gl=kr, 검색일자: 2015. 08.24.

역업체(AEO) 및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마약류 밀반입 단속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함

- 성실무역업체(AEO)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협약

□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에 세계 AEO제도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관세청의 AEO 도입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인정약정(MRA) 협상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상호 연락관을 지정하고 액션플랜(Action Plan)⁹⁵⁾ 체결을 제안하는 등 양국 간 AEO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WCO 사무총장 쿠니오 미쿠리야(Kunio Mikuriya)는 2015년 3월 17일, 인도네시아 관세청장의 초청으로 수도 자카르타에 방문하여 AEO의 발족을 언급하였음⁹⁶⁾

6. 검역제도⁹⁷⁾

-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법안 No.16 (1992)은 수생종을 포함한 동식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규정함
 -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농림검역청(IAAQ)은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임
 - 또한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해 수산 제품을

95) AEO MRA 체결을 위해 향후 일정, 중요 업무내용 등을 기록해 상호 간에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

96) WCO 홈페이지 보도자료, “Indonesia launches AEO programme,” <http://www.wcoomd.org/en/media/newsroom/2015/march/indonesia-launches-aeo-programme.aspx>, 검색일자: 2015.08.25

9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인도네시아」, 2012.12, pp. 37-4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규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검역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을 통해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일례로 신선 과일 및 채소(HS 6류~12류)의 경우 이전에는 8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반입할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4개로 축소됨
 - 농림부 규정 No.42/Permantan/OT.140/6/2012 - “인도네시아 역내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진입을 위한 식물검역 행위 관련”에 의하면 신선 과일 및 채소는 다음 4개의 진입항구로만 수입될 수가 있음
 - 수라바야 판중 페락 해항(Surabaya, Tanjung Perak)
 - 메단 블라완 해항(Medan, Belawan)
 - 자카르타 스카르노 하타 공항(Jakarta, Soekarno-Hatta)
 - 마카사르 스카르노 하타 해항(Makassar, Soekarno-Hatta)

-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국 인정체결국(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CRA)에 대해 자카르타 항구(판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하고 있음⁹⁸⁾
 - 관련 법령은 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이며 2013년 기준 CRA 획득국가는 인니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임
 - 한국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검사 간소화를 위해 대(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수입국 인정체결국(CR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고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검역 절차를 위해서는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서류들의 제출 또는 작성이 요구어지며, 일반적으로 서류 직접제출이나 일부의 서류양식 및 요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함

98) 외교통상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2014.12, p. 54

- 운송수단/목재포장재/PSAT 확인서
- 식물검역 시행절차/안전감독/PSAT 승인서
- 화물하역 승인서
- 훈증증명서
- 소독증명서
- 식물 검역증명서
- 운송수단 도착 보고서
- 원산지 및 경유지 국가의 건강증명서

〈표 IV-3〉 인도네시아의 검역 절차

구분	내용
검사	○ 인가된 기관에서 요구 서류의 존재를 확인 ○ 검역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
격리	○ 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 환경조건 등을 요구하는 검역대상 제품은 격리될 수 있음
관찰	○ 격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 관찰이 진행됨
처리	○ 검역대상의 제품은 다음의 경우에 처리가 됨 1.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오염/감염 또는 오염/감염되었다고 의심이 갈 경우 2.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
억류	○ 인도네시아에의 수입 요구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대상 제품은 억류가 됨 ○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규정 충족을 위해 허용되는 기간을 명시함
거부	○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은 거부가 됨 1. 검사결과, 검역대상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혹은 질병에 오염 또는 감염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3. 억류 조치 이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 운송수단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표 IV-3〉의 계속

구분	내용
폐기	○ 다음의 경우, 제품은 폐기가 됨 1.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이 되고, 후속적인 검사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입국 거부 이후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유주가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외 또는 목적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3. 격리 후 관찰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의 오염/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4. 운송수단에서 하역후 추가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인도	○ 제품이 오염 또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제품은 인도가 됨 ○ 수입업자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인도증명서가 발급이 됨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인도네시아」, 2012.12, p. 38

7. 수출입 규제 현황

가. 수입규제 현황

-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 관련 조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반덤핑 제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⁹⁹⁾
-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세표준 및 통관업체들에 대한 세관 단속 및 등록 강화, 통관 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세관의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¹⁰⁰⁾

99) 외교통상부(2014.12), p. 362

100) 외교통상부(2014.12), p. 362

- 인도네시아는 2015년 8월 현재 한국제품에 대해서 5건의 반덤핑관세와 7건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 여부를 조사중임¹⁰¹⁾
- 반덤핑관세의 경우 질산암모늄, 냉연스테인레스강, 석도강판, 냉연코일 및 열연코일 등 총 5건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거나 조사 중에 있음
 - 세이프가드의 경우 텍스트로스(포도당), 광택지와 판지, 합금강, 열연봉강, 비합금 평판 강판 및 면사 등 총 7건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조사 및 부과된 상태임

〈표 IV-4〉 인도네시아 한국산 물품 수입규제 현황

번호	한국 HS CODE	품목명	조사개시일	규제내용
1	○ 7208.10/25/26/27/36/37/38/39/90	열연코일 (Hot Rolled Steel Products)	2009.04.08	반덤핑 (규제중)
2	○ 7209.16/17/18/19/26/27/28/90 ○ 7211.23/29	냉연코일(Cold Rolled Coil)	2011.06.24	
3	○ 7210.12	석도강판(Tin plate)	2012.06.25	
4	○ 7219.32/33/34/35/90 ○ 7220.20/90	냉연스테인레스강 (Cold-Rolled Stainless Steel)	2014.12.22	반덤핑 (조사중)
5	○ 3102.30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2015.06.01	
6	○ 5205 ○ 5206	면사(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2010.06.25	세이프 가드 (규제중)
7	○ 7210.61	비합금 평판 강판 (flat 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2012.12.19	
8	○ 7228.70	I-H형 합금강 (I and H sections of other alloy steel)	2014.02.12	
9	○ 7213.91/99 ○ 7227.90	열연봉강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ity wound coil)	2014.01.17	세이프 가드 (조사중)
10	○ 4810.13/14/19	광택지 및 판지 (Coated Paper and Paperboard)	2014.06.20	
11	○ 1702.30	텍스트로스(포도당) 일수염 (Dextrose Monohydrate)	2015.07.14	

출처: 비관세장벽협의회, 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3,
검색일자: 2015.08.25

101) 비관세장벽협의회, 「수입규제 관리카드: 인도네시아」,
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3, 검색일자: 2015.08.25

나. 수출규제 현황¹⁰²⁾

- 인도네시아 광업시장 규모는 2014년 1,001억 9천만달러로 전체 GDP의 11.28%, 외국인 직접투자의 16%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유명한데, 특히 석탄, 구리, 금, 주석, 니켈, 보크사이트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임
 - 생산량 기준 니켈 2위, 보크사이트 2위, 주석 2위, 구리 10위, 금 12위 국가임
 - 수출량 기준 석탄 1위, 주석 1위, 니켈 3위, 구리 6위 국가임
 - 특히 니켈은 세계 수출량의 20%, 보크사이트는 10%, 구리는 3%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 요도요노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가공 광물(Unprocessed Mineral Ore) 수출을 금지하는 신광물법을 제정해 2014년 1월 12일부터 약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적용함
 - 관련규정은 정부령 No.1/2014 및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No. 07. 2012) 등이 있음
 - 5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의 제련소 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임

- 2014년 1월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신광물법의 주요 내용은 2016년까지 미가공 광물 수출 시 20%의 수출세를 부담함과 동시에 수출세를 누진 적용하는 것으로, 2016년에는 수출세가 60%에 도달하게 하는 고수출세를 부과구조임
 - 제련시설을 건설했거나 건설허가 신청을 한 업체는 2016년까지 정광(concentrate ore) 상태로 가공해 20% 이상의 수출세를 납부하고 수출할 수 있음
 - 또한 2017년부터는 순광(pure ore)이 아닌 광물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함

102) 비관세장벽협의회, 「수입규제 관리카드: 인도네시아」, http://antidumping.kita.net/barrier/condition_card_view.screen?menuid=ntb020203, 코트라 보도자료, 「신 광물법 실행 후 인도네시아 광물산업 현황」,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30562&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5.08.28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수출세의 부과 기준은 6개월마다 세율을 올려서 2016년에는 세율이 60%에 도달하도록 규정하였음
 - 2014년부터 매 6개월 주기로 점차 증가하는 세율(Progressive Tax)을 적용하여 2016년 하반기에는 60%의 광물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개정안 돌입(인도네시아 정부는 매 분기별로 광물업체의 수출가능 여부에 대해 재평가함)

- 2012년 5월 17일부터 금속 21개, 비금속 10개, 기타 34개(석탄 미포함) 등 총 65개 광종에 대해 일괄세율 20%를 부과하고 있음
 - 제련(fully refined)을 반드시 거친 후 수출이 가능한 광종: 보오크사이트, 니켈, 금, 은, 주석 및 크롬 등임
 - 최저수준의 순도(minimum purity level) 혹은 반가공(semi- processed) 후 수출이 가능한 광종: 구리, 철광석, 납 및 아연 등임

8. 비관세 장벽

- 인도네시아는 수입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선적 전 검사 품목이 다양한데, 이러한 수입 전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비관세 장벽으로 나타남
 - 수입자는 무역면허증, 관세청등록번호, 납세자등록증, 수입자 등록증 및 기타 각종 선적서류들을 수입통관 시 매번 관세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서류처리비용이 비관세 장벽으로 나타남
 -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특정물품 수입허가서를 무역부에서 발급받고 선적 전 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승인 절차는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에 하나로 일컬어짐

- 또한 자국 기술표준인 국가품질표준(SNI)의 강제인증을 실시하는 데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 엄격한 라벨링 규정 및 수출입 규제 품목에 대한 통관 항구 제한은 인도네시아 무역업자들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함

가. 수입자 필수 구비 인허가

- 인도네시아 내에서 교역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면허(SIUP)를 먼저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수입허가서(API-P) 또는 무역업 수입허가서(API-U), 납세자등록(NPWP), 관세청 등록증(NIK)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함
- 수입자 등록번호(API)는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발행하는 수입허가서로, 생산설비 보유 유무와 업종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업 수입허가서인 API-P를, 무역업자는 무역업 허가서인 API-U를 발급받아야 하며, 외자법인(PMA)의 경우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 대행함
 - API-P(ANGKA PENGENAL IMPOTIR-PRODUSEN): 생산설비를 보유한 제조업체에 한하여 발급되는 수입허가서임
 - API-U(ANGKA PENGENAL IMPOTIR-UMUM): 생산설비가 없는 무역·유통·건설 업종에 발급되는 수입허가서임
- 납세자 등록 또는 세적 등록(NOMOR POKOK WAJIB PAJAK, NPWP)의 신청 및 발급 기관은 법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임
- 관세청 등록증(NOMOR IDENTITAS KEPABEANAN, NIK)은 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하여 제출한 후, 세관의 실사 이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자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세관 통관서비스를 제공받는 관세사(PPJK), 수출자, 운송업체, 기타 업체들도 모두 인도네시아 관세청으로부터 NIK를 구비하여야 함

〈표 IV-5〉 인도네시아 수입자 자격 확보 서류

수입자 자격 확보		발급기관
수입허가서	제조업 수입허가서(API-P)	무역부(외자법인의 경우 투자조정청(BKPM))
	무역업 수입허가서(API-U)	
납세자등록(NPWP)		주소지 관할 세무서
관세청등록(NIK)		관세청

출처: 백승래(2014.05), p. 5

1) 무역면허(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¹⁰³⁾

- 인도네시아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려는 회사는 무역면허(SIUP)를 발급받아야 함
- 무역면허(SIUP)에는 회사의 활동범위 및 대표자 등이 기재되며, 무역면허(SIUP) 발급부서인 산업무역부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적정시민인증서(letter of good conduct)를 요구할 수가 있음
- 무역면허(SIUP)는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의 간편 업체 서비스(One Stop Shop Service)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음

〈표 IV-6〉 인도네시아의 무역면허(SIUP)의 신청

구분	내용
요구 서류	1. 기업 Articles of Association(정관) (사본) 2. 업체 주소 및 위치에 대한 확인서 3. 업체 대표자 혹은 이사의 신분증(사본) 4. 공증된 문서
신청서 처리소요기간	5~9 근무일
신청 비용	비용은 협상이 가능 -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소 IDR40만~IDR50만, - 중견기업의 경우 최소 IDR60만~IDR70만, - 대형기업의 경우 최소 IDR75만~IDR100만에서 시작함

10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12), p. 5

2) 관세청 등록번호(Nomur Identities Perusahaan, NIK)¹⁰⁴⁾

- 관세청 등록번호(NIK)는 관세청의 정보기술 및 입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등록번호로서 모든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관세청 이용자는 인도네시아 관세청(DGCE)으로부터 NIK를 발급받아야 함
 - 관련 규정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No. 63/PMK/4/2011임

- 관세청 등록번호(NIK)신청을 하려는 수입업자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서비스 이용자의 내용, 임원 및 담당자의 신원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약 14일이 소요됨

- 관세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 관세청 등록번호(NIK)를 취소할 수 있음
 - 수입업자가 연속된 12개월의 기간 동안 관세청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업자의 제출된 자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수입업자가 관세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 수입업자의 사업면허가 만료된 경우
 - 단, NIK는 관세청이 취소결정을 내리기까지 유효함

-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세청 등록번호(NIK)를 회복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활동의 사실을 증명할 경우
 - 서비스 이용자가 관세청 등록자료에 대한 변경신고를 제출하여, 동 변경 내용이 관세청에 의해 이미 승인이 된 경우
 - 서비스 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형사위반 사안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이미 연장된 경우

10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2.12), p. 6

- 취소된 관세청 등록번호(NIK)의 회복 절차는 취소결정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복할 수 있음

3) 수입업자 등록번호(Angka Pengnal Impotir, API)¹⁰⁵⁾

-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업자 등록번호(API)를 구비하고 있는 자만이 수입을 할 수가 있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해서는 수입업자 등록번호(API)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관련 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No. 54M-DAG/PER/9/2009 “수입업자 등록번호 관련” 및 27/MDAG/PER/5/2012;jo. 59/MDAG/PER/9/2012 임
 - 장기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입업자 등록번호(API)의 취득이 필수적이나, 판촉제품, 연구개발 목적의 제품, 자가 섭취의 제품, 일시적인 기간 동안 특정 제품 또는 빈도가 적은 수입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수입업자 등록번호(API) 없이도 수입이 가능함
-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 산하 통합서비스국(PTSP)에 API를 신청하며 유효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이며 갱신 신청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짐
- 수입업자 등록번호(API)의 발급 종류는 무역업 수입업자 등록번호(API-U), 제조업 수입업자 등록번호-P(API-P)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수입업자는 하나의 수입업자 등록번호(API)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제조업 수입업자 등록번호(API-P)는 생산설비를 보유한 제조업체로서 원재료, 부재료 혹은 가공공정을 위해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이 됨
 - 무역업 수입업자 등록번호(API-U)는 생산설비가 없는 무역 혹은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이 됨

10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2.12), pp. 6-7

〈표 IV-7〉 인도네시아의 수입업자 등록번호(API)의 신청

구분	내용
요구 서류	1. 공증된 기업(설립취지서, Memorandum of Association)(사본) 2. 소재 지역 관할청에서 발급한 기업본사 소재지증명서(사본) 3. 투자 등록서(사본) 4. 투자(기본승인서, Approval in Principle)(사본) 5.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한 사업면허(사본) 6. 납세자 ID 번호(NPWP)(사본) 7. 기업 등록 증명서(TDP)(사본) 8. 이사회 임원의 주민 ID 카드 혹은 여권(사본) 9. 외국인력고용허가서(IMTA)(사본) 10. 이사회 전원의 붉은색 바탕의 3×4 사진 2매
신청 처리	5근무일
신청 비용	IDR 6,000
유효 기간	5년

- 수입업자 등록번호(API)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에게는 문서형식으로 API 번호가 통지가 되며, API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국제무역협력국에 매 3개월 단위로 수입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수입업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수입업자 등록번호(API)는 취소가 될 수 있음
 - 수입업자 등록번호(API)가 2회에 걸쳐 효력정지를 당했을 경우
 - 수입업자 등록번호(API)가 효력정지를 당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등록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보고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수입업자 등록번호(API) 신청서에 허위 정보 또는 자료를 기재하였을 경우
 - 수입 물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관련 규정 및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수입 및 수입관련 서류를 악용한 경우
 - 수입업자 등록번호(API)의 악용과 관련된 범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4)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Nomor Pengenal Importir Khusus, NPIK)¹⁰⁶⁾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일부 제품들의 대규모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수 분류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에게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NPIK) 증명서의 발급 의무를 부여함
 - 관련법령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NO. 141/MPP/KEP/3/2002와 NO. 07/M-DAG/PER/3/2008이 있음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NPIK)는 5년간 유효하며, 수입자는 매월 15일까지 관련 수입 내역을 무역부로 보고하여야 함
 - 특수 분류 품목 수입시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NPIK) 증명서가 없으면 해당 수입 품목은 항구에서 역류조치됨

- 대상 제품군은 현재 옥수수류, 쌀류, 대두류 등 크게 8가지로 정해져 있으며 HS 4단위 기준 약 110개의 품목이 해당됨
 - 옥수수류(Jagung)
 - 쌀류(Beras)
 - 대두류(Kedelai)
 - 당류(Gula)
 - 직물과 그 제품(Tekstil dan Produk Tekstil)
 - 신발류(Sepatu)
 - 전자제품과 부품(Elektronika dan Komponennya)
 - 어린이용 장난감(Mainan Anak-Anak)

- 수입업자들은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NPIK)증명서 취득을 위해 무역부(Ministry of Trade) 산하 국제무역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0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12), pp. 8-9

〈표 IV-8〉 인도네시아의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NPIK)의 신청

구분	내용
요구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 수입업자 등록번호(API-U)를 취득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 수입업자 등록번호(API-U) - 최근 5년간 사이에 2개년 연속 수입활동 수행에 관한 보고서, 또는, 최근 1년간의 수입활동수행에 관한 보고서 및 차기 1년간 해외 교역 파트너와의 구매계약서 ○ 제조업 수입업자 등록번호(API-P)를 취득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수입업자 등록번호(API-P) - 산업활동 허가서
신청 처리	10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5년

5) 특정 제품 수입등록서(IT(Importir Terdaftar)-PRODUK TERTENTU)허가¹⁰⁷⁾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정한 일부 특정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품 수입등록서 (IT-PRODUK TERTENTU)를 무역부에서 발급받아야 함
 - 관련법령은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령 No.83/M-DAG/PER/12/2012임

- 해당 제품군은 식음료 제품과 의류, 신발류 등 크게 7가지이며, HS 10단위 기준으로 약 827개의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 식음료 제품(Produk makanan dan minuman)
 - 의류(Pakaian jadi)
 - 신발류(Alas kaki)
 - 전자 제품(Elektronika)
 - 장난감(Mainan anak-anak)
 - 허브 관련 제품 및 전통 의약품(Obat tradisional dan herbal)
 - 화장품(Kosmetik)

107) 백승래(2014.05), pp. 6-7

- 지정 품목은 선적 전 검사(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GS) 보고서를 첨부하여 야만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나, 화장품은 선적 전 검사 예외 품목임
- 지정 품목의 수입통관은 탄정 프리옥 세관 등 8대 지정 항구와 5대 국제공항에서만 가능함(〈표 IV-9〉 참고)
 - 식음료품은 두마이(Dumai) 항, 자야푸라(Jayapura) 항 및 따라칸(Tarakan) 항에서만 수입 가능함

〈표 IV-9〉 인도네시아의 특정 제품 수입가능 통관 항구 및 공항

	8대 지정 항구		5대 국제공항
1	Belawan in Medan	1	Polonia in Medan
2	Tanjung Priok in Jakarta	2	Soekarno Hatta in Tangerang
3	Tanjung Emas in Semarang	3	Achmad Yani in Semarang
4	Tanjung Perak in Surabaya	4	Juanda in Surabaya
5	Soekarno Hatta in Makassar	5	Dasanuddin in Makassar
6	Dumai in Dumai		
7	Jayapura in Jayapura		
8	Tarakan in Tarakan		

출처: 백승래(2014.0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선적 전 검사는 무역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관이 선적항에서 해당 물품을 검사하고 물품의 명세와 HS 코드, 선적시기, 선적항, 목적항 등을 기록한 Surveyor Report(LS)를 발행하며, 이 LS는化妆품을 제외하고 해당 지정물품의 수입통관 시에 제출되어야 함

나. 국가품질표준(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 제도¹⁰⁸⁾

- 인도네시아 기술위원회(BSN¹⁰⁹⁾)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품질표준(SNI)은 자국민의 안전

108) 기술표준원(<http://www.tbt.kr>) - 국외 기술 규제,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www.globalwindow.org) - 해외시장정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인도네시아」 2012.12 활용하여 저자 작성

109) Badan Standardisasi Nasional(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과 건강, 환경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 강제적으로 요구되며,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인도네시아 인증 심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¹¹⁰⁾

[그림 IV-3]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SNI) 로고



출처: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기관-기술위원회(Badan Standardisasi Nasional)

- 국가품질표준(SNI)은 인증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품목 리스트의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함
 - 코트라에 따르면 2014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국가품질표준(SNI)품목은 총 7,638개이며 이 중 268개 품목이 취득 의무화 품목임¹¹¹⁾
- 국가품질표준(SNI) 강제인증 품목의 경우 수입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폐기하거나 재수출 또는 반송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 기술위원회(BSN)는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품질표준(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인증 관련 정보의 대외 공시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110) 관련규정: Minister of Trade Regulation No: 62/M-DAG/PER/12/2009 및 Government Regulation No. 102/2000 of National Standardization

111) 해외인증정보시스템(<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354#dt14>)에서 강제인증품목(2014.05 기준 174개 품목)확인 가능

관장합

- 인도네시아 인가위원회(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은 인도네시아 기술위원회(BSN)에 국가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대해 의견 제시 및 인증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인증기관(LSPPro)의 활동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임
- 마지막으로 인증기관(Product Certification Bodies, LSPPro)은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국가품질표준(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임
 - 인증기관(LSPPro)은 ISO/IEC Guide 65에 근거하여 인가위원회(KAN)에 의해 제품 인증기관으로 인가를 받음¹¹²⁾
 - 코트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험인증기관은 총 3군데로 LSP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LSPPro Pustan-Ministry of Industry 및 LSPPro TUV Rheinland Indonesia-PT TUV Rheinland Indonesia가 있음
 - 기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심사기관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어느 기관이 어떤 국가품질표준(SNI)를 관리하는지 알아야 함¹¹³⁾
-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제품에 대하여 국가품질표준(SNI)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표준관리기관의 검사관을 자사 부담으로 초청하여 실사단이 현장 실사를 하며, 산업부에서 최종 인증서를 발행함
- 인증의 절차는 ①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 제출 → ②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인증비용 납부 → ③ 현장 실사(통상 3일 정도로, 인증 실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현장 실사를 하게 되면 의뢰사에서 모든 비용 지불) → ④ 인도네시아 샘플 분석기관에 의뢰 → ⑤ 인증기관 내부 협의 후 인증서(SPPT-SNI) 발급 → ⑥ 인증서와 추가자료 제출 후 산업부에

112)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LSPPro 리스트 및 주소와 연락처 확인 가능
<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354#dt14>

113) <http://sisni.bsn.go.id/index.php?/lembsert/inspeksi/publik>

서 최종 인증서 발행의 순서로 이루어짐(〈표 IV-10〉참고)

〈표 IV-10〉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의 절차

구분	내용
1 단계: SNI 인증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하나, 인허가 관련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 신규 등록 또는 연장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를 사용함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이 SNI 신청 가능함 ○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입상을 지정하여 수입상이 SNI 취득절차를 진행
2 단계: 인증기관의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는지, 제대로 작성됐고 유효한지 인증기관에서 확인 ○ SNI 등록단계에 맞는 등록비 청구
3 단계: 기술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심사 후, 인증기관은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실사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함 ○ 공장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검사관이 파견됨(공장규모에 따라 다를수 있음)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인증기관이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4 단계: 심사관 최종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관은 의장 1인과 7명의 전문가로 구성 ○ 테스트 이전서류 검사결과에 의거, SNI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만약 수정사항을 요할 경우 신청자는 수정해야 함
5 단계: SNI 인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품목이 SNI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인증기관은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해줌 ○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서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됨

출처: 자카르타 무역관(2015.02), pp. 53-54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해당 기관으로부터 국가품질표준(SNI)인증서를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 전 반드시 표준인증서 번호, 검사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하여야 함

- 표준/규격 취득 의무 제품인 경우, 수입 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하거나 재수출하여야 함
- 제품인증의 기간은 4년이며 4년째 정기 공장심사 3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첫째와 동일하게 현장실사를 실시해야 함
 - 매년 최소 1회 정기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정기 공장심사 3개월 전에 변경 및 추가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품질표준(SNI)인증서 발급은 시험기관의 조사시간을 제외하고 약 4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신청시 약 50만 루피아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별도 납부하여야 함¹¹⁴⁾
 - 통상 인증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시험기관의 조사 시간을 제외하고 약 40일 정도이나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약 50만루피아(원화 41,900원, 2015년 9월 1일 환율기준)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함
-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2014년 국가품질표준(SNI)강제품목리스트에 식품, 음료, 전자, 섬유 및 섬유가공품 등 66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함
 - 이미 2014년 3월, 94개 품목을 강제인증 리스트에 추가하였음(농업부문 6개 품목, 식음료제품 12개 품목, 기초금속철-철강제품 12개 품목, 비료-석유화학 제품 12개 품목, 신발-가죽 3개 품목 및 봉제제품 1개 품목)
 - 국가품질표준(SNI)강제인증 품목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출 비관세장벽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으므로 현지 진출기업의 사전 대비가 필요함

114) 코트라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국가인증(SNI)강제품목 확대」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048&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5.08.28

다. 라벨링(Labelling)¹¹⁵⁾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음의 4개 제품군에 대하여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해당 물품 수입 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으로 총 46개 대분류
 - 건설 자재로 총 9개 대분류
 - 자동차(수리부속 포함) 관련 제품으로 총 24개 대분류
 - 기타 생활용품군으로 총 24개 대분류

- 라벨링 적용 대상 제품군이 묶음(bulk)판매 제품, 소비자 앞에서 직접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이거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 라벨링이 면제됨

- 라벨링 적용대상 품목의 HS 코드와 라벨링 요건은 인도네시아 기술위원회(BSN) 홈페이지¹¹⁶⁾에 게재된 라벨링 규정과 개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부록의 표에서 해당 HS 코드 확인 가능), 내용은 인니어로 되어 있음¹¹⁷⁾
 - 인도네시아 무역부령 No.62/M-DAG/PER/12/2009, 개정문은 동령 No.22/M-DAG/PER/5/2010에서 라벨 부착 의무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 라벨링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에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무역부에서는 샘플이 규정에 적합하다면 5일 이내 공문을 발송함¹¹⁸⁾
 - 무역부의 DirGen PDN(Direktorat Jenderal Perdagangan Dalam Negeri)으로 인도

1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35; 백승래(2014.05), p. 9;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라벨(Label) 법안 2010년 조기 시행」, http://idn.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3129&seqno=742981&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자: 2015.12.03

116) <http://tbt.bsn.go.id/index.php/notif/usulan/dtluspub/en/857>→'Notification File'

117) 무역부령 No. 62/M-DAG/PER/12/2009의 본문과 No. 22/M-DAG/PER/5/2010 본문의 영문 번역본은 부록 V를 참고할 것

11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2.12), p. 52

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함

-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에서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 줌
-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면허(SIUP)가 취소됨

라.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¹¹⁹⁾

- 다음의 제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승인 없이는 수출입을 금함
 - 마취제, 마약, 가연성 물품, 독극성 물질, 방사성 원소 등과 같은 위험 물품과 탄약·에어건(air gun)·용수철총·가스총 등 소형 화기와 모조품
 - 중국어로 된 또는 중국의 색채를 띠는 책·잡지·브로슈어·신문 등의 서적
 - DDT와 같은 살충제, 위험 폐기물,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물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프레온 가스 등 오존 파괴 물질
 - 덩어리 상태의 고무, 미가공 가죽, 등나무 등
-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중고 자본재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중고 기계는 상무부로부터 특별 수입허가를 받고 사전 검사를 받아 수입 가능함
 - 수입이 허가된 중고 자본재 HS는 법령¹²⁰⁾에서 확인할 수 있음

119) 백승래(2014.05), p. 9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36

120) Regulation of Ministry of Trade No.57/M-DAG/PER/12/2008
<http://peraturan.bcperak.net/sites/default/files/peraturan/2008/57m-dagper122008.pdf>, (후반부에 게재된 표에서 HS 확인 가능)

2) 핸드폰 수입 제한¹²¹⁾

- 2013년 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의 핸드폰 수입규정에 따라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등의 수입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등록허가(Tanda Pendaftar Produk Impor, TPP)를 받은 자만이 수입이 가능함
 - 관련 법령은 무역부 장관령 NO.82/M-DAG/PER/12/2012임

- 산업부 등록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은 다음에 제시된 것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서류를 요구함
 -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무역면허(SIUP), 사업자등록증(TDP), 납세번호(NPWP), 수입자허가(API), 관세청등록증(NIK), 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NPIK) 등 국내유통업자와의 3년 이상 계약증서, 해당 분야 수입경력 증빙자료, 유통업자의 최소 3년간 해당 분야 유통 증빙, 유통업자의 해당 분야 유통등록증 및 수입업자와의 유통계약서 등

- 핸드폰 등의 수입물품은 무역부에서 자격을 취득한 검사관(Surveyor)로부터 적재항구에서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검사관(Surveyor)보고서에 기재하여 수입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핸드폰 등의 수입통관항구를 제한하고 있는데, 5곳의 통관항구와 5곳의 국제공항에서 통관 가능함
 - (통관 항구) ① Belawan in Medan, ② Tanjung Priok in Jakarta, ③ Tanjung Emas in Semarang, ④ Tanjung Perak in Surabaya, ⑤ Soekarno-Hatta in Makassar
 - (공항) ① Polonia in Medan, ② Soekarno-Hatta in Tangerang, ③ Ahmad Yani in Semarang, ④ Juanda in Surabaya, ⑤ Hasanuddin in Makassar

121) 백승래(2014.05), p. 8 및 외교통상부(2014.12), p. 361

3) 목재 및 팜 수출 제한¹²²⁾

-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벌채와 도벌 등을 방지하고자 1985년부터 목재의 수출을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8월부터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SVLK) 획득을 의무화하였음¹²³⁾
 - 목재인증제(SVLK)를 획득한 사업자만이 목재의 내수 판매 및 수출이 허용되며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 또한 이 규제의 적용을 받음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조림사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목재인증제(SVLK) 비용과 추가적으로 목재 수출시 고율의 수출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됨
- 아울러 팜의 경우에도 2010년 팜 농장 개발에 따른 대규모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고 주요 수입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팜 생산업체도 2014년 말까지 팜오일 인증(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ISPO)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음
 - 팜오일 농장 조성에 진출하는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장벽의 종류 및 특징을 요약하면 <표 IV-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음

122) 외교통상부(2014.12), pp. 353-354 및 외교통상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2014.12, p. 49

123) 인도네시아에서는 1985년 원목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989년에는 저가 제재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고율(250~4,800\$/m³)의 수출세를 부과하였고, 1992년에는 원목의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고율(500~4,800\$/m³)의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수출이 어렵게 되었다. 2001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철도용 침목과 6mm 이상 제재목의 수출을 금지하였음 -출처: 외교통상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2014.12, p. 49

〈표 IV-11〉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의 종류 요약

구분	해당물품	수출입 요건
특별지정품목 수입허가 (NPIK)	○ HS 4단위 기준 총 110개 품목 ; 옥수수류(Jagung), 쌀류(Beras), 대두류(Kedelai), 당류(Gula), 직물과 그 제품(Tekstil dan Produk Tekstil), 신발류(Sepatu), 전자제품과 부품 (Elektronika dan Komponennya), 어린이용 장난감(Mainan Anak-Anak) 등 8개 품목군	○ 무역부 별도 수입 허가
특정제품수입 등록서 (IT-PRODUK TERTENTU)	○ HS 10단위 기준 총 827개 품목 식음료 제품(Produk makanan dan minuman), 의류(Pakaian jadi), 신발류(Alas kaki), 전자 제품 (Elektronika), 장난감(Mainan anak-anak), 허브 관련 제품 및 전통 의약품(Obat tradisional dan herbal), 화장품(Kosmetik)	○ 무역부에서 ITPT 등록 ○ 정부가 지정한 8대 항구와 5대 국제공항으로 통관항구 제한 ○ 선적 전 검사 필수
국가품질표준 (SNI)	○ 총 7,638개(취득의무화 품목 268개) 기술원재료(29%), 농업기술제품(19%), 기술응용 제품(16%), 건설제품(10%), 보건·안전 및 환경 제품(9%), 인프라 및 자연과학제품(6%)	○ 선적 전에 인도네시아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핸드폰 수입규정	○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 무역부에 등록 ○ 정부가 지정한 5대 항구와 5대 국제공항으로 통관항구 제한 ○ 선적전 검사 필수
Labelling제도	○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46개 대분류), ○ 건설 자재(총 9개 대분류), ○ 자동차 부품 등(총 24개 대분류), ○ 기타 제품(총 24개 대분류)	○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 (BahasaIndonesia)로 표기된 라벨(Label) 부착
수출입 금지	○ 마약 등 위해물품, 폭발성 물질과 폭죽, 소형화기, 멸종위기 동식물, 위험폐기물, 중고 자본재 ○ 덩어리 상태 고무, 미가공 가죽, 등나무 등(수출금지물품)	○ 관련 기관의 승인 없이는 수출입 금지
수출입 제한	○ 마취제, 마약, 가연성 물품, 독극성 물질, 방사성원소 등과 같은 위험 물품과 탄약, 에어건(airgun), 용수철총, 가스총 등 소형 화기와 모조품, DDT와 같은 살충제, 위험폐기물,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물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프레온 가스 등 오존 파괴 물질 등	○ 관련 부처의 승인 필요
목재 및 팜 수출규제	○ 모든 목재제품 수출시 ○ 팜오일 관련 제품 수출시	○ SVLK획득 의무화 ○ ISPO인증 의무화 ○ 고수출세율 부담

출처: 백승래(2014.05), p. 10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마. 할랄(Halal) 인증 현황¹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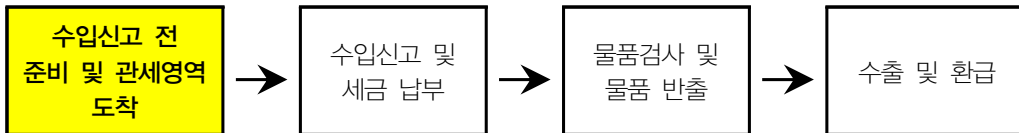
- 할랄이란 ‘허락된 것’을 뜻하는 아랍어이며, 할랄 인증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임
 - 이슬람 국가에 일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함
-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기관에서 인정하는 해외 41개 기관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할랄 인증을 발행한 기관이 소재하는 국가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인증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MF)에서 발행하는 할랄 인증이 있으며 2013년 7월 1일부로 발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인증을 발행한 해당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할랄 인증을 인정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 수입시 할랄라벨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할랄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식품도 시장에서 유통 가능함
 -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 2009년 18호 58-4에 따라 할랄 인증이 필요함
- 2014년 9월 25일,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개정이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인증기관이 정부기관으로 이관되므로 의무 인증 품목이 대폭 늘어날 예정임
 - (현행) MUI(Majelis Ulama Indonesia)라는 민간기관에서 할랄 인증 대행

12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2012.12 및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인증법 개정」,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itXROmY5QzMJ:www.kati.net/downloadEgov.do%3Bjsessionid%3Dp25EBba7TvGDio9XUjwCfRPD7MI1C5ysnxomjW8iRF1zp0uoqJXeWGQPUeVZpyw9.kati-was_servlet_engine7%3FfilePath%3D//upload%26fileName%3D%25EC%259D%25B8%25EB%258F%2584%25EB%2584%25A4%25EC%258B%259C%25EC%2595%2584_%25ED%2595%25A0%25EB%259E%2584%25EB%25B2%2595%25EA%25B0%259C%25EC%25A0%2595.pdf%26fileSaveName%3D%25EC%259D%25B8%25EB%258F%2584%25EB%2584%25A4%25EC%258B%259C%25EC%2595%2584_%25ED%2595%25A0%25EB%259E%2584%25EB%25B2%2595%25EA%25B0%259C%25EC%25A0%2595.pdf+%&cd=1&hl=ko&ct=clnk&gl=kr, 검색일자: 2014.11.17.

- (향후 5년 후) BPJPH(할랄제품 인증 실시기관/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라는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이관되어 할랄 인증 업무 주도 예정
- 이에 따라 현행 할랄 인증은 일부 품목에 대해 권고사항(자율적)에서 의무사항(강제적)으로 변경될 예정임
 - (현행) 축산부류를 제외한 식품 등은 권고사항으로 할랄 인증 없이 수입 가능
 - (향후 5년 후)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그리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 의무사항으로 변경
- 할랄제품 인증법안의 정식 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은 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
 - 국회 인준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관련 모든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Implementation Regulation) 20개가 새로 제정될 예정
- 2014년 9월 할랄제품 수출시 현재 축산부류를 제외한 식품 등은 권고사항이므로 할랄 인증없이 수출할 수 있으나, 향후 5년 이후 강제사항으로 변경될 전망이므로 동 법령에 따른 준비가 필요함
 - 할랄 인증 관련 개정법이 의회 통과 이후 인도네시아 내의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함

V. 통관절차별 고려사항

1. 수입신고 전 준비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특정 제품군 지정 수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 대상 품목은 정부 지정 8대 항구와 5대 국제공항을 통하여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선적 전 검사가 필수임¹²⁵⁾
 - 지정 8대 항구는 ① Belawan in Medan, ② Tanjung Priok in Jakarta, ③ Tanjung Emas in Semarang, ④ Tanjung Perak in Surabaya, ⑤ Soekarno Hatta in Makassar, ⑥ Dumai in Dumai, ⑦ Jayapura in Jayapura, ⑧ Tarakan in Tarakan 임
 - 5대 국제공항은 ① Polonia in Medan, ② Soekarno Hatta in Tangerang, ③ Achmad Yani in Semarang, ④ Juanda in Surabaya, ⑤ Dasanuddin in Makassar 임
 - 해당 제품군은 ① 식음료 제품, ② 의류, ③ 신발류, ④ 전자 제품, ⑤ 장난감, ⑥ 허브 관련 제품 및 전통 의약품, ⑦ 화장품류임
 -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선적 전 검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수입통관 진행 가능

- 일부 품목에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국가품질표준(SNI)인증은, 인도네시아 인증 심사기관으로부터 선적 전에 받아야 하므로 수출국(우리나라)에서부터 준비해야 함¹²⁶⁾

125) 무역부령(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Trade) No.57/M-DAG/PER/12/2010

126)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49

- 인도네시아 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isni.bsn.go.id/index.php/regtek/regulasi/sni_wajib)에서 인증 심사기관별 관리 국가품질표준(SNI)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 인증을 신청하면 실사단이 현장 실사를 한 후 산업부에서 최종 인증서를 발행하며, 실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모두 지불하여야 함
- 4개 제품군(① 가정용 전자제품·통신제품군, ② 건축자재 제품군, ③ 자동차(수리부속 포함) 관련 제품군, ④ 기타 생활용품군)의 수입 시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¹²⁷⁾
- 수입자는 사전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무역부에 라벨 견본을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음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내 통관 항구의 과부하 해소 및 과실파리 유입 방지를 위해 신선 과실 및 채소류(HS 6류~12류)의 통관항구를 제한함
- 자카르타 인근 항구(탄중프리옥)를 폐쇄하고 수라바야 항구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강화하여 통관 소요시간을 연장시킴 (무작위 샘플 검사 → 모든 컨테이너 검사)
 - 다만, 국가인정협정(CRA)을 통해 과실파리 무발생을 인정받은 국가에 대해 탄중프리옥 항구 통관 허용 및 수입검역을 간소화하는 예외 조치가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국가인정협정(CRA)을 진행중이나 현재 담보 상태임
- 인도네시아 세관은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수입자 관할 세관원을 3~6개월 단위로 변경함¹²⁸⁾

127) 무역부령(Regulation of Ministry of Trade) No. 22/M-DAG/PER/5/2010, 기존 법령인 No. 62/M-DAG/PER/12/2009의 수정본

128)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및 제도」,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9594, 검색일자: 2015.09.01

- 제조업체는 반복해서 수출입이 일어나므로 통관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자만할 수 있으니 세관원 변경에 따른 통관상 미연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세관에서 원하는 기본 규정에 충실하도록 함

나. 애로사례

- 특정 제품군 지정 수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대상 품목인 경우, 반드시 지정된 항구 및 국제공항을 통하여 수입통관해야 하므로 업체가 지정 통관지와 멀리 있을 경우 물류비가 상승하며 업무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물품은 선적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국가품질표준(SNI)인증은 인도네시아의 독자적인 표준 규격제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통상 현지 인증기관의 심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해야 하는 등 절차적, 시간·금전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거의 모든 인증기관이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에 심사단의 초청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며, 인증 절차 역시 엄격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
-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들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로부터 상품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국가품질표준(SNI)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제품 인증을 위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점차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부문 품목이 국가품질표준(SNI)인증 강제품목으로 추가됨으로 인해, 대인니 수출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인도네시아의 수입 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로 인해 한국 농산물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시간 및 비용적 애로사항이 발생¹²⁹⁾

129) 비관세 장벽협의회, 「수입 신선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http://antidumping.kita.net/barrier/condition_card_view.screen?menuid=ntb020203, 검색일자:

- 수라바야에서 자카르타 항구로의 운송거리는 667km(자가용으로 14시간 소요)이므로 운송에 2~3일 소요
 - 수라바야 항 도착가격에 자카르타 항구로의 이동비용이 20~30% 추가로 소요
 - 냉장운송에 따른 운송비가 약 2~3배 가중되었음
 - 자카르타로 운송 도중 한국산 농산물 품질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수라바야 항에서 자카르타로의 운송기간 증대로 농산물의 신선도 저하 가능
- 인도네시아 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소급인정기간을 협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한국산 물품이 받을 수 있는 특혜관세혜택을 배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¹³⁰⁾
- 한-아세안 FTA OCP 제7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발급되거나 기타 타당한 예외의 경우 “소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한다고 명시함
 - 그러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선적일 포함 2일 후부터(NO WORKING DAY) 소급(RETROACTIVELY)문구가 있어야 한다며 동 기준 이외의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함
 - 가령, 선적일은 5월 23일(토)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이 5월 26일(화)인 경우 소급(RETROACTIVELY)이라는 문구 없이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세관은 자국 기준에 따라 소급문구가 없다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였음
 -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기 사례에 대해 3근무일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소급(RETROA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C/O 발급이 어렵다고 안내함
 - 이에 수출자는 선적일 포함 3일 근무일 이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만 소급문구가 기재됨을 명시한 아세안 FTA 협정문을 상공회의소로부터 영문으로 전달 받아 제출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은 이를 불인정하였음
- 인도네시아 세관은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자국 경제사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수입자는 예상치 못한 통관 위험을

2015.08.24

130) 관세청,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 관세청, 2015.1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떠안을 가능성이 있음¹³¹⁾

- 인천에서 대만으로 단순 환적 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항으로 수입 진행 중, 인도네시아 세관이 대만에서 환적된 것을 문제삼아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함¹³²⁾
- 이에 수입자는 대만 세관에서 발행한 단순 환적만을 하였다는 서류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 세관에 전달하였으나, 동 확인서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정하였음
-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자에게 과징금으로 인도네시아 금액 총 RP121,386,000을 부과하였으며 수입자 쪽에서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및 수출 통관에 대한 애로와 불안감 때문에 납부한 후 이의 신청을 진행하였음

□ 또한 인도네시아 세관이 한-아세안 FTA 검증 및 심사단계에서 수입자의 통관 서류제출 의무를 확대해석하여 관세 추징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¹³³⁾

- 인도네시아 세관은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 한-아세안 FTA협정에 의한 원산지 검증을 하면서 이미 수입통관 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제3부분(수출자보관용 포함)의 제출을 추가 요구함
- 또한 서류 제출시한을 촉박하게 설정하여 그 시한 내 미제출 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FTA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123건에 대한 관세 약 25억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하였음
- 이에 인도네시아 수입자 및 우리나라 수출자, 관세청 및 관세관이 인도네시아 세관과 직접 면담하였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온라인 확인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미추징으로 종결되었음

131) 관세청,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 관세청, 2015.1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132) OCP 제9조 직접운송원칙의 규정을 너무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사료됨

133) 관세청,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 관세청, 2015.1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업무상 유의점

- 수입자가 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선적서류 이외에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물품 선적 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매번 수입 관련서류의 복사본과 함께 선적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제출 누락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인도네시아는 품목에 따라 필수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통관업체가 간혹 Borongan(세관원과 결탁한 밀수)을 수입업체에 부추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¹³⁴⁾
 - 이에 따라 고가의 물품, 수입금지 물품은 적법 통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고 함
- 특정 수입품목(IT-PRODUK TERTENTU) 허가에 대해 선적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정된 세관으로 입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¹³⁵⁾
 - 인도네시아어로 된 원문(<http://peraturan.bcperak.net/sites/default/files/peraturan/2010/57m-dagper122010.pdf>)에 게재된 표에서 해당 제품의 HS 코드 확인 가능(단, 현재 영문 지원 불가)
 - 탄정 폐락 세관 홈페이지에서는 용이하게 각종 관세 법령을 열람할 수 있는데, 웹페이지 접속(<http://peraturan.bcperak.net>) → 화면 우측 상단 검색창에 관련 법령 번호와 연도인 '57 2010' 입력 후 엔터 → 명칭이 일치하는 것 선택 → 'Download' 클릭하여 PDF파일 다운로드 → 후반부 표상의 HS 코드 확인
 - 또한 영문으로 본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JICA(일본국제협력기구)에서 운영하는 Trade Related Rule Book(<http://traderulebook.ekon.go.id/>)에서 가능함
 - 본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Keyword Search' → keyword 공란에 무역

134)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및 제도」,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9594, 검색일자: 2015.09.01

135)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51

부령인 '57/M-DAG/PER/12/2010' 입력 후 아래 'Select Language'에서 'English'선택(그러나 영문본의 'Attachment'는 인니어만 지원함)

- 'Select Language'에서 영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니어 원본도 확인이 가능하여 유용함

□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단독으로 국가품질표준(SNI)인증 준비시 제반 비용 및 언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 지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의 파트너를 통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음¹³⁶⁾

- 품질검사 및 샘플링을 위한 심사원의 방문 시, 제반 비용(항공, 숙박 및 심사관련 모든 비용) 일체를 신청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해외 중소 수출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큼
- 인증기관의 대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인허가 관련 서류가 인도네시아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 또한 상호간에 인도네시아어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인도네시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함
- 서류 접수 및 진행 또한 반드시 현지 수입상 및 현지 파트너 혹은 현지 법인 및 지사를 이용해야 함
- 인도네시아 기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 심사기관과 국가품질표준(SNI) 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¹³⁷⁾

□ 국가품질표준(SNI)인증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인증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 간 대체 인증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국가품질표준(SNI) 인증을 받아야 함¹³⁸⁾

- 일부 규격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 규격과 호환되는 부분이 있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 전기전자제품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 또한 국가품질표준(SNI) 인증을 위한 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음

136) 자카르타 무역관(2015.02), p. 55

137) 인도네시아 기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isni.bsn.go.id/index.php?/lembsert/inspeksi/publik>, 검색일자: 2015.11.18

138) 자카르타 무역관(2015.02), p. 55

- 인도네시아어로 된 라벨링을 하여야 하는 품목은 4개 품목군으로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여 미리 준비해야 함¹³⁹⁾
 - 원문(<http://tbt.bsn.go.id/index.php/notif/usulan/dtluspub/en/857>) 파일의 후반부에 첨부된 표에서 HS 코드로 라벨링 대상 제품 확인 가능
 - 법령의 검색 방법은 상기 SNI 법령 검색 방법과 동일하나, 라벨링 관련 규정은 무역부령 No. 62/M-DAG/PER/12/2009와 No. 22/M-DAG/PER/5/2010이므로 검색시 '62 2009' 및 '22 2010' 등으로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 한-아세안 FTA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필요로 함¹⁴⁰⁾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에서 신청 가능함
 -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HS 코드와 원산지 기준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발급신청 전 인도네시아 HS코드와 원산지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함
 - 인도네시아 HS 코드 확인(<http://www.tarif.depkeu.go.id/Tarif/Eng/?menu=hsform>에서 HS 코드 앞 자리를 입력 후 'find' 클릭 → 해당 코드 클릭 → 새 페이지 아랫부분에서 영문명 확인)
 -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에서 원산지기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 신청해야 함

-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서류 원본이 아니면 특혜관세가 비적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가 개정되면서 한국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인정해주고 있음¹⁴¹⁾
 - 원산지증명서(AK Form)는 반드시 붙임 양식으로 A4용지에 컬러 인쇄
 - 이면기재사항(overleaf notes)을 원산지증명서 원본 이면에 반드시 프린트

139) 부록 V 내용 참고

140)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52

141)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인도네시아 세관 제출시 유의사항」,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9.04

– 인도네시아 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이면 기재사항이 뒷면에 프린트되지 않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원산지제도 내용뿐만 아니라, 상호대응세율과 같은 협정 제반규정도 함께 살펴보아 특혜 관세 적용이 왜 배제되었으며, 동 상황에 따른 금전적 위험을 어떻게 방지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함¹⁴²⁾

○ 예컨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HS 3907.20))에 대한 한-아세안 FTA 세율은 0%이나, 인도네시아 현지 세관에서 부당하게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5%로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수출자는 한국 관세청에 국가 차원으로 확인을 요청하였음

○ 현지 한국 관세관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2(민감품목군) 제7항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불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었음

□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물품 수출 전, 해당 품목이 덤핑방지 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덤핑방지 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예상치 못했던 높은 세금을 내야 하거나, 현지 수입상이 수입을 거절할 경우 물품이 한국으로 반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음

○ 2015년 8월부터 한국 제품에 대해서 5건의 반덤핑 관세와 7건의 세이프가드가 규제 및 조사중임

– 반덤핑 관세의 경우 질산암모늄, 냉연스테인레스강, 석도강관, 냉연코일 및 열연코일 등 총 5건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거나 조사 중에 있음

– 세이프가드의 경우 텍스트로스(포도당), 광택지와 판지, 합금강, 열연봉강, 비합금 평판 강관 및 면사 등 총 7건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조사 및 부과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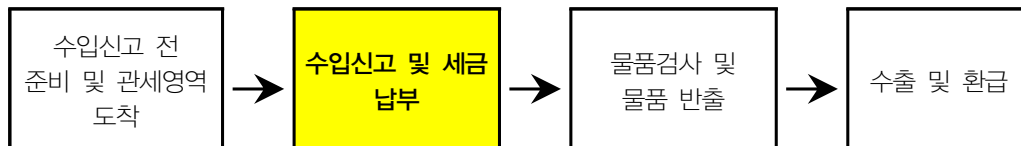
□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 홈페이지(<http://antidumping.kita.net>)에서는 세계 각국

142) 관세청,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 관세청, 2015.11

의 통상 현안을 비롯하여 국가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정보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¹⁴³⁾

- 한국무역협회 기본 홈페이지(www.kita.net)에서는 하단 ‘사업별 사이트’ 메뉴 중 ‘통상수입규제’로도 접속 가능함
- 현재 인도네시아가 반덤핑 관세 등의 규제를 가하는 품목 확인을 위해서는 ‘KITA 통상·수입규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수입규제 현황’ → ‘주요국 제소 및 규제 내역’ →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음
 - 또한 ‘수입규제 현황’ → ‘국가별 현황’에서는 필요 정보 지정 후 검색 기능을 통해 영문 품명과 정확한 HS 코드 등 보다 세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에 WTO에서 반기별로 공개하는 국가별 규제 동향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통상·수입규제’ 사이트 상단 메뉴 중 ‘각국 규제동향’에서 확인 가능함

2.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와 검사 등이 모두 완료된 후 세금을 납부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세금을 수입신고 전에 먼저 납부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임
 - 세금(관세·부가가치세·사치품 판매세 등)의 납부는 외국환 은행 또는 세관을 통해 가능하며, EDI 시스템이 잘 구축된 곳(Tanjung Priok 항과 Soekarno-Hatta 공항 등)에서는 전자적으로도 납부 가능함

14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53

- 수입신고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관세사) 명의로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수입신고서(PIB)는 세관에 따라 서류, 전자 매체 이용, 컴퓨터 접속으로 제출(EDI) 가능
 - 판중 프리옥(Tanjung Priok) I, II, III 세관과 스카르노 하타(Soekarno-Hatta) I - II 세관 등 4개의 세관은 전자신고방식(EDI)으로 신고하며, 기타 세관은 서류 또는 디스켓 등의 매체를 통해 제출

나. 애로사례

- 수입 후 심사(Post-Auditing) 제도는 신속 통관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통관 과정을 완료하여 물품을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도할 수 없음
- 인도네시아는 수입자·은행·세관을 연결하는 전자신고방식(EDI) 시스템을 1997년에 도입한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이 개선된 편이나, 아직 전자신고방식(EDI)은 몇몇 세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간혹 인도네시아 정부부처 내부적인 의사소통 부재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관련 최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함
 - 현지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FTA협정을 관리하는 산업부(FTA 이행위원회)는 합의된 FTA 규정을 규율하고,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관세징수를 하는 이원적 구조임
 - 내부 의사소통 부재로 세관에서 수입통관 시 간혹 원산지증명서 전자서명 인정 여부,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등에 시시비비를 걸고 FTA 특혜세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

다. 업무상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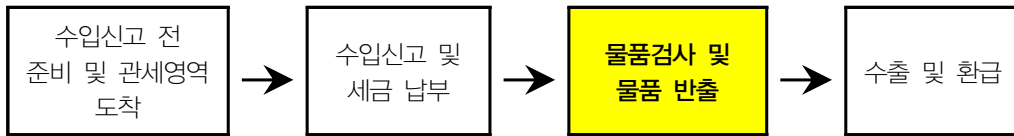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규제방법이 다양하므로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수입 자유화 품목인지, 금지 품목인지, 사전검사 품목인지, 쿼터(Quarter) 적용 품목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¹⁴⁴⁾
 - 또한 기본적으로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세율이 몇 %인지, 기타 부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 수입신고 시 관세차액 확보 목적으로 물품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HS에 따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자 다른 물품으로 거짓신고하는 등의 경우 세관에서 관세액 차이의 1,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수입신고 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세율을 낮게 적용할 목적으로 다른 HS 코드로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세관과 마찰을 빚으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가격과 세관에서 보유한 자체 데이터 베이스(data base)에 따른 산정가격 차이의 차액 관세와 이미 납부된 관세액의 정도 차이에 따라 관세의 1,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HS 코드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상위 6자리가 공통임에 유의하여 인도네시아의 정확한 HS 코드를 점검해야 함
 - <http://www.tarif.depkeu.go.id/Tarif/Eng/?> 페이지에서는 품명, HS 코드, chapter (류) 별로 HS 코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6. HS 코드’로 검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HS코드 앞자리부터 입력하여 검색하면 됨

144)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및 제도」,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9594, 검색일자: 2015.09.01

3. 물품검사 및 물품 반출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물품검사 결정이 난 경우, 검사관과 함께 화물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물검사는 실제로 물품을 검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각종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이 서류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밀수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고액의 비용 지출이 필요함
- 통관 중 성분 검사대상에 해당되면 세관 내의 실험실에서 성분 조사가 진행되며 공식적으로는 한 품목을 조사하는 데 약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함¹⁴⁵⁾
 - 성분검사는 미처 예기치 못한 수입통관의 위험요소로서 수입자는 우편검사를 요청하는 등 세관과 갈등을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성분 검사 후 세관의 기준과 다르게 수입신고가 된 경우 세관에서 추징 및 벌금부과와 함께 감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
 - 세관에서 추징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물 재조사, 감사, 검사내용 세관장보고 및 이에 대한 세관장 서명이 나와야 통관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145)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및 제도」,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9594, 검색일자:
 2015.09.01

- B/L상의 수입자와 세관 신고된 적하목록상 실화주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불가함
- 식품류 등 민감한 품목 수입 시 매번 고위험(red Channel)으로 분류되어 검사로 지정되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국가이며 이에 따라 금요일에는 통관 수속이 잘 안된다고 함¹⁴⁶⁾

나. 애로사례

- 종종 일관성이 저하된 행정 처리 및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수출입업자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 채널링 시스템(Channeling System)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적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가 고위험(red Channel)으로 분류되어 검사 통관을 진행하고 있음
- 바탐(Batam)과 카리문(Karimun) 자유무역지대로 산업 원자재를 위한 수입허가 승인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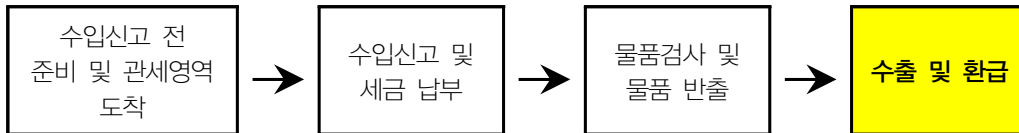
다. 업무상 유의점

-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품목, 또한 제출 서류상의 기재사항(수입자와 수량, 중량, 품명 및 B/L 번호 및 컨테이너 번호 등)이 상호 정확히 일치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철저를 기해야 함
 - 화물 검사 시, 서류 및 신고한 내용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밀수 행위로 간주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서류와 물품 일치에 만전을 기할 것

146) 매주 금요일 정오에는 무슬림 신도들이 성전에 모여 단체 예배를 드림

- 선적서류와 기타 제반 서류, 화물 시스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으며, 정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시스템과 서류상에 상호 불일치 사항이 없도록 수출 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음

4. 수출 및 환급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수출신고는 수출자 또는 대리인(관세사)이 수출신고서(PEB)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통관지 세관에 따라 서류에 의한 수작업방식,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신고방식, 전자신고방식(EDI)(5개 주요 세관) 3가지로 할 수 있음¹⁴⁷⁾
 -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당국은 컴퓨터상에서 자동으로 서류심사를 하며, 수출검사 필요 시 검사를 통보함
- 수출을 전제로 수입되는 가공·조립용 원자재, 수출 물품에 설치될 물품, 수출용 물품 등의 수입 시, 관세 및 제세를 유예 또는 환급하는 수출목적수입편의(KITE) 제도가 존재함¹⁴⁸⁾
 - 관세유예제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입 시 관세지급보증서(보험 및 은행 지급 보증서 등) 제출이 필요함
 - 환급제도: 수출물품 수출이 이행된 이후,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 제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147)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58

148) 상동

-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환급신청서(공통서류: Form E)와 수입 증빙서류, 수출품과 원재료의 관계 증빙서류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¹⁴⁹⁾
 - 환급 신청의 기간은 수출 후 1년 이내임

- 신광물법에 따라 미가공 광물 수출 시 부과되는 수출세는 광종별로 최소 품위와 수출세를 연계하여 품위가 낮을수록 수출세를 높게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수출세를 인상하여 2016년에는 60%의 수출세가 부과될 전망이다¹⁵⁰⁾
 - 2014년 1월부터 금속 21개, 비금속 10개, 기타 34개(※석탄 미포함) 등 총 65개 광종에 대해 일괄 수출세율 20% 부과하고 있음
 - 제련(fully refined)을 반드시 거친 후 수출이 가능한 광종 : 보오크사이트, 니켈, 금, 은, 주석 및 크롬 등임
 - 최저 수준의 순도(minimum purity level) 혹은 반가공(semi- processed) 후 수출이 가능한 광종 : 구리, 철광석, 납 및 아연 등임

나. 애로사례

- 인도네시아의 관세 환급은 절차나 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환급받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¹⁵¹⁾
 - 담당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 환급 승인 시 신청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 확인 후 국영은행을 통해 지급되는 독특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내수 조달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카사바, 카카오, 팜 등과 같은 원자재에 수출세

149) 상동

150) 코트라 보도자료, 「신광물법 실행 후 인도네시아 광물산업 현황」,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30562&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5.08.25

15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58

를 부과하는데, 수출세 부과가 오히려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¹⁵²⁾

- 광물 수출의 과도한 급증 제한 및 국내 제련소 증축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 향상 목적으로 2014년 1월부터 원광석 수출시 2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 및 광산업 종사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음¹⁵³⁾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제련소를 설치할 수 없는 위치이므로 국내보호 목적으로 도입된 신광물법의 일부 모순점이라고 평가됨
 -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에 광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현재 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다. 업무상 유의점¹⁵⁴⁾

- 물품의 수출 전 3년 이내에 수입한 완제품 및 원자재로서, 당해 원자재가 공하여진 최종 제품이 수출되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않은 원자재만 환급 대상이 됨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웨이스트나 스크랩의 비용, 운할유·연료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수입 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함
- 관세의 환급이 정해진 기간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업 및 자금 계획에 있어 이를 감안하는 것이 좋음
- 환급 신청은 수출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본 신청 기간 내에 환급을

152)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59

153) 코트라 보도자료., 「신광물법 실행 후 인도네시아 광물산업 현황」,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30562&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5.09.04.

1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12), p. 59

신청하도록 해야 함

- 인도네시아의 수출 1위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용 석탄은 신광물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원광 수출에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의 미가공 원광석 수입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¹⁵⁵⁾

5. 요약

- 통관절차별 고려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 V-1>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V-1> 인도네시아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단 계	유의 사항
1. 수입 신고 전 준비 및 관세영역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제품군 지정 수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품목은 지정된 항구로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품목과 통관 가능 항구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함 ○ 국가품질표준(SNI) 인증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며, 인도네시아 심사관 초청 등으로 비용이 발생함 ○ 라벨 부착 대상 품목에는 인도네시아어로 된 라벨을 부착할 것 ○ 한-아세안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C/O)원본을 발급받아야 함 ○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등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세관 및 전자신고방식(EDI)을 통해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전자신고방식(EDI)이 가능한 세관과 불가한 세관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인도네시아는 수입 통관 후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물품 반출 이후에도 통관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안도할 수 없음

155) 코트라 보도자료, 「신광물법 실행 후 인도네시아 광물산업 현황」,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30562&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5.08.25

〈표 V-1〉의 계속

단 계	유의 사항
3. 물품 검사 및 물품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검사는 채널링 시스템(Channeling System)에 의해 4가지 등급에 따라 물품 검사수준이 상이하며, 불량(Red)의 경우 현물검사 및 서류심사가 필수임 ○ 통관 중 성분 검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음 ○ 금요일에는 무슬림 신도들의 성전예배로 인해 통관수속이 어려움 ○ 서류 절차가 복잡하며 이로 인해 통관 처리기간이 다소 길다는 지적이 있음
4. 수출 및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은 절차나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으나 환급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않고 수출용 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만 환급됨 ○ 환급 신청은 수출 후 1년 이내에 해야 함

참고문헌

-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관세청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2012.01
- 관세청,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 2015.11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2.12
-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 주요국 진출 국내기업 애로현황 보고서」, 2011.02
- 백승래,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연구」,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2014.05
- 백승래,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시 부과되는 제반세금의 종류와 추정·환급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2014.03
- 백승래, 「2013 인도네시아 수출입통관설명」,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2013
- 외교통상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2014.12
- 외교통상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2014.12
- 자카르타 무역관, 「인도네시아」, 코트라, 2015.02
-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개관』, 2015.03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2012.12
- 통계청,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인증법 개정」, 2014.11.17.
-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과 투자여건」, 2015.0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도네시아의 사업진출 유용정보」, 2004.10, p. 5
- 한국수출입은행, 『2015년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위험평가』, 2015.0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인도네시아」, 2011.12
-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5
- The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5*」, 2014

〈웹사이트〉

관세청 보도자료,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tOGfSEgIvBQJ:https://www.ftatex.or.kr/tmcis-ptlweb/cmm/fms/FileDown.do%3Bjsessionid%3DYhYsV7KDj1gjh268CGnNyqYXjQbmwlR92DSKfTLh44mVp3SLvys!1346088464%3FatchFileId%3DFILE_00000000002901%26fileSn%3D0+&cd=1&hl=ko&ct=clnk&gl=kr, 검색일자: 2015. 08.24.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https://cert.korcham.net/origin/index.htm?method=list&docSnum=24&menu=1>, 검색일자: 2015.08.24.

통계청, 「2014.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Brief/appl/EconInfoDetail.asp?SEQNO=96161>. 검색일자: 2015.10.29.

비관세장벽협의회, 「수입규제 관리카드: 인도네시아」, 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3, 검색일자: 2015.08.25.

통계청, 「수입 신선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http://antidumping.kita.net/barrier/condition_card_view.screen?menuid=ntb020203, 검색일자: 2015.08.24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수출입, 관세·비관세, 금융제도」, <http://idn.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3129&seqno=583570>, 검색일자: 2015.11.20.

통계청, 「KITE 관련 규정 개정」,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8.21.

통계청, 「인도네시아 세관 수출통관제도」,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8.24.

통계청, 「인도네시아 2014. 3. 1일부터 수출신고시 CIF 가격 보고 의무화」,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8.24.

통계청, 「보세지역(KB) IT Inventory 제도」,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8.24.

- 통계청, 「인니 관세청 AEO 시범사업 및 Priority Channel 신청 안내」,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8.27
- 통계청, 「한-인니 AEO 협력 및 인니 관세청 AEO 추진 현황」,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8.27.
- 통계청, 「인도네시아, 라벨(Label) 법안 2010년 조기 시행」, http://idn.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3129&seqno=742981&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자: 2015.12.03.
- 통계청,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인도네시아 세관 제출시 유의사항」, <http://idn.mofa.go.kr/korean/as/idn/policy/fta/indonesiafta/index.jsp>, 검색일자: 2015.09.04
- 코트라, 「2014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주춤」http://www.globalwindow.org/gw/overinvest/GWOIFS020M.html?BBS_ID=17&MENU_CD=M10302&UPPER_MENU_CD=M10301&MENU_STEP=2&ARTICLE_ID=5025960, 검색일자: 2015.08.11.
- 통계청 해외시장뉴스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및 제도」,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9594, 검색일자: 2015.09.01
- 통계청 보도자료, 「신 광물법 시행 후 인도네시아 광물산업 현황」,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30562&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5.08.28.
- 통계청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국가인증(SNI)강제품목 확대」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048&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5.08.28.
- 통계청 보도자료, 「한-인니 CEPA 이룬 시일 내 합의 어렵다」,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

&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7275, 검색일자: 2015.08.17.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해외시장정보 보도자료, 「인도네시아-일본 EPA」, http://www.exportcenter.go.kr/economy/gloInfo/gloInfo_read.jsp?SEQ_ID=16313, 검색일자: 2015.08.14

산업통상자원부, 「한-인니 CEPA 제7차 협상결과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78769&bbs_cd_n=16, 검색일자: 2015.08.17.

WCO 보도자료, 「Indonesia launches AEO programme」, <http://www.wcoomd.org/en/media/newsroom/2015/march/indonesia-launches-aeo-programme.aspx>, 검색일자: 2015.08.25

WTO, 국가별 관세율 기준, http://stat.wto.org/TariffProfiles/ID_e.htm, 검색일자: 2015.08.19.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idn.mofa.go.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 <http://global.korcham.net>

대한민국 관세청 www.customs.go.kr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keri/index.jsp>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jakarta/>

코트라 수라바야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surabaya>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국제무역원 <http://iit.kita.net/>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 무역협회 K-STAR <http://stat.kita.net/>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www.ois.go.kr

해외인증정보시스템 <http://www.certinfo.or.kr>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kati.do>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http://www.tbt.kr>
비관세장벽 포털 사이트(<http://antidumping.kita.net>)
트레이드네비 <http://www.tradenavi.or.kr/>
씨엘HS 인터넷 HS 편람 <http://cl24.co.kr/>

ASEAN 공식 웹사이트, www.aseansec.org
Global Trade Atlas http://www.gtis.com/korean/GTIS_GTA.html/ GTA
Trade Related Rule Book, <http://protraf.net/rulebook>
WTO 세계무역기구 <https://www.wto.org/>
WCO 세계관세기구 <http://www.wcoomd.org/en.aspx>
WTO 국가별 관세율 기준 http://stat.wto.org/TariffProfiles/ID_e.htm
인도네시아 관세청 <http://www.beacukai.go.id/>
인도네시아 재무부 <http://www.tarif.depkeu.go.id>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국(Central Statistical Agency), www.bps.go.id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 www.bkpm.go.id
인도네시아 기술위원회(BSN), <http://www.bsn.go.id/>
탄정 페락 세관, <http://peraturan.bcperak.net>
미국 무역 대표부, www.ustr.gov
세계은행, www.doingbusiness.org

〈부록 I〉 비즈니스 팁

- 인도네시아인들은 비교적 격식을 따지는 편이며, 사전 면담 약속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사전 약속 없이 기업인들을 찾아가거나 면담을 신청하는 것은 절대 금물임
 -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은 비교적 준비성이 철저한 편이며,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은 첫 번째 비즈니스 상담 시 회사 소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신뢰를 높이기 위해 회사 일반개요 이외에 주요 납품실적이나 거래·수주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효과적임

- 인도네시아는 중간간부보다는 높은 사람과 접촉하여 거래를 성사할 확률이 높으므로, 최고 경영자와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개인 비서를 두고 있어 모든 행정절차나 서류 진행 상태는 비서진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비서진과 친밀하게 지내면 서류 진행 및 보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인도네시아 기업 경영진은 대부분 외국 유학 경험이 있고 또한 오래전부터 서양 비즈니스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파트너의 사업계획안 제출을 중요시하고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안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함

- 인도네시아 기업들 중 상당수는 가족 중심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족 중심제의 회사는 실력 있는 부하 경영진보다 자기 직계가족의 의견을 믿고 따르며 더 중

요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take first and give’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 유념하여 간단한 선물이라도 준비하도록 함
 -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모든 비즈니스 절차가 비서진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비서들에 대한 선물 제공 등을 통해 사전 유대관계를 강화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며,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임을 감안하여 주류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인도네시아인은 언어 구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외국인과 상담을 할 때면 주로 영어·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는데, 사업을 위하여 두 언어 중 하나를 확실히 구사하는 것이 좋음

- 면담 전에 종족 및 종교 파악이 필요함.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종교의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같은 인도네시아인일지라도 자바인이냐 아니면 타민족이냐에 따라 약간의 편견 의식을 가질 수 있음
 - 이슬람교도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금요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금요일 오후의 약속은 피하도록 함
 - 종교는 음식과도 관련성이 있는데,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며, 반면에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성시하여 소고기를 먹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사전에 상대방의 종교를 파악하여 이러한 부분을 배려하도록 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적으로 5대 종교를 승인, 기본헌법(Pancasila)에도 수록되어 있을 만큼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민족 및 종교 파악 후 상대에게 맞는 이야기를 건네는 것도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음

- 겸손하면서도 적극성을 보여야 함. 현지 기업인은 대부분 지위가 높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비즈니스 관례상의 매너와 예의를 충분히 지키고, 모든 면에서 적극성을 보여야 함

- 전화상으로부터는 주기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음
- 비즈니스 시 인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화교가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교 상인들과의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좋음
- 통상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여타 이슬람국가와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방적인 특성이 있음. 그러나 여성의 미모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머리에 손을 대는 행동을 영혼의 안식처를 침범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이라도 머리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왼손은 용변 후 세척 시 또는 쓰레기 등을 만질 때 사용하므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줄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악수를 할 때도 역시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함
 - 부녀자와는 악수로 인사하고 악수 후에는 자기 손을 가슴에 대었다가 내리는 풍습이 있음(회교식 인사)
- 대화 중 허리에 손을 얹는 행동은 화가 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반갑다는 의미로 상대방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큰 소리로 상대방을 부르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함
- 노출이 심한 옷은 착용을 삼가도록 하며, 특히 업무상 관공서 등의 국가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되도록 정장 차림을 하도록 함
- 인도네시아에는 레스토랑과 택시 운전자 등에 팁을 주는 관례가 있으며 적당한 팁을 주는 것이 적절함
 - 레스토랑의 경우 10%의 봉사료가 청구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팁은 5~10% 정도가 적당함

- 열대성 기후와 풍부한 식생활 자원 등으로 여유를 즐기려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다소 느린 경향이 있으므로, 거래 시에도 이러한 성향을 고려하도록 함
 -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하도록 함

- 체면을 특히 중시하기 때문에 만일 근로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시에도 큰소리로 야단치기 보다는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인사법이 상이함에 유의하며, 기본적인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여 우호적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함
 -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인사는 각각 다음과 같음
 - 아침: 슬라맛 빠기(Selamat pagi)/점심: 슬라맛 씨양(Selamat siang)
 - 오후: 슬라맛 소레(Selamat sore)/저녁: 슬라맛 말람(Selamat malam)
 - 안녕하세요: 아빠 까바르(Apa kabar)
 - 어서오십시오: 슬라맛 다땅(Selamat datang)
 - 안녕히계세요: 슬라맛 멩갈(Selamat tinggal)
 - 안녕히가십시오: 슬라맛 잘란(Selamat jalan)
 - 또 만나요: 삼빠이 줌빠 라기(Sampai jumpa lagi)
 - 감사합니다: 프리마 까시(Terma kasih)
 - 천만에요: 끄발리(Kembali)
 - 죄송합니다: 마얏(Maaf)
 - 실례합니다: 빠르미씨(Permisi)

〈부록 II〉 주요 유관기관 정보

■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웹페이지	http://idn.mofat.go.kr
주소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12950
이메일	koremb_in@mofa.go.kr
대사관	
전화번호	(62-21)2967-2555(대표)
팩스번호	(62-21)2967-2556-7
영사관	
전화번호	(62-21)2967-2580(직통)
팩스번호	(62-21)2967-2581
비상연락처(휴일 및 근무 외 시간 연락처)	
전화번호	(62)811-852-446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KBC)	
웹페이지	www.kotra.or.kr - 해외무역관 - 자카르타 무역관
주소	Wisma GKBI, 21st Fl.Suite 2102, Jl.Jendral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Indonesia
전화번호	(62-21) 574-1522
팩스번호	(62-21) 572-2187,2204
이메일	jakarta@kotra.or.kr
■ 인도네시아 한인회	
웹페이지	www.innekorean.or.id
주소	Korean Association Bldg. Jl.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Indonesia
전화번호	(62-21) 521-515, (62-21) 527-2054,
팩스번호	(62-21) 521-486
이메일	innehaninhoe@gmail.com

■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웹페이지	http://www.tarif.depkeu.go.id (영문지원)
주소	Badan Kebijakan Fiskal, Departemen Keuangan RI, Alamat: Jalan Dr. Wahidin No.1 Gedung R.M. Notohamiprodjo Lantai 6, Departemen Keuangan Jakarta Pusat 10710
전화번호	(62-21) 384 2542
팩스번호	(62-21) 384 0151

■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웹페이지	www.kemenperin.go.id (영문지원)
주소	Jalan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12950
전화번호	(62-21)5252194, 5271380, 5271387-88
팩스번호	(62-21)5261086
이메일	pusdatin@depperin.go.id

■ 인도네시아 무역부(Ministry of Trade, KEMENTERIAN PERDAGANGAN)	
웹페이지	www.kemendag.go.id (영문지원)
주소	Jl. M. I. Ridwan Rais Road, No. 5, Central Jakarta 10110
전화번호	(62-21) 3841961/62
이메일	contact.us@kemendag.go.id

■ 인도네시아 기술위원회(Badan Standardisasi Nasional,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웹페이지	www.bsn.go.id (영문지원)
주소	Jl.M.H. Thamrin No.8 Kebon Sirih, Jakarta Pusat 10340
전화번호	(62-21) 3927422
팩스번호	(62-21) 3927527
이메일	bsn@bsn.go.id

〈부록 Ⅲ〉 인도네시아 관세법¹⁵⁶⁾

2013년 9월

주 인도네시아대사

위대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고려사항

- a. 인도네시아공화국은 Pancasila와 1945년 공화국 헌법에 근거한 법치국가이며 안전, 질서, 번영, 공정한 인도네시아 국민생활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함
- b. 1995년 10호 「관세법」의 일부 규정은 관세행정에 더 이상 적합하지 못하여 개정이 필요함
- c.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국가경제의 개선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고 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관세영역에서 특정 상품의 물류를 위해 또한 밀수예방 및 처벌을 최적화하기 위한 차원의 관세관련 법적 확실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공공서비스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시행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 함
- d. 상기 a, b, c항을 고려하여 1995년 10호 「관세법」 개정에 대한 NO.7/2006년 인니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검토사항

1. 1945년 「헌법」 제5조 (1)항, 제20조, 23조
2. WTO 설립 협정 승인에 관한 1994년 7호 법령(관보 1994년 제57, 추가관보 제3564)
3. 「관세법」 관련 1995년 법령 10호(관보 1995년 제75, 1995년 추가관보 3612)

국회와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인니공화국 대통령은 아래 사항을 결정한다.

156) 1995년 10호 인도네시아 「관세법」 개정에 대한 NO.7/2006년 「관세법」으로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과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의 번역본임. 본 번역본은 참조용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언제든지 원 법령에 개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도네시아로 된 현행 법령의 재확인 및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함

제정사항

1995년 10호 「관세법」 개정에 대한 NO.7/2006년 인니 법령

제 I 조

1995년 10호 「관세법」(95년 인니 관보 75호, 95년 인니 추가관보 3612호)의 일부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장. 총칙

1. 제1조는 아래와 같이 1항, 17항은 변경 및 15a항, 19항, 20항, 21항 등 4개항이 추가된다.

제1조

본 법령에서 의미하는

1. 통관(kepabeanan)이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모든 물품의 물류 감독 및 수출입 관세 징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2. 관세영역(Daerah Pabean)이란 본 법령이 적용되는 인도네시아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 구역 및 대륙붕을 의미한다.
3. 세관지역(Kawasan Pabean)이란 항만, 공항, 또는 기타 물류 이동을 위해 지정된 관세청 관할의 특정 구역을 의미한다.
4. 세관(Kantor Pabean)이란 본 법령의 관세의무 조건을 충족하는 관세청 관할의 세관을 의미한다.
5. 세관감시소(Pos Pengawasan Pabean)란 수출입 감독 시행을 위해 관세청 공무원이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6. 관세의무(Kewajiban Pabean)란 본 법령의 규정 준수를 위해 시행하는 세관 관련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세관 신고(Pemberitahuan Pabean)란 본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형태/조건에 따른 관세 이행을 위한 특정인의 신고를 말한다.
8. 장관이란 재무부 장관을 의미한다.
9. 청장이란 관세청장을 의미한다.
10. 관세청¹⁵⁷⁾이란 관세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재무부의 일정 부문을 말한다.
11. 세관공무원(Pejabat Bea dan Cukai)이란 본 법령에 의거, 세관 관련 특정 직책의 업무를 수

157) 정확한 의미는 관세소비세총국이지만, 한국 교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세청으로 번역함

행하는 관세청 공무원을 의미한다.

12. 人(Orang)이란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3. 수입이란 관세영역 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수출이란 관세영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수입관세(Bea Masuk)란 본 법령에 의거, 국가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15a. 수출관세(Bea Keluar)란 본 법령에 의거, 국가가 수출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6. 하선장소(Tempat Penimbunan Sementara)란 선적 또는 반출 작업을 위해 임시로 야적을 해 놓는 세관지역 내 건물 또는 야적장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말한다.
17. 보세구역(Tempat Penimbunan Berikat)이란 특정 목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조치된 물품의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장소 또는 구역을 의미한다.
18. 세관장치장(Tempat Penimbunan Pabean)이란 본 법령에 의거 소유주가 없는 물품, 국가 관할 물품 및 국가 소유 물품의 보관을 위해 정부가 관세청 산하 세관에 설치한 건물 또는 야적장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말한다.
19. 특정 물품이란 정부기관이 정하는 물건 운송에 있어 감독을 받는 세관지역 내 물품을 말한다.
20. 세관심사(Audit kepabeanan)란 세관관련 본 법령 규정 이행점검을 위한 재무제표, 회계장부 및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록 및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사업 관련 서류, 세관관련 서류 및/또는 재고 등에 대한 검사 행위를 말한다.
21. 세율(Tarif)이란 수출입 물품분류 및 관세 부과를 말한다.

2. 제2조 (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2조

- (1)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수입세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간주되며 수입관세 의무가 부과된다.
- (2)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되기 위해 운송수단에 선적된 물품은 이미 수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수출품으로 처리된다.
- (3) 상기 (2)항의 물품 중 관세영역 내 특정 장소에서 하역 목적인 것으로 증명된 물품은 수출품이 아니다.

3. 제2조와 제3조 사이에 제2A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2A조

- (1)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2) 아래의 목적으로 수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 a. 국내 수요 충족 보장
 - b. 천연자원 보호
 - c. 국제시장에서 특정 물품의 급격한 가격인상 대비 또는
 - d. 특정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
 - (3) 상기 (1)항에 언급한 수출품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규정은 별도 정부 법령으로 정한다.
4. 제3조 (3)항 및 (4)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조

- (1)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진행한다.
 - (2) 상기 (1)항의 검사는 서류심사 및 현품검사를 포함한다.
 - (3) 상기 (2)항의 현품검사는 샘플링으로 진행된다.
 - (4) 상기 (1)항의 세관검사 절차는 장관령으로 정한다.
5. 제4조는 지속 유지되며 본 법령 각 조별 설명사항에 일부 조정사항 반영
6. 제4조와 제5조 사이에 제4A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4조

- (1)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진행한다.
- (2) 특정한 경우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상기 (1), (2)항의 통관검사절차는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4A조

- (1) 관세영역 내 특정 물품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한다.
- (2) 관련기관은 무역분야담당 장관을 통해 특정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장관에게 통보한다.
- (3) 상기 (1)항에 언급한 특정 물품 운반 규정은 별도의 정부 법령으로 정한다.

7. 제5조 (2)항 및 (3)항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조

- (1) 관세는 세관 또는 세관에 준하는 기타 장소에서 세관신고를 통해 시행된다.

- (2) 세관신고는 세관 내 또는 세관에 준하는 기타 장소의 세관공무원에게 제출된다.
- (3) 관세 수행 및 감독을 위해 세관지역 및 세관감시소를 설정한다.
- (4) 세관지역 및 세관감시소 설정은 장관에 의해 시행된다.

8. 제5조와 제6조 사이에 제5A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5A조

- (1) 상기 제5조 (2)항의 세관신고는 서면양식 또는 전자 데이터를 통해 제출된다.
- (2) 전자 데이터 접수 세관은 장관이 정한다.
- (3) 상기 (1)항에 언급한 전자데이터는 본 법령에 의거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된다.
- (4) 상기 (1)항의 절차는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9. 제6조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 및 1개항이 추가된다.

제6조

- (1)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본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 (2) 관련 기관에 의해 특정 물품 운송 감독에 관한 규정이 정립되지 못한 경우 관련 규정은 본 법령에 기초한다.

10. 제6조와 제7조 사이에 제6A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6A조

- (1) 세관신고를 하는 자는 세관 Access를 위한 ID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관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 (2) 특정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자는 상기 (1)항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 (3) 상기 (1), (2)항의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11. 제2장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2장. 수출입 물품 운송

12. 제2장 1부 제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부. 물품 운송

13. 제2장 1부 1절 제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절. 운송수단 도착

14. 제7조 삭제

15. 제7조 및 제2장 1부 2절 사이에 아래의 제7A조 삽입

제7A조

- (1) 운송수단이 아래의 지역으로부터 도착하는 운송자는
 - a. 관세영역 외부 또는
 - b. 관세영역 내 수출입 물품 운송 및/또는 관세영역으로 부터의 물품을 국내영역(비관세영역)을 통해 관세영역 내 타 장소로 운반하는 육로 운송을 제외한 물품 운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물품의 도착 계획에 대해 해당물품 운송수단 도착 전에 목적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관세영역에 진입하는 운송수단은 상기 (1)항에 언급한 물품을 적하목록상에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3)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또는 상기 (1)항에서 언급한 관세영역 내부로부터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물품운송자는 하역작업 전 의무적으로 운송물품에 대해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하역작업을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기 (3)항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a.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수단 도착 후 최장 24시간 이내
 - b. 항공운송의 경우 운송수단 도착 후 최장 8시간 이내
 - c. 육로운송의 경우 운송수단 도착시
- (5) 상기 (3)항 및 (4)항의 의무는 최장 24시간 동안 정박 및 하역작업을 하지 않는 운송수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 운송수단이 비상 상황에 처한 경우 운송인은 우선 하역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우선적으로 비상 상황을 인근 세관에 신고 및
 - b. 하역작업 후 최장 72시간 내에 세관신고서를 제출
- (7) 상기 (1)항에 언급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운송인은 최소 5,000,000(오백만) 루피아에서 최고 50,000,000(오천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8) 상기 (3)항, (4)항 또는 (6)항에 언급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운송인은 최소 10,000,000(일천만) 루피아에서 최고 100,000,000(일억)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9) 상기 (1)항, (3)항 및 (4)항의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16. 제2장 제1부 제2절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2절. 물품운송

17. 제8조는 삭제

18. 제2장 제1부 제8조와 제3절 사이에 제8A, 제8B 및 제8C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8A조

- (1) 수입물품을 하선장소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他 하선장소 또는 보세구역으로 운송할경우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상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수입물품 수량이 세관신고서 상의 물품 수량보다 적으며 관련 차이 내역이 본인들의 실수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족 수입물품의 수입관세를 의무 납부하여야 하며, 최소25,000,000(이천오백만) 루피아 최고 250,000,000(이억오천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3) 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상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수입물품 수량이 세관신고서 상의 물품 수량보다 많으며 관련 차이 내역이 본인들의 실수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최소 25,000,000(이천오백만) 루피아 최고 250,000,000(이억오천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4) 상기 (1)항에 언급한 물품운송 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8B조

- (1) 전기, 액체류 또는 가스의 수출입 운송은 전송 또는 배관을 통해 가능하며 수량 측정은 관세 영역에서 최종 측정된 결과에 의한다.
- (2) 수출입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또는 전자데이터 전송은 전자 전송시스템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 (3) 상기 (1)항에 언급한 물품운송 및 (2)항의 운송 관련 자격요건 및 절차는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8C조

- (1) 특정 물품의 운송에 대해서는 운송자가 물품 출발 및 도착시 지정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상기 (1)항에 언급한 특정 물품은 운송에 있어 합법적 서류로 보호되어야 한다.
- (3) 운송인이 상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수입물품 수량이 세관신고서상의 물품수량보다 적거나 많으며 관련 차이 내역이 본인들의 실수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최소 5,000,000(오백만) 루피아 최고 50,000,000(오천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4) 상기 (2)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인에 대해서는 최소 25,000,000(이천오백만) 루피아 최고 250,000,000(이억오천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5)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19. 제2장 제1부 제3절의 제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절. 운송수단 출발

20. 제9조는 삭제

21. 제9조와 제2장 제2부 사이에 제9A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9A조

- (1) 운송수단을 아래 목적지로 출발시키는 운송인은
 - a. 관세영역 외부
 - b. 관세영역 내부로 수출입 물품을 운송 및/또는 관세영역으로 부터의 물품을 국내영역(비관세영역)을 통해 관세영역 내 타 장소로 운반하는 의무적으로 해당 물품의 출발 계획에 대해 해당물품 운송수단 출발 전에 목적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운송수단의 목적지가 관세영역 외부인 운송인은 상기 (1)항의 물품을 적하목록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 (3) 상기 (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인에 대해서는 최소 10,000,000(일천만) 루피아 최고 100,000,000(일억)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4) 상기 (1)항 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22. 제2장 제2부의 제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2부. 수입

23. 제10조 삭제

24. 제2장 제2부에 제1절, 제2절 및 제3절 등 3개 절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1절. 하역, 장치 및 반출

제10A조

- (1) 상기 7A (1)항에 언급한 운송수단의 수입물품은 의무적으로 세관지역 또는 세관의 허가를 받은 후 타 장소에서 하역을 하여야 한다.
- (2) 상기 7A (1)항에 언급한 운송수단의 수입물품은 해상의 타 운송수단으로 하역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은 의무적으로 지정경로를 통해 세관으로 이송된다.
- (3) 운송인이 상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하역 수입물품 수량이 세관신고서상의 물품수량보다 적으며 관련 차이 내역이 본인들의 실수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족 하역 물품의 수입관세를 의무 납부하여야 하며 최소 25,000,000(이천오백만) 루피아 최고 250,000,000(이억오천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4) 운송인이 상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하역 수입물품 수량이 세관신고서상의 물품수량보다 많으며 관련 차이 내역이 본인들의 실수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최소 25,000,000(이천오백만) 루피아 최고 500,000,000(오억)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5) 수입물품은 세관지역으로 부터 반출을 대기하는 동안 하선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 (6) 특정한 경우, 수입물품은 하선장소와 동일 취급되는 다른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 (7) 수입물품은 세관지역 또는 상기 (6)항에서 언급한 다른 장소로부터 관세의무 이행 후 아래의 목적으로 반출될 수 있다.
 - a. 사용
 - b. 임시 수입
 - c. 보세구역 장치
 - d. 기타 세관지역 내 하선장소로 운반
 - e. 지속 운송 또는 추가 운송 또는
 - f. 재수출
- (8) 모든 규정을 충족하였으나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기 전에 세관지역 또는 상기 (6)항에 언급한 타 장소로부터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자에게는 25,000,000(이천오백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9) 상기 (1)항, (5)항, (6)항 및 (7)항 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사용목적 수입

제10B조

(1) 사용을 위한 수입이란

- a.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세관지역으로 물품 반입 또는
- b. 인도네시아 내 거주인의 소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세관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물품의 반출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 a. 세관신고 및 수입세 납부
- b. 세관신고 및 제42조의 담보서 제출 또는
- c. 통관 보완서류 제출 및 제42조의 담보서 제출

(3) 승객, 승무원 및 세관지역을 통과하는 자가 반입하는 수입물품은 도착시점에 의무적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우편 또는 배송서비스를 통해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세관공무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해 반출될 수 있다.

(5) 상기 (1), (2), (3) 및 (4)조의 규정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6) 상기 (2)항 b, c 에서 의미하는 수입세를 본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서는 체납 수입관세 납부의무 및 수입세의 10%가 행정벌금으로 부과된다.

제10C조

(1) 수입업자는 기재출된 세관신고서가 명백히 실수로 인해 잘못 작성된 경우 세관신고서 데이터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신청은 아래의 경우 거부된다.

- a. 물품이 이미 세관지역에서 반출되었고
- b. 상기 실수를 세관공무원이 적발하였거나 또는
- c. 세관공무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상기 (1)항에서 언급한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임시 수입

제10D조

- (1) 수입시 최장 3년 내에 명확히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임시수입 물품으로 분류되어 반출될 수 있다.
- (2) 임시수입물품은 재수출 시점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 (3) 임시수입물품은 수입관세 면제 또는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4) 수입관세 경감혜택을 받은 임시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의무 수입관세의 최대 5%까지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 (5) 허가된 기한을 경과하여 임시 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상 수입세 100%가 행정벌금으로 부과된다.
- (6) 허가된 기한 내에 임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정상 수입세 100%가 행정벌금으로 부과된다.
- (7) 상기 (1)항, (2)항의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25. 제2장 제3부의 제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부. 수출

26. 제11조는 삭제

27. 제11조와 제3장 사이에 제11A조가 아래와 같이 삽입된다.

제11A조

- (1) 수출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세관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2) 승객, 승무원, 통행인의 개인물품 및 특정 과세가격 이하 또는 특정 수량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상기 (1)항의 세관신고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 (3) 수출물품의 선적은 세관지역 또는 특수한 경우 세관장이 허가하는 기타 장소에서 실시된다.
- (4) 선적 대기 중인 수출신고 물품은 하선장소 또는 세관장이 허가하는 기타 장소에 장치될 수 있다.
- (5) 상기 (1)항과 같이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취소된 경우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6) 상기 (5)항과 같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5,000,000(오백만) 루피아의 행정 벌금이 부과된다.

(6) 상기 (1), (2), (3) 및 (4)항의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28. 제13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장. 세율 및 과세가격

제1부. 세율

제1절. 수입 세율

제12조

- (1)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과세가격의 최대 40%가 요율에 의거 수입세로 부과된다.
- (2) 아래의 경우 상기 (1)항의 예외이다.
 - a. 특정 농산품 수입
 - b. daftar eksklusif Skedul XXI-Indonesia pada Persetujuan Umum Mengenai tarif dan Perdagangan에 포함된 수입물품
 - c. 제13조 (1)항의 수입물품
- (3) 상기 (1) 및 (2)항 관련 세부규정은 장관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 (1) 아래의 경우 제12조 (1)항 세율과 상이한 세율에 근거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 a.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 근거한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물품
 - b. 승객, 승무원, 통행인의 운반 물품 또는 우편운송 또는 배송서비스를 통한 수입물품
- (2) 상기 (1)항의 수입세 부과절차 및 세율은 장관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2절. 품목분류

29. 제14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4조

- (1) 수입세 세율 결정을 위해 물품은 품목분류시스템에 의거 분류된다.
- (2) 상기 (1)항의 품목분류 관련 규정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부. 과세가격

30. 제15조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7)항은 변경, (3)항과 (4)항 사이에 (3a)항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5조

- (1) 수입관세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다.
- (2) 상기 (1)항과 같이 수입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의 수입관세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다.
- (3) 상기 (1), (2)항과 같이 수입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의 수입관세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다.
- (3a) 상기 (1), (2) 및 (3)항과 같이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격을 거래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격은 (4)항 및 (5)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단,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거 (5)항의 과세가격 결정 순서를 (4)항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상기 (1), (2), (3)항과 같이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의 수입관세는 공제법에 기초한다.
- (5)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격을 상기 (1), (2), (3)항과 같이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없고 상기 (4)항의 공제법에 의해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산정방법에 기초한다.
- (6)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격을 상기 (1), (2), (3)항의 거래가격, (4)항의 공제법 또는 (5)항의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격은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 상기 (1), (2), (3), (4) 또는 (5)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당하고 일관된 기준 및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7) 수입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격 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3부. 세율과 과세가격의 결정

31. 제16조 (1)항, (2)항, (3)항, (4)항 및 (5)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6조

- (1)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 제출 전 또는 세관신고 후 30일 이내에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 (2)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 제출 전 또는 세관신고 후 30일 이내에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3) 상기 (1)항 또는 (2)의 결정으로 수입관세 납부금액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단, 수입업자가 제 93조 (1)항의 의거 이익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 수입업자는 부족한 수입관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4) 수입업자의 과세가격 통보 오류로 인해 관세신고를 잘못하여 수입세 납부 부족이 발생한 경우 수입세 부족 차액분의 최소 100%, 최고 1,000%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5) 상기 (1)항 또는 (2)의 결정으로 수입관세 납부금액이 과다한 경우 차액은 환불된다.
- (6) 상기 (1)항, (2)항에 언급한 세율 및 과세가격 결정 관련 규정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32. 제17조는 (2)항b 변경 및 (4)항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7조

- (1) 관세청장은 세관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세율 및 과세가격을 재결정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결정액이 제16조의 결정액과 상이한 경우 청장은 서면으로 수입업자에게 아래 사항을 통보한다.
 - a. 수입관세 부족분 완납 또는
 - b. 과납분에 대한 환불 통보
- (3) 상기 (2)항의 수입관세 납부 부족분 또는 환불 금액은 재결정 금액에 근거한다.
- (4) 상기 (2)항에 언급한 재결정금액이 통보된 과세금액의 오류로 인해 수입관세 납부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수입세 부족 차액분의 최소 100%, 최고 1,000% 또는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33. 제17조와 제18조 사이에 17A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17A조

신청에 의거 관세청장은 세관신고서 제출 이전 수입관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4. 제4장의 제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제4장.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관세, 보복관세

제1부. 덤핑방지관세

제18조

아래의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 a. 정상적 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으며
- b. 상기 물품의 수입으로
 1.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내수산업의 손해를 초래하며,
 2. 내수산업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으며,
 3. 동종품 생산 내수산업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9조

- (1) 덤핑방지관세는 제18조의 수입물품에 대해 최대 정상가격과 수출가의 차액만큼 부과된다.
- (2) 상기 (1)항의 덤핑방지관세는 제12조 (1)항의 관세징수금액 외 추가 징수되는 금액이다.

35. 제20조 삭제

제2부. 상계관세

제21조

상계관세는 아래의 경우 부과된다.

- a. 해당 물품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보조가 있으며,
- b. 상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1.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내수산업의 손해를 초래하며,
 2. 내수산업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으며,
 3. 동종품 생산 내수산업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22조

- (1) 상기 제21조에 언급한 수입물품에 대한 상계관세는 최고 보조금과 아래 금액과의 차액만큼 부과할 수 있다.
 - a. 보조금 혜택을 위해 지출된 신청금, 보증금 또는 기타 징수금 또는
 - b. 상기 수출품 수출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되는 징수금

(2) 상기 (1)항의 상계관세는 제12조 (1)항의 관세징수금액 외 추가 징수되는 금액이다.

36. 제23조 삭제

37. 제4장에 제3부, 제4부, 제5부 등 3개 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3부. 긴급(수입제한)관세

제23A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관세는 수입물품이 동종 국산품 또는 경쟁 국산품 대비 절대적, 상대적 파동으로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칠 경우 부과할 수 있다.

- a. 동종 국산품 또는 직접 경쟁 국산품 생산 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 b. 동종 국산품 또는 직접 경쟁 국산품 생산 산업에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3B조

- (1) 상기 제23A조에 언급된 긴급(수입제한)관세는 최고 국내산업에 끼치는 심각한 손해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국내산업의 손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한다.
- (2) 상기 (1)항에 언급된 긴급(수입제한)관세는 제12조 (1)항의 수입관세 이외의 추가관세이다.

제4부. 보복관세

제23C조

- (1) 보복관세는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 차별 대우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한다.
- (2) 상기 (1)항의 보복관세는 제12조 (1)항의 수입관세 이외의 추가 관세이다.

제5부. 규정 및 제정

제23D조

- (1)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관세, 보복관세 부과와 관련한 요건 및 절차는 정부 법령으로 정한다.
- (2) 상기 (1)항에 언급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관세, 보복관세 세율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관세 미징수, 면제, 감면 및 환급

제1부. 관세 미징수

제24조

관세영역 외부로 지속운송 또는 추가운송을 위해 관세영역 내부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부. 관세 면제와 감면

38. 제25조 (2)항은 삭제, (1)항, (3)항 및 (4)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25조

(1) 아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 a. 상호 수혜 원칙에 의거 인도네시아내 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외국 대표부 직원의 물품
- b. 인도네시아 내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 및 그 직원의 물품
- c. 지식 서적
- d. 종교 수행, 자선, 사회, 문화 또는 자연재해 대처 목적으로 기부되는 물품
- e. 박물관, 동물원 및 기타 동종 공공장소 필요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자연보호 물품
- f. 지식관련 R&D 목적의 물품
- g. 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특별 물품
- h. 무기, 탄약, 및 예비 부품 등 국방 및 보안목적 군사장비
- i. 국방 및 보안목적의 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 또는 물질
- j. 비매용 샘플
- k. 시신 또는 화장재 박스
- l. 이사회물
- m. 특정 금액 또는 특정 수량까지의 승객, 승무원, 통행인 개인물품 및 우편 물품
- n. 국민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수입하는 약품
- o. 수선, 작업 및 시험 목적으로 기수출된 물품
- p. 기수출된 물품을 수출시의 동일 품질로 재수입한 경우
- q. 인간 치료물질, 혈액 분류 및 bahan penjenisan jaringan(인체/동식물의 조직)

(2) 삭제

(3) 상기 (1)항의 면세 규정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4) 본 법령의 면세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수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체납 수입관세 납부 및 지급 의무 수입세의 최소 100%에서 최고 500%가 행정벌금으로 부과된다.

39. 제26조 (2)항은 삭제, (1)항, (3)항 및 (4)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26조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은 아래 경우 부여된다.

- a. 투자 차원의 산업발전 및 개발용 물품 및 자재
- b. 산업건설 및 개발용 기계
- c. 특정 기간의 산업발전 및 개발용 물품 및 자재
- d. 환경오염 예방용 기구 및 원료
- e. 농업, 축산 또는 어업 발전을 위한 모종과 씨앗
- f. 허가된 포획도구를 통한 해양 포획물
- g. 세관지역으로 반입시점과 수입승인 시점 사이 고장, 품질저하, 분실, 자연적 수량 또는 중량 감소된 물품
- h. 공익용으로 지정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물품
- i. 국가중앙스포츠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스포츠 수입물품
- j. 외국 대여금 또는 기부금으로 수입하는 정부 프로젝트 소요물품
- k. 재수출용으로 가공, 조립 또는 타제품에 부착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 및 자재

(2) 삭제

(3) 상기 (1)항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4)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감면 관련 본 법령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소득에 손해를 끼친 경우 납세의무 수입세 최소 100%에서 최고 500%를 행정벌금으로 부과한다.

40. 제27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27조

(1) 기납부된 수입관세 전액 또는 일부는 아래 경우 환급된다.

- a. 제16조(5), 제17조(3)항에 언급된 수입관세 과납 또는 행정 오류에 따른 과납
- b. 제25조 및 제26조의 물품 수입
- c. 특정 사유로 재수출 또는 세관공무원 감독하에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 수입
- d. 수입물품 신고 허가전 수량이 훼손, 주문 오류 또는 품질 저하의 문제로 실제 수입관세 납

- 부역 대상 물량보다 적을 경우 또는
 - e. 항소기관의 판결에 따른 수입관세 과납분
- (2) 상기 (1)항의 관세환급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세관신고 및 수입관세 책임

제1부. 세관신고

제28조

아래 규정 및 절차는 장관이 정한다.

- a. 세관 신고 및 통관대장 형태, 내용 및 효력
- b. 세관신고서 제출 및 등록
- c. 세관신고서 및 통관대장 검사, 변경, 추가 및 취소
- d. 세관신고서 및 통관대장 배부 및 관리
- e. 세관 보완 서류 이용

제2부. 세관신고서 관리

제29조

- (1) 본 법령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세관신고서 관리는 운송업자,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 의해 이행된다.
- (2) 수입 또는 수출업자는 상기 (1)항의 세관신고 관리를 직접 하지 않는 경우 통관용역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세관신고 관리 관련 규정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3부. 관세 납부의무

- 41. 제30조 규정은 (3)항 및 (4)항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0조

- (1)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일로부터 수입업자는 수입관세 납부 책임이 있다.
- (2) 상기 (1)항의 관세는 세관신고일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관세 과세가격 기준

에 의거 계산된다.

- (3) 수입관세는 루피아화로 지급된다.
- (4) 수입관세 계산 및 납부에 적용되는 환율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42. 제32조는 (3)항 변경 및 (4)항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1조

제29조와 같이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통관용역업자는 해당 수입업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수입 관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2조

- (1) 하선장소 사업자는 하선장소내 보관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에 대해 책임진다.
- (2) 상기 (1)항의 하선장소 사업자 책임은 하선장소 보관물품이 아래와 같이 된 경우 해제된다.
 - a. 고의가 아닌 경우의 분실 또는 소실
 - b. 재수출 완료, 사용을 위한 수입 또는 임시수입 또는
 - c. 다른 하선장소,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치장으로 이송된 경우
- (3) 상기 (1)항의 수입관세 계산은 해당 물품의 세율 및 과세가격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 하선장소내 해당 물품 보관시 세관신고서상에 명기된 물품 종류 중 최고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가격은 세관공무원이 정한다.
- (4) 청구절차를 포함하는 상기 (2)항 및 (3)항의 규정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 (1) 보세구역 사업자는 보세구역 내 보관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에 대해 책임진다.
- (2) 보세구역 사업자의 상기 (1)항 책임은 아래 경우 해제된다.
 - a. 고의가 아닌 경우의 분실 또는 소실
 - b. 재수출 완료, 사용을 위한 수입 또는 임시수입 또는
 - c. 다른 하선장소, 다른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이송된 경우
- (3) 상기 (1)항의 수입관세 계산은 해당 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일 기준 세율 및 과세가격에 기초하여 지불되어야 한다.

제34조

- (1) 제25, 제26조의 자격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아래의 책임이 된다.

- a. 관세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은 자
 - b. 상기 a가 없을 경우 해당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자
- (2) 상기 (1)항의 수입관세 계산은 해당 물품 세관신고일 기준 세율 및 과세가격에 기초하여 지불되어야 한다.

제35조

수입물품이 운송수단을 통해 도착지 또는 수입관세 행정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수입관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

43. 제7장 제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7장. 납부, 청구 및 담보

44. 제7장 제1부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부. 납부

45. 제36조 (2)항 및 (3)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6조

- (1) 본 법령에 따른 수입 관세, 행정 벌금 및 채무이자 납부는 국고 또는 장관이 정한 곳에 납부한다.
- (2) 상기 (1)항에 언급한 수입 관세, 행정 벌금 및 채무이자 1,000루피아(1천Rp)반올림 계산한다.
- (3) 상기 (1)항의 수입관세, 행정벌금 및 채무이자 지불, 수령, 납부 및 (2)항의 루피아 반올림 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46. 제37조는 (1)항, (2)항, (3)항 변경 및 (2)항과 (3)항 사이에 1개항 즉 (2a)항이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7조

- (1) 체납 수입관세는 늦어도 세관신고서 등록일자까지는 의무 납부하여야 한다.
- (2) 상기 (1)항의 수입관세 납부기한은 관세납부가 정기적으로 규정되었거나 또는 관세면제 또는 관세경감 결정 대기중인 경우는 연장 가능하다.
- (2a) 상기 (2)항에 언급한 수입관세 납부 의무 기한 연장은

- a. 지급 규정이 정기적인 경우 이자 부담이 없으며,
 - b. 관세면제 또는 관세경감 신청이 거절된 경우는 이자가 부과된다.
- (3) 상기 (2)항 및 (2a)항의 납부기한 연장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47. 제37조와 제7장 제2부 사이에 1개 조 즉 제37A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37A조

- (1) 수입관세 납부액 과부족 및/또는 체납 행정벌금은 부과일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체납자의 신청에 의거 관세청장은 상기 (1)항의 수입관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최장12개월간 분할납세를 허가할 수 있다.
- (3) 상기 (2)항에 언급된 수입관세 지급 및/또는 행정벌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매월 2%의 이자가 부과된다.
- (4) 상기 (2)항에 언급된 지급기한 연장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48. 제38조는 1개 항 즉 (3)항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2부. 채권청구

제38조

- (1) 본 법령에 의거한 채무 또는 청구액 중 미지급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시작일로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해 매월 2%, 최장 24개월의 이자가 부과되며 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간주된다.
- (2) 정부 납부 채무액 또는 청구액 계산은 천 루피아 단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3) 상기 (1)항에 언급된 지급 만기일은
 - a. 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청구는 제37A조 (1)항 규정과 같이 부과일로부터 60일
 - b. 대정부 채권인의 정부에 대한 청구는 장관의 환불 결정일로부터 30일이다.

제39조

- (1) 국가는 관세채무발생 물품에 대해 관세 청구를 위한 우선권을 갖는다.
- (2) 상기 (1)항의 우선권관련 규정은 수입관세, 행정벌금, 이자 및 청구비용을 포함한다.
- (3) 관세청구 우선권은 모든 권리에 우선한다, 단:
 - a. 경매처분 벌칙으로 인한 동산 또는 부동산 경매비용

- b. 특정 물품 보존을 위해 지출된 비용
 - c. 상속관련 경매 및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사건처리 비용
- (4)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2년 경과한 경우 우선권은 소멸된다. 단, 지불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상기 (4)항과 같이 지불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2년 기간 소멸은 지급연장일로부터 계산된다.

제40조

- (1) 본 법령에 의거한 청구권은 채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소멸된다.
- (2) 상기 (1)항의 만료 기간은 아래의 경우 계산되지 않는다.
- a. 채무자가 인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b. 상기 제37조(2)항의 지불 연기 허가를 득한 경우
 - c. 채무자가 본 법령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49. 제41조는 변동이 없으나 제41조 설명은 본 법령 각 조별 설명서의 제41조 설명과 같이 변경된다.

제41조

채권 청구 및 회수 불능인 채권 제거에 대한 지침은 현행 법령에 따른다.

제3부. 담보

제42조

- (1) 본 법령에 따른 담보의 사용은:
- a. 1회 또는
 - b. 지속 사용 가능하다.
- (2) 상기 (1)항의 담보는 아래 형태를 취한다.
- a. 현금
 - b. 은행보증
 - c. 보험기관의 보증 또는
 - d. 기타 담보
- (3) 담보관련 규정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세관감독하의 보관소

제1부. 하선장소

제43조

- (1) 모든 세관지역에는 하선장소 사업자가 운영하는 하선장소가 설치된다.
- (2) 하선장소의 물건 장치는 장치시작일로부터 최장 30일까지 가능하다.
- (3) 하선장소 사업자가 하선장소 내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는 지급의무 수입관세의 20%가 행정벌금으로 부과된다.
- (4) 하선장소 지정 지정, 사용절차 및 장치 기간의 변경 등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2부. 보세구역

50. 제44조 (1)항 및 (2)항은 변경되며 (1)항과 (2)항 사이에 1개항 즉 (1a)항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44조

- (1)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구역, 장소 또는 건물은 아래 목적으로 수입관세 유예 혜택을 받는 보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 a. 사용, 다른 보세지역으로의 반출, 수출 또는 재수출 목적의 수입물품 장치
 - b. 가공 또는 수출 전 취합 또는 사용 목적의 수입물품 장치
 - c. 관세영역으로 부터의 물품과 함께 또는 별도로 수입물품 전시를 위해 장치
 - d. 일반인 및/또는 특정인 대상 판매를 위한 수입한 물품의 장치, 준비
 - e. 수출 또는 사용을 위한 수입 전 경매를 위해 수입물품을 장치
 - f. 수출 또는 관세영역으로 재투입하기 전 경매를 위해 관세영역으로 부터의 수입물품을 장치 또는
 - g. 수출 또는 사용을 위한 수입 전 재경매를 위한 수입물품의 장치
- (1a) 장관은 상기 (1)항에 언급한 보세 장치를 위한 장소 외 특정 활동을 위한 지역, 장소 또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 (2) 보세 장치장소 설립, 운영, 사업 및 형태 변경과 관련한 자격요건 및 기준은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

51. 제45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45조

- (1) 보세구역의 물품은 세관공무원의 허가에 의거 아래 목적으로 반출 가능하다.
 - a. 사용목적의 수입;
 - b. 가공;
 - c. 가공 또는 미가공 상태로 수출 또는
 - d. 다른 보세구역 또는 하선장소로 이송
 - e. 관세영역에서 작업 후 장관이 정한 자격요건에 의거 보세구역으로 재반입 또는
 - f. 관세영역으로 재반입
- (2)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보세구역으로 부터의 아래 물품
 - a. 기가공되었거나 또는 조립된 물품
 - b. 미가공된 물품 및/또는
 - c.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한 세율 및 과세가격에 근거하여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 (3) 세관공무원의 승인 이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관세의무 불이행 의도가 없더라도 물품을 반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750,000,000(칠억오천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4) 보세구역 내 소재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보세구역 사업자에게는 미지급 수입관세 납부 및 수입관세 100%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제46조

- (1) 보세구역 운영자가 아래 행위를 한 경우 보세구역 사업허가는 정지된다.
 - a. 보세구역관련 관재인의 감독하에 있는 경우
 - b. 보세구역 운영에 부적격한 경우
- (2) 상기 (1)항의 허가정지는 보세구역 운영자가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허가 취소로 변경된다.
 - a. 규정된 기간내에 채무 불이행 또는
 - b. 보세구역 운영능력이 없음
- (3) 상기 (1)항의 허가는 보세구역 운영자가 아래의 조치를 한 경우 재개된다.
 - a. 채무 이행 또는
 - b. 상기 보세구역 운영
- (4) 보세구역 허가는 아래 경우 (취소된다.)
 - a. 보세구역 운영자가 1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 b. 보세구역 운영자가 파산한 경우;
 - c. 보세구역 운영자가 사업운영에 있어 부정을 행한 경우;
 - d. 관련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5) 보세구역 허가 정지, 허가재개 및 허가취소 관련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상기 제46조와 같이 보세구역 허가가 취소된 경우 보세구역 사업자는 허가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a. 모든 수입관세 채무액 납부;
- b. 보세구역내 물품 재수출 또는
- c. 보세구역내 물품을 타 보세구역으로 이관

제3부. 세관장치장

제48조

- (1) 모든 세관에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세관장치장이 설치된다.
- (2) 상기 (1)항 외 세관장치장은 장관이 정한다.

52. 제49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9장. 장부 작성

제49조

수입업자, 수출업자, 하선장소 사업자, 보세구역 사업자, 세관용역업자 또는 운송업자는 의무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53. 제50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0조

- (1) 관세청장의 요청 하에 상기 제49조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무제표, 회계장부, 회계장부 증빙자료 및 전자데이터를 포함하는 사업관련 공문을 피검사 목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
- (2) 상기 (1)항의 사업자 부재시 재무제표, 회계장부, 회계장부 증빙자료 및 전자데이터를 포함하는 사업관련 공문 제시 의무는 사업자 대리인에게 있다.

54. 제51조 규정은 변경 및 3개항 즉 (2)항, (3)항, (4)항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1조

- (1) 상기 제49조의 회계장부는 실제적 사업현황 또는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소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회계장부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라틴문자, 아라비아 숫자, 루피아화, 인니어로 작성되거나 또는 장관이 허가한 외환 및 외국어를 사용한다.
- (3) 재무제표, 회계장부, 회계장부 증빙자료 및 전자데이터를 포함하는 사업관련 공문은 10년간 인니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4) 회계장부 작성과 관련한 지침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55. 제52조 규정은 변경 및 1개항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2조

- (1) 상기 제49조에 언급된 회계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벌금 50,000,000(오천만) 루피아가 부과된다.
- (2) 제51조 (1)항, (2)항 또는 (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벌금으로 25,000,000(이천오백만) 루피아가 부과된다.

56. 제10장 제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0장. 수출입 금지, 제한,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및 테러 및/또는 국제범죄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처리

제1부. 수출입금지

57. 제53조 (1)항, (2)항 및 (3)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3조

- (1) 금지 및 제한 규정 이행 감독을 위해 정부기관이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관련 금지 및/또는 제한 규정을 제정할 경우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2) 상기 (1)항의 수출입관련 금지 및/또는 제한규정 감독이행 관련 사항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 (3) 수출입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모든 물품이 세관신고서에 의거 이미 신고되었다면 수출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a. 수출 취소

- b. 재수출 또는
 - c. 세관공무원 감독하에 폐기. 단, 현행 법령에 의거 별도로 규정된 물품은 예외로 한다.
- (4)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은 제68조 규정과 같이 정부가 지배하는 물품이 된다. 단, 해당 물품에 대해 현행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부. 지적재산권 위반물품 통관보류

58. 제54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4조

상표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으로 상업법원장은 충분한 근거에 의거 인니에서 보호되는 상표권 및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의심될 경우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관세영역으로부터의 수출입을 위한 물건 반출 보류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

상기 제54조의 요청시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 a. 관련 상표권 및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
- b. 관련 상표권 및 저작권 소유 증빙
- c. 세관공무원의 신속한 인지를 위한 반출 보류 요청 수출입 물품에 대한 명확한 내역 및 설명 및
- d. 담보

59. 제56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6조

제54조의 서면 명령서에 의거 세관공무원은:

- a. 수출입 보류 명령에 대해 서면으로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물건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 b. 상업법원장으로부터 서면 요청서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세관구역으로부터 수입물품 또는 수출물품 반출을 보류한다.

60. 제57조 (1)항 및 (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7조

- (1) 상기 제56조 b항의 물품 반출 보류는 최장 10작업일 동안 적용된다.
- (2) 상기 (1)항의 기간은 특정 사유 및 조건에 의거 결정되며 상업법원장의 서면명령에 의거 1회 한해 최장 10일간 연장 가능하다.
- (3) 상기 (2)항의 수출입 물품 반출 보류 연장에는 제55조 d항의 담보 연장이 첨부된다.

61. 제58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8조

- (1) 반출 보류를 요청한 상표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에 의거 상업법원장은 해당 상표 또는 저작권 보유자에게 반출 보류 요청 물품에 대해 검사를 허가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허가는 상업법원장이 반출보류를 요청당한 해당 수출입 물품 소유자의 이익 및 설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2. 제59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9조

- (1) 제57조 (1)항의 10작업일 동안 세관공무원이 반출 보류를 요청한 당사자로부터 반출 보류가 정당하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 또한 상업법원장이 서면으로 보류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세관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관련 수출입 물품에 대한 반출 보류를 종료하며 본 법령에 의거 해당 물품 처리를 마무리한다.
- (2) 상기 (1)항의 10일내에 현행 법령에 의거 수출입 물품 반출보류를 요청한 당사자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한 경우 물품 반출보류 요청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신속히 관련 사실을 해당 물품 보류요청 접수 및 이행중인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상기 (2)항에 대해 통보하였고 상업법원장이 제57조 (2)항과 같이 서면으로 물품 반출 보류 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세관공무원은 수출입 물품 반출보류를 종료하며 본 법령의 세관 규정에 의거 해당 물품을 처리한다.

63. 제60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60조

특정 상황인 경우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수출입 물품 소유자는 상업법원장에게 제55조 d의 보증을 제출함으로써 세관공무원장에게 서면으로 제54조의 물품반출 보류 종료 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4. 제61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61조

- (1) 사건 조사후 수출입 물품이 저작권 또는 상표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 수출입 물품 소유주는 수출입 물품 보류를 요청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한이 있다.
- (2) 상기 (1)항의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한 상업법원은 제55조 d의 보증을 사용하여 손해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

수출입 물품에 대한 반출보류 결정은 해당 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세관공무원의 직권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63조

지적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에 대한 반출보류 규정은 승객, 승무원, 통행인의 물품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우편을 통한 배송 또는 물류서비스를 통한 물품 배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4조

- (1) 본 법령에 정한 상표 및 저작권 외 지적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는 정부 법령으로 정한다.
- (2) 제54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은 정부 법령으로 정한다.

65. 제64조와 제11장 사이에 1개 부 즉 제3부를 추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3부. 테러 및/또는 국제범죄와 관련된 물품 처리

제64A조

- (1) 초기 증거에 의거 테러 및/또는 국제범죄와 관련된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세관공무원은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조치 절차는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소유되지 않은 물품, 국가지배물품, 국가소유물품

제1부. 소유되지 않은 물품

제65조

(1) 소유되지 않은 물품이란:

- a. 제43조 (2)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하선장소에 보관된 물품
- b. 제47조 규정의 기한 내에 허가가 취소된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 c. 우편 배송 물품:
 1. 주소지 거주자 또는 수신자로부터 수신 거부되었으며 세관지역 외 발신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물품
 2. 세관지역 외부 목적지 물품 중 주소지 거주자에게 전달 실패 또는 수신자로부터 수신 거부되었으며 우체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발신자가 해결하지 않은 경우

(2) 상기 (1)항의 물품은 보세구역에 보관되며 장관이 정하는 보관료가 부과된다.

제66조

(1) 제66조 (3)항에서 규정하는 소유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이 신속히 서면으로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보세구역 보관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경매가 실시됨을 알린다.

(2) 상기 (1)항 물품에 대해 경매가 실시되기 전 소유주는 아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a. 체납된 수입관세 및 기타 관련 비용 지불 납부후 수입
- b. 체납비용 납부후 재수출
- c. 체납비용 납부후 수출 취소
- d. 체납비용 납부후 수출 또는
- e. 체납비용 납부후 보세구역으로 이송

(3) 제65조 (1)항의 물품은:

- a. 부패시 소각
- b. 특성상 오래 보관할 수 없거나, 손상, 위험 또는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소유주에게 서면 통지하여 신속하게 경매를 진행한다.
- c. 금지 물품은 제73조의 규정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 소유가 된다. 또는
- d. 제한적 물품인 경우 보세구역 보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

- (1) 제66조 (1)항 및 (3)항의 경매는 공매로 실시된다.
- (2) 상기 (1)항 공매액에서 미납 수입관세 및 체납 경비를 차감한 후 잔액은 소유주 소유가 된다.
- (3) 세관공무원은 서면으로 경매 실시후 10일내에 소유주에게 상기 (2)항의 잔액을 통보한다.
- (4) 상기 (3)항의 통보후 90일 이내에 소유주가 잔액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잔액은 국가 소유가 된다.
- (5) 상기 (1)항의 경매 실시를 위한 최소금액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규정된 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물품은 소각되거나 또는 장관 승인하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다.

제2부. 국가 지배 물품

제68조

- (1) 국가 지배 물품이란
 - a. 제53조 (4)항과 같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 b. 제77조 (1)항과 같이 세관공무원이 금지한 물품 또는 운송수단
 - c. 소유주 미상의 세관지역내 분실 물품 또는 운송수단
- (2) 상기 (1)항 a, b의 물품은 세관공무원에 의해 서면으로 사유를 포함하여 소유주에게 통보하며 (1)항 c 물품은 보세구역내 장치일로부터 30일간 공고한다.
- (3) 상기 (1)항의 물품은 보세구역에 보관한다.

제69조

- 제68조 (1)항 물품 중 :
- a. 부패한 것은 즉시 폐기
 - b. 특성상 오래 보관할 수 없거나, 손상, 위험 또는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물품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즉시 경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유주에게는 해당 사실을 서면통보한다.
 - c.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은 제73조와 같이 국가 소유 물품이 된다.

제70조

- 제68조 (1)항 b의 물품 및 운송수단은 아래의 경우 보세구역 내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주에게 반환된다.
- a. 체납 수입관세 납부완료 및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의 경우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관련 서류 또는 증빙을 제출하였을 경우 또는

- b. 체납 수입관세 납부완료 및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의 경우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관련 서류 또는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법원에서 해당물품을 증거로써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관이 결정한 일정금액을 물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물품 대체 명목으로 납부한 경우

제71조

- (1) 제69조 b의 경매는 공매로 한다.
- (2) 상기 (1)항 경매될 수 있는 최소 물품가격은 장관이 정한다. 물품이 최소 경매 가격에 미달할 경우는 장관의 승인을 통해 기타 목적으로 폐기될 수 있다.
- (3) 상기 (1)항의 경매 소득금은 해당 물품의 대손물품으로서 제72조(2)항의 장관 결정을 대기하는 중 또는 법원의 증거물로서 보관한다.

제72조

- (1) 제68조의 물품 또는 운송수단 소유자는 세관공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사유 및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이의신청 접수후 90일 이내에 장관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a. 본 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운송수단 또는 제69조 b의 및 제70조 b의 보유금을 즉시 소유주에게 반환 또는
 - b. 본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또는 제69조 b의 보유금은 본 법령에 의거 처리함
- (3) 상기 (2)항의 결정은 소유주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된다.
- (4) 상기 (2)항의 기간 중에 장관이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된다.

제3부. 국가 소유 물품

제73조

- (1) 국가 소유가 되는 물품은:
 - a. 제66조 (3)항 c에 언급된 금지 물품
 - b. 제66조 (3)항 d의 보세구역 내 보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주가 해결하지 못한 제한 물품
 - c. 제68조 (1)항 b의 범인 미상의 형사법 위반 물품 또는 운송수단
 - d. 제68조 (1)항 c의 물품 또는 운송수단 중 제68조 (2)항의 기한 내에 해결되지 못한 물품 또는 운송수단

- e. 제69조 c의 물품 또는
 - f. 제109조 (1), (2)항과 같이 판사의 판결에 근거하여 국가귀속이 결정된 물품 또는 운송수단
- (2) 상기 (1)항의 물품은 국가 재산이며 세관 보관소에 보관된다.
- (3) 국가 귀속 물품에 관한 규정은 장관이 정한다.

제12장. 세관 권한

제1부. 일반

제74조

- (1) 본 법령 시행 및 관세청장이 책임지는 기타 법령의 시행에 있어 세관공무원은 국가 권리 보호를 위해 물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2) 상기 (1)항의 권한 이행을 위해 세관공무원은 정부 법령으로 그 종류 및 자격 요건을 정하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66. 제75조 (1)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75조

- (1) 세관공무원은 해상 또는 강 위의 운송수단을 감독함에 있어 경비정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한다.
- (2) 상기 (1)항의 세관공무원이 이용하는 경비정 또는 기타 수단에는 정부 법령으로 그 종류 및 수량을 정하는 무기를 구비할 수 있다.

67. 제76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76조

- (1) 본 법령의 시행을 위해 세관공무원은 군대 또는 기타 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요청에 대해 군대 또는 기타 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7조

- (1) 본 법령에 따른 관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세관공무원은 물품 또는 운송수단을 제지할 수 있다.
- (2) 제지관련 절차 규정은 정부법령으로 정한다.

제2부. 감독과 봉인

68. 제78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78조

관세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수입물품 및 본 법령에 의거 감독이 필요한 운송수단 적재물품 또는 보관소 또는 기타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공무원은 자물쇠 시건, 봉인 또는 필요한 안전표시를 할 수 있다.

69. 제82조 (4)항은 삭제, (1)항, (3)항, (5)항 및 (6)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79조

- (1) 타 국가 세관에서 실시한 봉인 또는 안전표시는 제78조의 봉인 또는 안전표시로 간주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봉인 또는 안전표식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은 장관이 정한다.

제80조

- (1) 제78조에서 의미하는 세관공무원이 안전조치를 취한 자물쇠 시건, 봉인 또는 안전표식이 된 운송수단 소유주 또는 점유자는 상기 모든 봉인 자물쇠 또는 안전표식이 훼손, 누락, 분실되지 않도록 책임진다.
- (2) 상기 제78조, 제79조와 같이 설치된 자물쇠, 봉인 또는 안전표식은 세관공무원의 허가 없이 개봉, 누락 또는 훼손할 수 없다.

제81조

- (1) 운송수단 위 또는 기타 장소에 세관 감독하의 물품이 장치된 경우 세관공무원을 위한 공간이 제공된다.
- (2) 상기 (1)항의 숙박시설이 운송수단 내 또는 기타 장소에 준비 되지 않은 경우, 운송업자 또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적합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 상기 (2)항의 적합한 지원을 하지 않은 운송자 또는 사업자에게는 5,000,000(오백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제3부. 검사

제1절 물품검사

제82조

- (1)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 제출후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 권한을 갖는다.
- (2) 세관공무원은 수입업자, 수출업자, 운송업자, 하선장소 사업자, 보세구역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검사 물품 제시, 운송수단 개봉 또는 각 포장박스 또는 포장재 개봉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 (3) 상기 (2)항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 a. 세관공무원은 상기 (2)항에 언급한 필요사항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관련 비용 및 위험은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진다.
 - b.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25,000,000(이천오백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4) 삭제
- (5) 수입물품 세관신고서상에 품목 및/또는 수량을 잘못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최소 부족 수입 관세액의 100% 최고 부족 수입관세액의 1,000%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6) 수출물품 세관신고서상에 품목 및/또는 수량을 잘못 신고하여 수출관련 국고수입에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해서는 최소 부족 수출관세액의 100% 최고 부족 수출관세액 1,000%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70. 제82조 및 제83조 사이에 1개 조 즉 제82A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82A조

- (1) 감독을 위해 세관공무원은 직권으로 세관신고서 제출 전후 수출입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 (2) 상기 (1)항에 언급된 절차관련 규정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83조

수출입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주소지 수령자 앞에서 개봉하며 또는 수령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는 세관공무원 및 우체국 담당자가 함께 개봉한다.

제84조

- (1) 세관공무원은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회계장부, 관련자료, 수출입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신고서 검사를 위해 샘플을 요구할 수 있다.

(2) 샘플 수령은 수입업자의 요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71. 제85조 (1)항 규정 변경 및 1개항 즉 (3)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85조

- (1) 세관공무원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세관신고서 접수 및 관련 물품검사 결과가 세관신고서와 일치하는 경우 수입 또는 수출을 승인한다.
- (2) 세관신고서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수입 또는 수출 승인을 보류할 권한을 갖는다.
- (3) 세관공무원은 관련 당사자가 본 법령에 정한 관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72. 제85조와 제12장 제2절 사이에 1개조 즉 85A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85A조

- (1) 현행 법령에 의거 세관공무원은 관세영역 내 특정 물품 운송 통관을 검사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에 언급된 특정 물품의 통관검사는 선적 시, 운송 시 및/또는 목적지에서 하역 시 실시할 수 있다.
- (3) 상기 (1)항에 언급된 특정 물품의 통관검사 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심사

73. 제86조 (1)항 및 (2)항은 변경, (1)항과 (2)항 사이에 1개 항 즉 (1a)항 삽입 및 1개항 즉 (3)항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86조

- (1) 세관공무원은 세관의 필요를 위해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세관심사를 할 권한을 갖는다.
- (1a) 상기 (1)항에 언급된 세관심사를 함에 있어 세관공무원은 아래 권한을 갖는다.
 - a. 재무제표, 회계장부, 회계장부 증빙자료 및 전자데이터를 포함하는 사업관련 공문 및 통관관련 서류 요청
 - b. 관련 당사자들의 구두 및/또는 서면 답변 요청

- c. 사업장, 재무제표, 회계장부, 회계장부 증빙자료 및 전자데이터를 포함하는 사업관련 공문 보관장소 및 통관관련 사업활동 현황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 출입 및
 - d.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통관관련 서류 보관장소 또는 사무실에 대한 안전조치
- (2)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관련자가 세관공무원의 세관심사 권한을 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750,000,000(칠억오천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3) 상기 (1)항에 언급된 세관심사 절차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74. 제86조와 제3절 사이에 1개 조 즉 제86A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86A조

세관심사시 세관신고 물품 수량 및/또는 종류 오류로 인해 수입관세 납부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관세납부 부족분에 대한 납부의무 및 제82조 (5)항에 규정된 행정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된다.

제3절. 회계장부 검사

제87조

- (1) 세관공무원은 건물 및 아래와 같은 기타 장소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는다.
- a. 본 법령에 의거 허가된 행위를 하는 장소 또는
 - b. 세관신고서에 의거 세관 감독하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 (2) 세관공무원은 건물 또는 직간접적으로 상기 (1)항의 기타 장소와 연관된 장소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75. 제88조 (2)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88조

- (1) 본 법령에 따른 세관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세관공무원은 건물 또는 제87조 규정 외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건물 내 인원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건물 및 기타장소를 검사하는 동안 세관공무원의 요청에 의거 건물 또는 해당 장소 소유자 또는 지배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장소에 소재하는 물품과 관련한 서류 또는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9조

- (1) 상기 제87조 (2)항 또는 제88조 (1)항의 건물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한 조사는 관세청장의 지시서에 의한다.
- (2) 상기 (1)항의 지시서는 아래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
 - a. 본 법령에 의거 관세청장 감독하에 있는 건물 또는 장소 검사
 - b. 건물 또는 기타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 또는 인원 추적
- (3) 제87조 및 제88조의 건물 또는 장소 관리인은 해당 건물 또는 기타 장소에 출입하는 세관공무원을 제지할 수 없다. 단, 상기 건물 또는 기타 장소가 주거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세관공무원의 상기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0,000(오백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제4절. 운송수단 검사

76. 제90조 (3)항 및 (4)항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90조

- (1) 본 법령에 따른 관세의무 이행 점검을 위해 세관직원은 운송수단 제지 및 운송수단 및 운송수단 적재 물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2) 법 집행 부서 또는 우체국에 의해 봉인된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는 상기 (1)항의 검사에서 제외된다.
- (3) 제7A조 (3)항의 세관신고서에 기초하여 세관공무원은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중인 물품이 현행 법규에 위반된 경우 해당 물품 하역을 중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 (4) 상기 (3)항에 언급된 하역작업 중단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25,000,000(이천오백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제91조

- (1) 제90조 (1)항의 검사를 위해 세관공무원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거 운송업자는 운송수단을 정지시킨다.
- (2) 세관공무원은 상기 (1)항의 운송수단을 검사목적으로 잘못을 범한 자의 비용 부담으로 세관사무소 또는 기타 장소로 이송할 권한을 갖는다.
- (3) 운송업자는 세관공무원의 요청에 의거 의무적으로 본 법령에서 의무화하는 운송관련 모든 서류 및 세관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상기 (1), (2), 및 (3)항의 세관공무원 요청사항을 거부하는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5,000,000

(오백만) 루피아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제5절. 신변검색

제92조

- (1) 본 법령에 따른 세관의무사항 또는 수출입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기타 법령 이행을 위해 세관 직원은 아래 모든 인원의 신변을 검색할 수 있다:
 - a. 세관구역으로 진입한 차량에 탑승중인 인원 또는 방금 하차한 인원
 - b. 세관지역 외부로 목적지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탑승중인 자 또는 탑승 준비중인 자
 - c. 하선장소 또는 보세구역에 있는 자 또는 방금 해당 구역을 벗어난 자
 - d. 세관구역에 있거나 방금 해당 구역을 벗어난 자
- (2) 상기 (1)항과 같이 조사를 받는 자는 조사장소로 이동을 요청하는 세관공무원의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77. 제92조 및 제13장 사이에 1개 부 즉 제4부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4부. 관세청의 특별권한

제92A조

- (1) 관세청은 직권으로 또는 관련당사자의 요청에 의거 아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a. 문자 오류, 계산 오류 및/또는 본 법령 규정 적용 오류로 인해 수입관세 청구서상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정
 - b. 행정벌금이 착오에 대해 또는 잘못이 아닌 경우에 대해 부과된 경우 이에 대한 행정벌금 경감 또는 면제 조치
- (2) 상기 (1)항에 언급된 수정, 경감 또는 면제 신청 절차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78. 제13장 제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3장. 이의신청 및 소송

79. 제93조 (1)항, (2)항, (3)항, (4)항 및 (5)항은 변경, (1)항과 (2)항 사이에 1개 항 즉 (1a)항 삽입 및 1개 항 즉 (6)항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93조

- (1) 세관공무원이 정한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세율 및/또는 과세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입관세액의 100%를 담보금으로 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a) 상기 (1)항에 언급된 담보금은 수입물품이 세관지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 의무가 없다.
- (2) 관세청장은 상기 (1)항의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판결한다.
- (3) 관세청장이 상기 (1)항의 이의신청을 거절한 경우, 담보금은 현금화되어 수입관세 납부 및/또는 행정벌금을 납부한다.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 담보금은 반환된다.
- (4) 상기 (2)항에 언급된 6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은 수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담보금은 반환된다.
- (5) 상기 (1)항의 담보금이 현금이며 30일 후 상기 (3), (4)항의 담보금 반환 발생시 정부는 매월 2%의 이자를 최장 24개월간 지급한다.
- (6) 상기 (1)항에 언급된 이의신청 절차 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80. 제93조와 제94조 사이에 1개 조, 즉 93A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93A조

- (1) 수입관세 계산을 위한 세율 및/또는 과세가격 외 세관공무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이의신청이 수입관세 납부 과부족인 경우 납부되어야 하는 수입관세 청구액만큼을 담보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상기 (2)항에 언급된 담보금은 수입물품이 세관지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않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 (4) 관세청장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 (5) 상기 (1)항에 언급된 이의신청이 관세청장에 의해 거절된 경우 담보금은 현금화되어 수입관세 및/또는 행정벌금을 납부하며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 담보금은 반환된다.
- (6) 상기 (3)항에 언급된 6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판결을 하지 못할 경우 관련 이의신청은 수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담보금은 환불된다.
- (7) 상기 (1)항에 언급된 담보금이 현금이며 (5)항 및 (6)항에 언급된 담보금이 이의신청 수용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환불된 경우 정부는 매월 2%의 이자를 최장 24개월간 지급한다.
- (8) 상기 (1)항에 언급된 이의신청서 제출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81. 제94조 규정은 변경 및 1개 항, 즉 (6)항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94조

- (1) 행정징계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세청장에게 행정징계 금액을 담보금으로 하는 서면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2) 청장은 상기 (1)항의 이의신청서 접수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판결한다.
- (3) 청장이 상기 (1)항의 이의신청을 거절한 경우, 담보금은 현금화되어 행정벌금을 납부하며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 담보금은 반환된다.
- (4) 상기 (2)항에 언급된 6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은 수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담보금은 반환된다.
- (5) 상기 (1)항의 담보금이 현금이며 이의신청 수용 30일 이후 상기 (3), (4)항의 담보금 반환 발생시 정부는 매월 2%의 이자를 최장 24개월간 지급한다.
- (6) 상기 (1)항에 언급된 이의신청 절차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82. 제95조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95조

- (1) 제17조(2)항의 세율 및 과세가격 관련 청장의 결정 또는 제93조 (2)항 또는 제93A조 (4)항 또는 제94조 (2)항의 관세청장 판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판결일 또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입관세 납부후 세무법원으로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83. 제96조 삭제

84. 제97조 삭제

85. 제98조 삭제

86. 제99조 삭제

87. 제100조 삭제

88. 제101조 삭제

89. 제13장 제2부 삭제

90. 제102조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4장. 벌칙

제102조

아래 인원 :

- a. 제7A조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적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물품 운송
- b. 세관지역 외에서 또는 세관장의 허가 없이 기타 장소에서 하역
- c. 제7A조 (3)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세관신고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한 하역
- d. 지정된 및/또는 허가된 목적지 외 장소에 세관 감독하의 수입물품을 하역하거나 또는 장치하는 경우
- e. 불법으로 수입물품을 은닉
- f. 세관지역 또는 보세지역 또는 세관 감독하의 기타 장소로부터 세관공무원의 허가 없이 관세의 무가 완납되지 않은 물품을 반출하여 본 법령에서 정한 국가 추징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 g. 하선장소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운송이 목표지 세관까지 도착하지 못했으며 상기 사항이 본인 능력 밖의 사항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 h. 고의로 세관신고서상 수입물품 종류 및/또는 수량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수입 분야관련 밀수를 범한 혐의로 최소 1년 최장 10년간 징역형 및 최소 50,000,000(오천만) 루피아 최고 5,000,000,000(오십억) 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된다.

91. 제102조 및 제103조 사이에 4개 조를 즉 제102A조, 제102B조, 제102C조 및 제102D 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102A조

아래 인원 :

- a. 세관신고서 제출 없이 물품 수출
- b. 제11A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고의로 세관신고서상 수입물품 종류 및/또는 수량을 잘못 신고하여 수출 분야의 국가 징수금 미추징이 초래된 경우
- c. 제11A조 (3)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세관장의 허가없이 세관지역 외부에서 수출물품을 선적
- d. 세관장의 허가 없이 관세영역 내부에서 수출물품을 하역

- e. 제9A조 (1)항에 언급된 합법적 세관신고 서류 없이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수출 분야 관련 밀수를 범한 혐의로 최소 1년 최장 10년간 징역형 및 최소 50,000,000(오천만) 루피아 최고 5,000,000,000(오십억) 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된다.

제102B조

상기 제102조 및 제102A조를 위반하여 국가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 최소 5년 최장 20년간 징역형 및 최소 5,000,000,000(오십억) 루피아 최고 100,000,000,000(일천억) 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된다.

제102C조

제102, 제102A, 제102B에 규정된 형사법 위반행위를 정부 직책자 및 법집행자가 범한 경우 본 법령에 규정하는 형사처벌 외 추가로 1/3이 추가된다.

제102D조

목적지 세관까지 특정 물품을 운송을 하지 못했으며 상기 사항이 본인 능력 밖의 사항임을 증명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최장 5년간 징역형 및 최소 10,000,000(일천만) 루피아 최고 1,000,000,000(일십억) 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된다.

92. 제103조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03조

아래 해당하는 자:

- a. 허위 또는 조작된 세관 고서 및/또는 통관 보완서류를 제출
- b. 회계장부상의 기록을 허위로 작성, 동의 또는 공모
- c. 관세의무 이행에 있어 잘못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또는
- d. 제102조에 언급된 형사범죄를 통한 수입물품을 장치, 보관, 소유, 구매, 판매, 교환, 취득 또는 제공한 경우 최소 2년형 최고 8년의 징역형 및/또는 최소 100,000,000(일억) 최고 5,000,000,000(오십억) 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된다.

93. 제103조 및 제104조 사이에 1개 조, 즉 103A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103A조

- (1) 불법적으로 세관분야 서비스 및/또는 감독 관련 전자시스템에 접속한 자에 대해서는 최소 1

년 최장 5년간 징역형 및/또는 최소 50,000,000(오천만) 루피아 최고 1,000,000,000(일십억) 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된다.

- (2) 상기 (1)항에 언급된 행위로 인해 본 법령에 의한 국가 징수금 미추징이 초래된 경우 최소 2년 형 최고 10년의 징역형 및/또는 최소 1,000,000,000(일십억) 루피아 최고 5,000,000,000(오십억) 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된다.

94. 제104조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04조

아래 해당하는 자 :

- a. 상기 제102조, 제102A조 또는 제102B조에 언급된 범죄행위에서 발생한 물건을 운반
- b. 본 법령에 의거 보관되어야 하는 회계장부 또는 기록을 파괴, 파쇄, 은닉, 또는 폐기
- c. 세관신고서 설명사항, 세관 보완서류 또는 기록을 분실, 동의, 또는 누락시키는 데 공조한 자 또는
- d. 본 법령에 규정한 세관신고서 구비서류로 사용될 수 있는 외국 주소지 기업의 빈(내용 없는 양식) 상업송장을 보관 및/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최고 3년의 징역형 및/또는 최소 500,000,000(오억) 루피아 최고 3,000,000,000(삼십억) 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된다.

95. 제105조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05조

고의로 허가 없이 세관공무원이 설치한 자물쇠, 봉인 또는 안전표식을 개봉, 누락 또는 훼손한 자는 최소 1년 최고 3년의 징역형 및/또는 최소 500,000,000(오억) 루피아 최고 1,000,000,000(일십억) 루피아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된다.

96. 제106조 삭제

97. 제107조는 지속 유지되며 본 법령 각조별 설명 제107조 설명사항은 변경된다.

제107조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아 세관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통관용역업자가 본 법령이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동일한 형사규정이 적용된다.

98. 제108조 (3)항 및 (4)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08조

- (1) 본 법령에 의거한 범법행위를 법인, 주식회사 또는 회사, 협회, 공익재단, 협동조합 또는 그 명의로 했을 경우 형사처벌은 아래의 자에게 부과된다.
 - a. 상기 법인, 주식회사 또는 회사, 협회, 공익재단 또는 협동조합 및/또는
 - b. 상기 형사 범죄를 지시한 자 또는 지도자 또는 예방하지 못한 자
- (2) 본 법령에 의한 범법행위는 법인, 주식회사 또는 회사, 협회, 공익재단, 협동조합과 근로관계에 있는 자 및 기타 관계에 의거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 주식회사 또는 회사, 협회, 공익재단, 협동조합 내에 있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것을 포함한다.
- (3) 법인, 주식회사 또는 회사, 협회, 공익재단, 협동조합 대상으로 형사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소는 해당 법인의 법적 책임자인 경영진에 의해 진행된다.
- (4) 법인, 주식회사 또는 회사, 협회, 공익재단, 협동조합이 본 법령에 정한 형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본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되며 기본 형사처벌은 행정벌금 최고 1,500,000,000(십오억) 루피아이며 해당 범법행위가 징역형 대상인 범죄인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이 함께 구형된다.

99. 제109조 (1)항 및 (2)항은 변경, (2)항과 (3)항 사이에는 1개 항 즉 (2a)항이 아래와 같이 추가된다.

제109조

- (1) 제102조, 제103조 d 또는 제104조 a 에 언급된 수입물품, 제102A조에 언급된 수출물품 또는 제102D조에 언급된 범법행위를 통한 물품은 국가가 몰수한다.
- (2) 제102조 및 제102A조에 언급한 범법행위에 이용된 운송수단은 국가가 몰수한다.
- (2a) 제102D조에 언급된 형사법 위반행위에 이용된 운송수단은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
- (3) 상기 (1)항의 물품은 제73조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110조

- (1) 죄인이 형사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죄인의 재산 및/또는 소득으로 대체한다.
- (2) 상기 (1)항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벌금은 최장 6개월간의 징역형으로 대체된다.

제111조

세관관련 형사 범죄는 세관신고서 제출일 또는 범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시 제소할 수 없다.

제15장. 조사

제112조

- (1) 관세청 내 특정 직책 공무원에게는 형사소송법 관련 1981년 법령 제8호에 규정된 세관관련 형사 위반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사권자로서의 특별권한이 부여된다.
- (2) 상기 (1)항의 조사권자는 아래 권한을 갖는다.
 - a. 세관 관련 형사 위반 행위 발생에 대한 신고자의 보고 접수 또는 설명 청취
 - b. 피의자 또는 증인 소환 및 조사
 - c. 세관의 형사법 위반 행위 조사, 수색 및 탐문
 - d. 세관관련 형사법 위반 피의자 체포 및 구금
 - e. 세관관련 형사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심문 및 증거 요청
 - f. 세관관련 형사법 위반 피의자, 물품, 운송수단 또는 증거품에 대한 촬영 및/또는 시청각 미디어를 통한 녹화
 - g. 본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회계장부 및 기록 조사 및 기타 관련 장부 조사
 - h. 지문 채취
 - i. 가택, 복장 또는 신체 수색
 - j. 세관분야 형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장소 또는 시설 수색 및 해당 장소 내 물품 검사
 - k. 세관분야 형사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는 증거 물품 압수
 - l. 세관분야 형사법 위반 증거 물품에 대한 안전 표식 및 보호 조치
 - m. 세관분야 형사법 위반 사건 조사를 위한 전문가 호출
 - n. 세관분야 형사법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지 명령
 - o. 조사 중지
 - p. 세관분야 형사법 위반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법규에 따른 기타 조치
- (3) 상기 (1)항의 조사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1981년 법령 제8호에 규정에 의거 조사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한다.

제113조

- (1) 국가 재정수입의 필요성을 고려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총장은 세관분야 형사법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조사중지는 관련자가 수입관세 미납분 또는 부족분 납부 및 수입관세 미납분 또는 부족분의 4배에 해당하는 행정벌금을 완납한 이후에 시행된다.

100. 제15장 및 제16장 사이에 1개 장 즉 제15A장을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15A장. 공무원 지도

제113A조

- (1) 관세청 공무원의 태도 및 행동양식은 윤리강령에 기초하며 본 법령에 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지침이 된다.
- (2) 관세청 공무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윤리강령 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
- (3) 윤리강령 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 (4) 윤리강령위원회 구성, 조직 및 업무절차 관련 규정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113B

세관공무원이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 계산, 확정에 있어 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추징금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관공무원은 현행 법령에 따른 징계가 부과된다.

제113C

- (1) 관세청공무원이 연루된 관세관련 형사법 위반 징후가 있을 경우 장관은 재무부 산하 내사과에 초기 증거 확보를 위한 관련 공무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의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113D

- (1) 관세 위반 해결에 성과가 있는 개인, 단체 및/또는 작업반은 포상금을 획득할 권한이 있다.
- (2) 포상금은 행정벌금 및/또는 관세관련 형사법위반물품 경매소득의 최고 50%까지 지급된다.
- (3) 적발된 물품이 현행 법령에 의거 금지 및/또는 제한된 물품인 경우 경매가 금지되며 포상금 계산을 위한 물품가격은 장관이 정한다.
- (4) 상기 (1)항 및 (2)항에 언급된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101. 제115조 및 제17장 사이에 3개 조 즉 제115A조 및 제115C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16장. 기타 규정

제114조

- (1) 본 법령에 규정하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기준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단, 물품의 세율 또는 최종 수입관세 세율이 0%인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 5,000,000(오백만) 루피아

의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2) 본 법령에 규정한 행정벌금, 행정벌금 조정 및 이자 조정관련 사항은 별도의 정부 법령으로 정한다.

제115조

아래 자격요건 및 방법은:

- a. 자유무역 지역 및/또는 자유 무역항으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물품
- b. 인도네시아 대륙붕 및 경제특구에 있는 시설물 또는 기구내에서의 세관신고는 정부 법령으로 정한다.

제115A조

- (1) 자유무역지구 및/또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지역에 반출입되는 물품 및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 공무원은 감독권한을 갖는다.
- (2) 상기 (1)항에 언급된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115B조

- (1) 국민의 요청에 의거 관세청은 특정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상기 (1)항에 언급된 정보제공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115C조

- (1) 모든 관세청 공무원은 인지하고 있는 모든 사항 또는 업무상 통보된 사항 또는 본 법령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습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통보가 금지된다.
- (2) 상기 (1)항에 언급된 금지 규정은 본 법령 수행을 위해 관세청장이 임명한 전문가에게도 적용된다.
- (3) 장관은 서면으로 상기 (1)항과 (2)항에 언급된 관세청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제3자로부터 습득한 증거에 대해 국가재정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조사관에게 설명하고 제시하도록 명할 권한을 갖는다.
- (4)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사를 위해 형사소송법 관련 1981년 제8호 법령 제10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판사의 요청에 의거 장관은 서면으로 관세청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상기 (1)항 및 (2)항의 증거 및 진술을 판사에게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II조

과도규정

1. 본 법령 시행 시점에 :

- a. 관세관련 기존 시행령은 본 법령과 배치 및/또는 신규 시행령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지속 유효하다.
- b. 관세관련 사항이 본 법령 시행 시점에 미결상태인 경우 해당 사항 해결은 모든 사람에게 용이한 관세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한다.

2. 본 법령의 시행령은 본 법령 제정일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제정한다.

3. 본 법령은 제정일로부터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본 법령을 인니국가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함.

자카르타

2006년 11월 15일

인니공화국 대통령

서명 DR. H. SUSILO BAMBANG YUDHOYONO

2006년 11월 15일 자카르타에서 법으로 제정됨.

인니 법무장관

서명 HAMID AWALUDIN

2006년 인도네시아 관보 93호

사본은 원본과 동일함

인니 국무장관

경제 및 산업분야 법령 국장

M. SAPTA MURTI, SH., MA, MKn

〈부록 IV〉 국가품질표준(SNI) 인증기관¹⁵⁸⁾

1. Pusat Pengujian Mutu Barang

No LPK : LSPr-001-IDN

Lingkup: Bahan Kimia, Produk Kimia, dan Serat ; Karet dan Produk Plastik ; Logam Dasar dan Produk Terbuat dari Logam ; Peralatan Listrik dan Peralatan Optik ; Perdagangan Grosir dan Eceran, Reparasi Kendaraan Bermotor dan Barang Keperluan Rumah Tangga ; Teknologi Informasi ; Jasa Engineering ; Jasa Lain ; Administrasi Umum ; Peralatan Transpor Lain ; Konstruksi ; Mesin dan Peralatan ;

Alamat : Jl. Raya Bogor, Km. 26, Ciracas, Jakarta Timur

Telpon : (021) 8710321-3

Email : sertifikasippmb_pj@yahoo.com

Contact Person : Nurul Fadina

Periode Akreditasi: 12-11-2010 - 11-11-2018

SNI yang Terkait : 56 SNI

2. Balai Sertifikasi Industri

No LPK : LSPr-004-IDN

Lingkup:

Alamat : Jl. Jend. Gatot Subroto Lt., 20, Jakarta

Telpon : (021) 5255509

Email : triyoganurjana@yahoo.com

Contact Person : Triyoga IW Nurjana

Periode Akreditasi: 02-05-2011 - 30-04-2019

SNI yang Terkait : 177 SNI

158) 인도네시아 기술위원회(BSN) 홈페이지(<http://sisni.bsn.go.id/index.php?/lembsert/inspeksi/publik>) 접속하여 해당 인증기관(LSPPro)이 담당하는 국가품질표준(SNI) 품목 확인이 가능. 현지 인도네시아 관세관의 정보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술위원회(BSN)가 지정한 인증기관(LSPPro)의 수는 총 43개임

3. LMK

No LPK : LSPr-005-IDN

Lingkup:

Alamat : Jl. Duren Tiga, Jakarta 12760

Telpon : (021) 7943450

Email : giman@pln-jaser.co.id

Contact Person : Wawan Bumowarso

Periode Akreditasi: 03-03-2011 - 02-02-2019

SNI yang Terkait : 54 SNI

4. Jogja Product Assurance (JPA)

No LPK : LSPr-009-IDN

Lingkup:

Alamat : Jl. Sokonandi No. 9, Yogyakarta

Telpon : (0274) 512929; (0274) 563939

Email : lspr_jpa@yahoo.com

Contact Person : Niken Karsiati

Periode Akreditasi: 23-04-2012 - 22-04-2016

SNI yang Terkait : 29 SNI

5. Baristand Industri Surabaya

No LPK : LSPr-011-IDN

Lingkup:

Alamat : Jl. Jagir Wonokromo No. 360 Surabaya

Telpon : (031) 8410054

Email : lspro_sby@yahoo.co.id

Contact Person : Siti Rohmah Siregar

Periode Akreditasi: 20-06-2012 - 19-06-2016

SNI yang Terkait : 72 SNI

6. PT. TUV NORD Indonesia

No LPK : LSPr-012-IDN

Lingkup:

Alamat : Perkantoran Hijau Arkadia, Jl. Letjen TB. Simatupang Kav.88, Tower F part of 7th floor, suite 704, Jakarta Selatan 12520, Indonesia

Telpon : (021) 78837338

Email : indonesia@tuv-nord.com

Contact Person : Ir, Robert Napitupulu

Periode Akreditasi: 21-06-2012 - 20-06-2016

SNI yang Terkait : 100 SNI

7. Balai Besar Barang dan Barang, Teknik (B4T)

No LPK : LSPr-013-IDN

Lingkup:

Alamat : Jl Sangkuriang No, 14 Bandung 40135

Telpon : (022) 2504088

Email : lspro@b4t.go.id

Contact Person : Ir, Priyono

Periode Akreditasi: 10-11-2012 - 09-11-2016

SNI yang Terkait : 60 SNI

8. Balai Besar Teknologi Pencegahan Pencemaran Industri Semarang(BBTPI Semarang)

No LPK : LSPr-016-IDN

Lingkup:

Alamat : Jl, Ki Mangunsarkoro No, 6, Semarang 50136

Telpon : (024) 8316315

Email : lsprobbtppi@yahoo.co.id

Contact Person : Drs, Budi Nur Prasetyo, M.Si

Periode Akreditasi: 04-05-2013 - 03-05-2017

SNI yang Terkait : 21 SNI

9. LUK B2TKS

No LPK : LSPr-017-IDN

Lingkup:

Alamat : Kawasan PUSPIPTEK Gedung 220, Serpong, Tangerang 15314

Telpon : (021) 7560565

Email : lspro_luk@yahoo.com

Contact Person : Dr. Ing. H. Agus Suhartono

Periode Akreditasi: 21-01-2013 - 20-01-2017

SNI yang Terkait : 55 SNI

10. BBIHP

No LPK : LSPr-018-IDN

Lingkup:

Alamat : Jl. Racing Center No. 28, Makassar 90231

Telpon : (0411) 441207; (0411) 434700

Email : bbihp@yahoo.co.id

Contact Person : Andoyo Sugiharto

Periode Akreditasi: 16-04-2010 - 15-04-2014

SNI yang Terkait : 7 SNI

11. Samarinda ETAM

No LPK : LSPr-020-IDN

Lingkup:

Alamat : Jl. Harmonika No. 3, Samarinda

Telpon : (0541) 746218

Email : y_adiningsih@yahoo.co.id

Contact Person : Akhmad Mutawakkil, SE

Periode Akreditasi: 21-07-2011 - 20-07-2019

SNI yang Terkait : 2 SNI

12. Balai Besar Kimia dan Kemasan(Chempack)

No LPK : LSPr-021-IDN

Lingkup:

Alamat : Jl. Balai Kimia No. 1, Pekayon, Pasar Rebo

Telpon : (021) 8717438

Email : lspro_chempack@yahoo.com

Contact Person : Rochmi Wijayanti

Periode Akreditasi: 20-10-2011 - 19-10-2015

SNI yang Terkait : 66 SNI

13. TEXPA-Balai Besar Textil (BBT)

No LPK : LSPr-023-IDN

Lingkup:

Alamat : Jl. Jend. Ahmad Yani No. 390

Telpon : 022 - 7206214

Email : anne_sukmawati2000@yahoo.com

Contact Person : Quri Siti Mirah DP

Periode Akreditasi: 25-04-2012 - 24-04-2016

SNI yang Terkait : 28 SNI

14. CENCERA

No LPK : LSPr-024-IDN

Lingkup:

Alamat : Jl. Jend. Ahamd Yani No. 392

Telpon : 022 - 7206221

Email : lsprcencera@yahoo.com

Contact Person : Ir. Mustansir, MSc

Periode Akreditasi: 23-11-2012 - 22-11-2016

SNI yang Terkait : 33 SNI

15. TOEGOE

No LPK : LSPr-025-IDN

Lingkup:

Alamat : Jl. Kusumanegara No. 7, Yogyakarta

Telpon : 0274-546111

Email : sertifikasi,bbkb@gmail.com

Contact Person : Ibu Lis

Periode Akreditasi: 27-02-2009 - 26-02-2017

SNI yang Terkait : 32 SNI

16. PT. TUV Rheinland Indonesia

No LPK : LSPr-026-IDN

Lingkup:

Alamat : Menara Karya Lt. 10, Jl. H. R. Rasuna Said Blok X - 5, Kav. 1 - 2

Telpon : 57944579

Email : jakarta@idn.tuv.com

Contact Person : Abdul Qohar

Periode Akreditasi: 04-05-2013 - 03-05-2017

SNI yang Terkait : 68 SNI

17. BIPA Palembang

No LPK : LSPr-007-IDN

Lingkup:

Alamat : Jl. Kapten A. Rivai No. 92 / 1975 Palembang 30125

Telpon : (0711) 350080 (0711) 360213

Email : lsprobipa@yahoo.com

Contact Person : Ibu Rahmaniar

Periode Akreditasi: 06-03-2012 - 05-03-2016

SNI yang Terkait : 17 SNI

200

18. BPSMB Surabaya

No LPK : LSPr-008-IDN

Lingkup:

Alamat : Jl. Gayung Kebonsari Dalam No. 12A, Surabaya

Telpon : (031) 8280762

Email : lsprobpsmbsby@gmail.com

Contact Person : Samsul Hudi

Periode Akreditasi: 21-06-2012 - 20-06-2016

SNI yang Terkait : 38 SNI

19. LSPro Alsintan BPMA

No LPK : LSPr-027-IDN

Lingkup:

Alamat : Jl. Pos Citayam Kel. Bojong Pondok Terong, Kec. Pancoranmas, Depok 16431

Telpon : (021) 87987660

Email : admin@bpm-alsintan.com

Contact Person : Wahyu

Periode Akreditasi: 16-04-2010 - 15-04-2014

SNI yang Terkait : 11 SNI

20. Balai Besar Industri Agro (BBIA)

No LPK : LSPr-010-IDN

Lingkup:

Alamat : Jl. Ir. H. Juanda No. 11 Bogor

Telpon : (0251) 8324068

Email : cabi@bbia.go.id

Contact Person : Ir. Roehmi Widjajanti, M.Eng

Periode Akreditasi: 11-11-2008 - 10-11-2016

SNI yang Terkait : 64 SNI

21. Borneo Pontianak

No LPK : LSPr-019-IDN

Lingkup:

Alamat : Jl. Budi Utomo No. 41 Pontianak

Telpon : (0561) 881533 (0561) 884442

Email : borneo_019@yahoo.com

Contact Person : Sony Laksono

Periode Akreditasi: 18-02-2011 - 17-02-2019

SNI yang Terkait : 5 SNI

22. Balai Riset dan Standardisasi Industri Medan

No LPK : LSPr-015-IDN

Lingkup:

Alamat : Jl. Sisingamangaraja No.24, Medan, 20217

Telpon : (061) 7363471 (061) 7364760

Email : nsunirat@yahoo.com

Contact Person : Nurdin Sinurat

Periode Akreditasi: 04-05-2013 - 03-05-2017

SNI yang Terkait : 43 SNI

23. Sucofindo ICS

No LPK : LSPr-022-IDN

Lingkup:

Alamat : Graha Sucofindo,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Telpon : (021) 7983666

Email : mtambunan@sucofindo.co.id

Contact Person : Mangajana Tambunan

Periode Akreditasi: 25-04-2012 - 24-04-2016

SNI yang Terkait : 144 SNI

24. PT Turangga Tosan Indonesia

No LPK : LSPr-028-IDN

Lingkup:

Alamat : Jl. Dewi Sartika No. 17A, Ciputat, Tangerang Selatan-Banten

Telpon : (021) 7994740

Email : pturangga@yahoo.com

Contact Person : Tono Haryono

Periode Akreditasi: 07-09-2010 - 06-09-2014

SNI yang Terkait : 5 SNI

25. MIDC (WITHDRAWN 21 JANUARY 2015)

No LPK : LSPr-029-IDN

Lingkup:

Alamat : Jl. Sangkuriang No. 12, Bandung

Telpon : (022) 2503171

Email : lspro_midc@yahoo.co.id

Contact Person : A. Yudia Bhakti

Periode Akreditasi: 27-04-2011 - 26-04-2015

SNI yang Terkait : 27 SNI

26. ILPro - IPB

No LPK : LSPr-030-IDN

Lingkup:

Alamat : Kampus IPB Baranangsiang, Jl. Pajajaran – Bogor, Jawa Barat

Telpon : (0251) 8385165

Email : sertifikasi_ipb@yahoo.co.id

Contact Person : Henny P

Periode Akreditasi: 27-04-2011 - 26-04-2015

SNI yang Terkait : 55 SNI

27. PaPICS BBPK

No LPK : LSPr-031-IDN

Lingkup:

Alamat : Jl. Raya Dayeuhkolot no.132 Bandung

Telpon : (022) 5202980

Email : bbkp@bbkp.go.id

Contact Person : Nina

Periode Akreditasi: 21-07-2011 - 20-07-2015

SNI yang Terkait : 20 SNI

28. BPSMB Makassar

No LPK : LSPr-032-IDN

Lingkup:

Alamat : Jl. A.P. Pettarani, Makassar

Telpon :

Email : bpsmbsulsel@yahoo.com

Contact Person : Nyoman

Periode Akreditasi: 21-07-2011 - 20-07-2015

SNI yang Terkait : 6 SNI

29. LSPro Baristand Aceh

No LPK : LSPr-033-IDN

Lingkup:

Alamat : Jl. Cut Nyak Dhien no. 377 Lamteumen Timur Banda Aceh

Telpon :

Email : abutrachman@yahoo.co.id

Contact Person : Abu Rachman

Periode Akreditasi: 29-11-2011 - 28-11-2015

SNI yang Terkait : 10 SNI

30. LSPro Baristand Manado

No LPK : LSPr-034-IDN

Lingkup:

Alamat : Jl. Diponegoro No. 21 - 23 Manado

Telpon :

Email : moniharaponletta@yahoo.co.id

Contact Person : Letta Moniharapon

Periode Akreditasi: 29-11-2011 - 28-11-2015

SNI yang Terkait : 2 SNI

31. LSPro Baristand Bandar Lampung

No LPK : LSPr-035-IDN

Lingkup:

Alamat : Jl. By Pass Soekarno-Hatta Km. 1 Rajabasa – Bandar Lampung

Telpon :

Email : cs_lampung@ymail.com

Contact Person : Arif Subagyo

Periode Akreditasi: 29-11-2011 - 28-11-2015

SNI yang Terkait : 13 SNI

32. Puslitkoka CCQC

No LPK : LSPr-036-IDN

Lingkup:

Alamat : Jl. PB. Sudirman No. 90 – Jember, Jawa Timur

Telpon : (0331) 757130

Email : lspro.ccqc@gmail.com

Contact Person : Misnawi

Periode Akreditasi: 01-03-2012 - 29-02-2016

SNI yang Terkait : 5 SNI

33. UPTD BPSMB Medan

No LPK : LSPr-037-IDN

Lingkup:

Alamat : Jl. STM No.17, Kampung Baru, Medan

Telpon : 061-7862040

Email : noviradsa@yahoo.com

Contact Person : Novira artsiwy

Periode Akreditasi: 27-09-2012 - 26-09-2016

SNI yang Terkait : 1 SNI

34. Balai Riset dan Standardisasi Industri Padang

No LPK : LSPr-038-IDN

Lingkup:

Alamat : Komplek LIK Ulu Gadut, Padang, Sumatera Barat

Telpon : 0751-72201

Email : lspropadang@gmail.com

Contact Person : Umar Habson

Periode Akreditasi: 16-05-2013 - 15-05-2017

SNI yang Terkait : 5 SNI

35. UPT Riau UPT PSMB

No LPK : LSPr-039-IDN

Lingkup:

Alamat : Jl. Dr. Sutomo No. 108 Pekan Baru

Telpon : (0761) 21235

Email : bpmb_pekanbaru@yahoo.co.id

Contact Person : Syafrial

Periode Akreditasi: 20-06-2013 - 19-06-2017

SNI yang Terkait : 9 SNI

36. LSPro Hasil Perikanan (LSPro-HP) Balai Besar Pengujian Penerapan Hasil Perikanan

No LPK : LSPr-040-IDN

Lingkup:

Alamat : Jl. Raya Setu No 70, Cipayung, Jakarta Timur

Telpon : (021) 84998429

Email : lsprobbp2hp@gmail.com

Contact Person : Dra. Prihastini Ngudi Lestari, MM

Periode Akreditasi: 19-09-2013 - 18-09-2017

SNI yang Terkait : 19 SNI

37. LSPro PT. Ceprindo

No LPK : LSPr-041-IDN

Lingkup:

Alamat : Jl. Hybrida PE 10 Kav.30, Kelapa Gading Jakarta Utara

Telpon : (021) 4532451

Email :

Contact Person : Dr. Dasriel Adnan Noeha

Periode Akreditasi: 30-01-2014 - 29-01-2018

SNI yang Terkait : 26 SNI

38. PT. Agri Mandiri Lestari

No LPK : LSPr-042-IDN

Lingkup:

Alamat : Jl. Taman Margasatwa NO.3 Ragunan, Pasar Minggu - Jakarta Selatan

Telpon : 021-7800006

Email : widi_bebi@yahoo.com

Contact Person : Ir. Widi Atmoko

Periode Akreditasi: 18-06-2014 - 17-06-2018

SNI yang Terkait : 12 SNI

39. PT. Integrita Global Sertifikasi

No LPK : LSPr-043-IDN

Lingkup:

Alamat : Komplek Ruko Taman Tekno Boulevard Blok A No. 20 - 21, Jl. Taman Tekno Widya, BSD Tangerang, Banten

Telpon : 021-29313344/ 087788107660

Email : igsveramarini@gmail.com atau niken@igs-pro.com

Contact Person : Vera Marini

Periode Akreditasi: 10-12-2014 - 09-12-2018

SNI yang Terkait : 19 SNI

40. Benih dan Bibit Ternak (BIBITER) Direktorat Jenderal Peternakan dan Kesehatan Hewan Kementerian Pertanian

No LPK : LSPr-045-IDN

Lingkup:

Alamat : Gd. C, Lt 7 Ruang 723 Jl. Harsono RM No.3 Pasar Minggu Jakarta Selatan

Telpon : 021-7815380 ext 4728

Email :

Contact Person :

Periode Akreditasi: 29-07-2015 - 28-07-2019

SNI yang Terkait : 21 SNI

41. PT Carsurin

No LPK : LSPr-046-IDN

Lingkup:

Alamat : Wisma 77-Tower 2, Lt.19 Jl.. Letjen S Parman, Kav 77, Slipi DKI Jakarta

Telpon : 08111365315

Email :

Contact Person : Benriwan Simbolon

Periode Akreditasi: 29-07-2015 - 28-07-2019

SNI yang Terkait : 6 SNI

42. PT Qualis Indonesia

No LPK : LSPr-047-IDN

Lingkup:

Alamat : Jl. Pajajaran No. 17 Oesa Gandasari, Kec. Jatiuwung, Tangerang 15137

Telpon : (0211 5569583

Email :

Contact Person : Ujiono

Periode Akreditasi: 11-08-2015 - 10-08-2019

SNI yang Terkait : 20 SNI

43. PT. SGS Indonesia

No LPK : LSPr-048-IDN

Lingkup:

Alamat : Jl. Cilandak KKO #108 C -Cilandak Jakarta Selatan

Telpon : 02178181111

Email : supriyanto@sgs.com

Contact Person : Supriyanto

Periode Akreditasi: 19-08-2015 - 18-08-2019

SNI yang Terkait : 5 SNI

〈부록 V〉 라벨링 규정¹⁵⁹⁾

1.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62/M-DAG/PER/12/2009

CONCERNING PRODUCTS LABELING OBLIGATION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THE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sidering:

- a. that in the framework to guarantee consumers' right on the right and clear information about condition and guarantee of goods are used by them, it is necessary to govern products labelling obligation as intended in Article 8 of Law No. 8/1999 concerning Consumers Protection;
- b. that products labelling obligation is required for effective fostering and control for implementation of consumers protection;
- c. that based on consideration as intended in paragraph a and paragraph b,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159) <http://protraf.net/rulebook>(일본국제협력기구인 JICA에서 운영하는 'Trade Related Rule Book')에서 발췌한 본문의 영문 해석본임. 본 영문본은 참조용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언제든지 원 법령에 개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 법령의 재확인 및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함.

원 법령인 No. 62/M-DAG/PER/12/2009에 이어, 개정문인 No. 22/M-DAG/PER/5/2010을 순서대로 실음. 부록의 영문 해석본이 없으나 <http://tbt.bsn.go.id/index.php/notif/usulan/dtluspub/en/857>에 게재된 PDF형식의 파일을 다운받아 대상 품목을 HS 코드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음

In view of:

1. Trade Law 1934 (Statute Book No. 86/1938);
2. Law No. 2/1981 concerning Legal Metrology (Statute Book No. 11/1981,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3193);
3. Law No. 5/1984 concerning Industry (Statute Book No. 22/1984,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3274);
4. Law No. 10/1995 concerning Customs (Statute Book No. 75/1995,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3612) as amended by Law No. 17/2006 (Statute Book No. 93/2006,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661);
5. Law No. 8/1999 concerning Consumers Protection (Statute Book No. 42/1999,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3821);
6. Law No. 15/2001 concerning Brand (Statute Book No. 110/2001,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131);
7. Law No. 32/2004 concerning Regional Government (Statute Book No. 125/2004,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437) as amended the latest by Law No. 12/2008 (Statute Book No. 59/2008,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844);
8. Law No. 39/2008 concerning State Ministries (Statute Book No. 166/2008,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916);
9. Government Regulation No. 10/1987 concerning Extension Unit, Additional Unit, and Other Legal Unit (Statute Book No. 17/1987,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3351);
10. Government Regulation No. 102/2000 concerning National Standardization (Statute Book No. 1999/2000,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020);
11. Government Regulation No. 58/2001 concerning Consumer Protection Fostering and Control (Statute Book No. 103/2001,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126);
12. Government Regulation No. 38/2007 concerning Administration Duty Sharing among Central Government, Province Government, and Regency/Municipality Government (Statute Book No. 82/2007,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737);
13. Presidential Regulation No. 9/2005 concerning Position, Duty, Function, Organization Structure, and Work Flow of State Ministri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s amended several times, the latest by Presidential Regulation No. 20/2008;
14. Presidential Regulation No. 10/2005 concerning Organization Unit and Duty of First Echelon of State Ministri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s amended several times, the

- latest by Presidential Regulation No. 50/2008;
15. Presidential Decree No. 84/P/2009 concerning Establishment of Second United Indonesia Cabinet;
 16. Decree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o. 61/MPP/Kep/2/1998 concerning Metrological Operation as amended by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o. 251/MPP/Kep/6/1999;
 17.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01/M-DAG/PER/3/2005 concerning Organization and Work Flow of Ministry of Trade as amended several times, the latest by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24/M-DAG/PER/6/2009;
 18.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Industry No. 19/M-IND/PER/5/2006 concerning Standardization, Guidance, and Supervisory of Indonesian National Standard for Industrial Products;
 19.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14/M-DAG/PER/3/2007 concerning Standardization of Service on Trade and Controlling of Indonesian National Standard (SNI) Obligated to Tradable Products and Service as amended by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30/M-DAG/PER/7/2007;
 20.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36/M-DAG/PER/9/2007 concerning Issuance of Trading License as amended by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46/M-DAG/PER/9/2009;
 21.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19/M-DAG/PER/5/2009 concerning Registration of Manual Book and After Service Guarantee Card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for Telecommunications, Informatics and Electronic Devices;
 22.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20/M-DAG/PER/5/2009 concerning Regulation and Method of Supervising Products and/or Services;

HAS DECIDED:

To stipulate: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CONCERNING PRODUCTS LABELING
OBLIGATION

CHAPTER I GENERAL PROVISION

Article 1

In this Ministerial Regulation:

1. Label is every explanation about goods in the form of drawing, text, combination of both, or other form that has information about goods and business entrepreneur as well as other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effective regulations, accompanied with goods, entered in, stick on, or part of goods packaging.
2. Goods are everything tangible or not tangible, movable or not movable, consumed all of or not, can be traded, used, functioned, or consumed by the consumers.
3. Import is all activities to enter goods to the customs area.
4. Customs area is area within territory of the Republic Indonesia covering land, waters, and air space, as well as certain places in the Exclusive Economics Zone and Continental Shelf where the Law on Customs is imposed;
5. Business Agents are individuals or corporate bodies that are set up and domiciled or carry out busines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either individually or jointly, through a business contract in various economic fields.
6. Consumer is every person uses available goods and/or service in the community, for the interest of itself, family, other person, or other life creature and not for trading.
7. Market is place to meet of seller party and buyer party to make transaction of selling-buying process.
8. International System unit (le Systeme International d'Unites) is measurement unit that has system of measurement based on basic unit legalized by General Compensation for Measurement and Scale.
9. Packing is place used to pack and/or cover goods, directly or indirectly cover the goods.
10. Director of Distributed Goods and Services Control is Director who has task and responsibility to control goods and services are distributed in the market.
11. Director General of Domestic Trade hereinafter called Dirjen PDN is Director General who has task and responsibility in domestic trading field.
12. Minister is Minister who has task and responsibility in the trading field.

CHAPTER II PROVIDE LABELING

Article 2

- (1) Entrepreneur who produces or imports products for trading in domestic market as intended in Attachments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is obliged to provide labeling in Indonesian Language.
- (2) Attachments as intended in paragraph (1) consists of:
 - a. Attachment I, list of electronic devices used for household,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 b. Attachment II, list of products used for building materials;
 - c. Attachment III, list of products used for motor vehicle (spare parts etc); and
 - d. Attachment IV, list of other products
- (3) Imported goods as intended in paragraph (1), when entering the customs area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ave already been labelled in Bahasa Indonesia.
- (4) Labeling as intended in paragraph (1) at least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which is clear enough and understandable.
- (5) The use of language other than Indonesian Language, Arabic Numbers, and Latin alphabet is allowed if it has no translation in Indonesian Language.

Article 3

- (1) Entrepreneur who produces or imports products for trading purpose in domestic market as intended in Article 2, is obliged to submit sample of label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to Director General of Domestic Trade, in this case is Director of Controlling of Circulated Products and Services.
- (2) If sample of label that is submitted to Director as intended in paragraph (1) is approved, Director of Controlling of Circulated Products and Services shall issue certificate on labeling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within 5 (five)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sample of label.
- (3) Certificate on labeling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as intended in paragraph (2) is:
 - a. Document explaining status of sample of label is complies with provisions in this

- Ministerial Regulation for products which produced domestically; or
- b. Document becoming attachment to customs clearance for imported products.
- (4) The submission of such label sampl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done through:
- a. email, at the address of: dir-pengawasan-pdn@depdag.co.id;
 - b. facsimile, with number (021) 3858189; or
 - c. courier service, or directly sent to Directorate of Controlling of Circulated Products and Services, Directorate General of Domestic Trade, Ministry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Jalan M.I. Ridwan Rais No. 5 Blok II Lantai 3, Jakarta Pusat 10110.
- (5) Issuance of certificate as intended in paragraph (2) is free of charge.

Article 4

Entrepreneur as intended in Article 2 paragraph (1) who trades goods by measured volume and weight, is obligated to put label by using International System or sign of International System unit based on decimal.

Article 5

- (1) Labelling as intended in Article 2 should be put not easy to remove from the goods or packing, not easy to be erased or damaged, and easy to be seen or read.
- (2) Labelling as intended in paragraph (1) that is not possible to put on the small size goods, should be put on the packing or in separate guide.
- (3) Size of label shall be proportional with size of goods or the packing.

Article 6

- (1) Label as intended in Article 2 paragraph (1), consists explanation of goods and identity of entrepreneur as stated in Attachment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 (2) Explanation in goods label in related with safety, secure, and health of consumers and life environment should consists of:
 - a. how to use; and
 - b. clear dangerous symbol and/or attention.
- (3) Entrepreneur identity as intended in paragraph (1) for goods as stated in Attachment I,

Attachment II, Attachment III, and Attachment IV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at least has:

- a. name and address of producer for domestic production goods, or
 - b.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for imported goods.
- (4) Address as intended in paragraph (3) at least has company name and city of its domicile location.

Article 7

Beside labelling as intended in Article 6 paragraph (1), entrepreneur should put explanation according effective regulations.

Article 8

Entrepreneur is prohibited to put label:

- a. not in complete explanation; or
- b. consists wrong information and/or make consumers confuse.

Article 9

- (1) Entrepreneur not fulfil provision as intended in Article 5 and/or Article 8 a, is obligate to take back the goods from distribution and not trade those goods.
- (2) Taking back of goods from distribution as intended in paragraph (1), based on instruction of Dirjen PDN on behalf of the Minister.
- (3) All taking back from distribution costs as intended in paragraph (2) shall be born by entrepreneur.

Article 10

Goods are taking back from distribution as intended in Article 9 can be distributed again after fulfil provision on labelling according to this Ministerial Regulation.

Article 11

- (1) Labeling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according to this Ministerial Regulation has exception for:
 - a. Products, if those sold as bulk goods, or on site packaging in front of consumer; and
 - b. such goods as contained in Attachment III to this Regulation of the Minister which is imported by a motored vehicles producer or an authorized agent of motored vehicles as raw materials and/or other supporting materials that pertain to production.
- (2) Labeling exception applied for imported products as intended in paragraph (1) b shall be issued if motor vehicle manufacturer or sole agent of brand applies for exception permit to Director General of Domestic Trade, in this case Director of Controlling of Circulated Products and Services, by submitting the following documents:
 - a. a copy of Industrial Business License (IUI) for motored vehicles producer; or
 - b. a copy of stipulation as an authorized agent of motored vehicles from authorized instances for authorized agent of motored vehicles.
- (3) Such submission of applica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made by showing the original documents.
- (4) Based on such applica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Director General PDN shall forward the list of those motored vehicles producers or authorized agents of motored vehicles not imposed the obligation of goods labelling in Indonesian Language to the Director General of Customs with a cc to the applicant.

CHAPTER III

FOSTERING AND CONTROL

Article 12

- (1) Fostering and Control on the goods labelling as governed by this Ministerial Regulation is conducted by Minister.
- (2) Minister delegate fostering and control right as intended in paragraph (1) to Dirjen PDN.
- (3) Implementation of fostering and control as intended in paragraph (2) is conducted by

- Dirjen PDN itself or together with related technical agency in central or regional area.
- (4) Fostering as intended in paragraph (1) in the form of service and spread information, education, and consultation,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entrepreneurs and/or consumers.
 - (5) Control as intended in paragraph (1) is conducted according regulations are governed provision and procedure to supervise goods and/or service.

CHAPTER IV

SANCTION

Article 13

- (1) Entrepreneur are not taking back goods from distribution as intended in Article 9 will be fined administration sanction in the form:
 - a. revocation of Business License (SIUP) by SIUP issuance official; or
 - b. revocation of other business license of the right official.
- (2) Revocation of SIUP as intended in paragraph (1) a by:
 - a. in case goods are instructed to be taking back from the distribution in relation with safety, secure, and health of consumer and life environment, revocation of SIUP will be after 2 (twice) written warning be given within period of 12 (twelve) working days; or
 - b. other goods as intended in paragraph a, revocation of SIUP will be after 3 (three) written warning, each has 7 (seven) days period.
- (3) In case entrepreneur is fined administration sanction as intended in paragraph (1), Dirjen PDN will submit recommendation of business license revocation to the related authorized agencies/officials.

Article 14

- (1) Business entrepreneur who make violation to the provision as intended in Article 2 paragraph (1), Article 6, Article 7, or Article 8 paragraph b, will be fined according to Law No. 8/1999 concerning Consumers Protection.

- (2) Business entrepreneur who make violation to the provision as intended in Article 4 will be fined sanction according Law No. 2/1981 concerning Legal Metrology.

CHAPTER V OTHER PROVISION

Article 15

Kinds of goods are obliged to provide labelling stated in Attachment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and they will be added based on requirements that will be stipulated by Ministerial Regulation,

Article 16

Technical guideline to implement this Ministerial Regulation, will be regulated by Dirjen PDN.

Article 17

Attachment I, Attachment II, Attachment III, and Attachment IV are integral part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CHAPTER VI TRANSITIONAL PROVISION

Article 18

When this Ministerial come into force, in case:

- a. goods as contained in the Attachment to this Ministerial Regulation is already circulated in the market, such entrepreneurs producing or importing those goods are obliged to adjust the labelling within a period of 1 (one) year since this Regulation of the Minister

was enacted; and

- b. If products are not listed in Attachments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entrepreneur who produces or imports products:
1. Entrepreneur who has already provided label in Indonesian Language may continue his/her effort to provide label in Indonesian language properly according to product type; and
 2. Entrepreneur who has not yet provided label in Indonesian Language may provide label in Indonesian Language properly according to product type.

CHAPTER VII CLOSING PROVISION

Article 19

This Ministerial Regulation shall come into force 1 (one) year after stipulation date.

For public cognizance, this Ministerial Regulation shall be promulgated by placing it in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tipulated in Jakarta
on December 21, 2009
MINISTER OF TRADE
signed,
MARI ELKA PANGESTU

2.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22/M-DAG/PER/5/2010

CONCERNING
AMENDMENT TO THE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62/M-DAG/PER/12/2009 CONCERNING PRODUCTS
LABELING OBLIGATION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THE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sidering:

- a. that in the framework of effectively consumers protection by products labeling in Indonesian language, it is necessary to amend provisions in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62/M-DAG/PER/12/2009 concerning Products Labeling Obligation;
- b. that based on consideration as intended in paragraph a,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In view of:

1. Trade Law 1934 (Statute Book No. 86/1938);
2. Law No. 2/1981 concerning Legal Metrology (Statute Book No. 11/1981,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3193);
3. Law No. 5/1984 concerning Industry (Statute Book No. 22/1984,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3274);
4. Law No. 10/1995 concerning Customs (Statute Book No. 75/1995,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3612) as amended by Law No. 17/2006 (Statute Book No. 93/2006,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661);
5. Law No. 8/1999 concerning Consumers Protection (Statute Book No. 42/1999,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3821);
6. Law No. 15/2001 concerning Brand (Statute Book No. 110/2001,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131);

7. Law No. 32/2004 concerning Regional Government (Statute Book No. 125/2004,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437) as amended the latest by Law No. 12/2008 (Statute Book No. 59/2008,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844);
8. Law No. 39/2008 concerning State Ministries (Statute Book No. 166/2008,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916);
9. Law No. 24/2009 concerning State Flag, Language, and Symbol as well as National Anthem (Statute Book No. 109/2009,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5035);
10. Government Regulation No. 10/1987 concerning Extension Unit, Additional Unit, and Other Legal Unit (Statute Book No. 17/1987,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3351);
11. Government Regulation No. 102/2000 concerning National Standardization (Statute Book No. 1999/2000,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020);
12. Government Regulation No. 58/2001 concerning Consumer Protection Monitoring and Supervision (Statute Book No. 103/2001,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126);
13. Government Regulation No. 38/2007 concerning Administration Duty Sharing among Central Government, Province Government, and Regency/Municipality Government (Statute Book No. 82/2007, Supplement to Statute Book No. 4737);
14. Government Regulation No. 47/2009 concerning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State Ministries;
15. Presidential Regulation No. 24/2010 concerning Position, Duty, and Function of State Ministries as well as Organization Structure, Duty, and Function of First Echelon of State Ministries;
16. Presidential Decree No. 84/P/2009 concerning Establishment of Second United Indonesia Cabinet;
17. Decree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o. 61/MPP/Kep/2/1998 concerning Metrological Operation as amended by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o. 251/MPP/Kep/6/1999;
18.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01/M-DAG/PER/3/2005 concerning Organization and Work Flow of Ministry of Trade as amended several times, the latest by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24/M-DAG/PER/6/2009;
19.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14/M-DAG/PER/3/2007 concerning Standardization of Service on Trade and Supervision Indonesian National Standard (SNI) Obligated to Tradable Products and Service as amended by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30/M-DAG/PER/7/2007;

20.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36/M-DAG/PER/9/2007 concerning Issuance of Trading License as amended by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46/M-DAG/PER/9/2009;
21.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19/M-DAG/PER/5/2009 concerning Registration of Manual Book and After Service Guarantee Card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for Telecommunications, Informatics and Electronic Devices;
22.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20/M-DAG/PER/5/2009 concerning Regulation and Method of Supervising Products and/or Services;
23.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Industry No. 86/M-IND/PER/9/2009 concerning National Standardization in Industry;
24.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62/M-DAG/PER/12/2009 concerning Products Labeling Obligation;

HAS DECIDED:

To Stipulate: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CONCERNING AMENDMENT TO THE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62/M-DAG/PER/12/2009 CONCERNING PRODUCTS LABELING OBLIGATION

Article I

Several provisions in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62/M-DAG/PER/12/2009 concerning Products Labeling Obligation shall be amended as follows:

1. Article 2 shall be amended so as to read as follows:

Article 2

- (1) Entrepreneur who produces or imports products for trading in domestic market as intended in Attachments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is obliged to provide labeling in Indonesian Language.
- (2) Attachments as intended in paragraph (1) consists of:
 - a. Attachment I, list of electronic devices used for household,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 b. Attachment II, list of products used for building materials;

- c. Attachment III, list of products used for motor vehicle (spare parts etc); and
 - d. Attachment IV, list of other products.
- (3) Entrepreneurs who Import products as intended in paragraph (1), has already been labeled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customs zone inside of Republic of Indonesia.
 - (4) Labeling as intended in paragraph (1) at least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which is clear enough and understandable.
 - (5) The use of language other than Indonesian Language, Arabic Numbers, and Latin alphabet is allowed if it has no translation in Indonesian Language.
2. Article 3 shall be amended so as to read as follows:
- Article 3
- (1) Entrepreneur who produces or imports products for trading purpose in domestic market as intended in Article 2, is obliged to submit sample of label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to Director General of Domestic Trade, in this case is Director of Supervision of Circulated Products and Services.
 - (2) If sample of label that is submitted to Director as intended in paragraph (1) is approved, Director of Supervision of Circulated Products and Services shall issue certificate on labeling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within 5 (five)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sample of label.
 - (3) Certificate on labeling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as intended in paragraph (2) is:
 - a. Document explaining status of sample of label is complies with provisions in this Ministerial Regulation for products which produced domestically; or
 - b. Document becoming attachment to customs clearance for imported products.
 - (4) Sample of label as intended in paragraph (1) shall be submitted by:
 - a. e-mail, attention to ditwasb2j@depdag.go.id
 - b. facsimile, whose number is (021) 3858189; or
 - c. courier service, or directly sent to Directorate of Supervision of Circulated Products and Services, Directorate General of Domestic Trade, Ministry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Jalan M.I. Ridwan Rais No. 5 Blok II Lantai 3, Jakarta Pusat 10110.
 - (5) Issuance of certificate as intended in paragraph (2) is free of charge.

3. Between Article 3 and Article 4 is inserted Article 3A, read as follows:

Article 3A

- (1) Certificate as intended in Article 3 paragraph (3) is valid as long as entrepreneur continuously produces or imports products stated in that certificate.
- (2) Entrepreneur who is intended in paragraph (1) is obliged to submit sample of label according to Article 3 when producing or importing products which are different from statement in certificate.

4. Article 11 shall be amended so as to read as follows:

Article 11

- (1) Labeling provided in Indonesian Language according to this Ministerial Regulation has exception for:
 - a. Products, if those sold as bulk goods, or on site packaging in front of consumer;
 - b. Products, which are defined in Attachment I, Attachment II, Attachment III, and Attachment IV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and if those are intended to be used as material and or auxiliary materials in production process.
- (2) Labeling exception applied for imported products as intended in paragraph (1) b shall be issued if motor vehicle manufacturer, sole agent, general importer or supplier applies for exception permit to Director General of Domestic Trade, in this case Director of Supervision of Circulated Products and Services, by submitting the following documents:
 - a. Domestic Products
 - 1) For producer, copy of Industrial Business Permit (IUI); or
 - 2) For company, acting as supplier:
 - a) Copy of Trade Business Permit (SIUP); and
 - b) Copy of appointment letter from producer or copy of business contract between producer and supplier.
 - b. Imported Products
 - 1) For producer:
 - a) Copy of Importer's Identity Number (API); and
 - b) Copy of Industrial Business Permit (IUI).
 - 2) For sole agent of motor vehicle:
 - a) Copy of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 and

- b) Appointment letter as supplier from producer; and
 - c) Copy of approval letter as sole agent from the authority agency.
- 3) For general importer:
- a) Copy of Importer's Identity Number (API); and
 - b) Copy of appointment letter from producer or business contract between producer and supplier.
- (3) Application as intended in paragraph (2) shall be conducted by showing original documents.
- (4) Based on application as intended in paragraph (2):
- a. Director General of Domestic Trade shall inform list of importers, who are exempted from obligation to provide label in Indonesian Language, to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 b. Director of Supervision of Circulated Products and Services shall issue certificate of exemption of providing label in Indonesia Language for producer, sole agent of motor vehicle, general importer, and supplier."

5. Article 18 shall be amended so as to read as follows:

Article 18

When this regulation comes into effect, in case:

- a. products as intended in Attachment I, Attachment II, Attachment III and Attachment IV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have already circulated in market, entrepreneur who produces or imports products, has obligation to adjust labeling into Indonesian Language within 18 (eighteen) months after this regulation takes effect; and
 - b. If products are not listed in Attachments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entrepreneur who produces or imports products:
 - 1. Entrepreneur who has already provided label in Indonesian Language may continue his/her effort to provide label in Indonesian language properly according to product type; and
 - 2. Entrepreneur who has not yet provided label in Indonesian Language may provide label in Indonesian Language properly according to product type.
6. Attachment I, Attachment II, Attachment III, and Attachment IV of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62/M-DAG/PER/12/2009 concerning Products Labeling Obligation shall be amended become Attachment I, Attachment II, Attachment III, and Attachment IV that are integral part of this Ministerial Regulation.

Article II

This Ministerial Regulation shall come into force on September 1, 2010.

For public cognizance, this Ministerial Regulation shall be promulgated by placing it in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tipulated in Jakarta

on May 21, 2010

MINISTER OF TRADE

signed,

MARI ELKA PANGESTU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인도네시아

2015년 12월 23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815-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